시정연 2002 특별정책과제

「서울시 사회구조와 정책수요」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 구 진

조 권 중 • 도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한 영 희 • 도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제Ⅰ장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체계와 방법 ····· 3

제Ⅱ장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현황 ····· 7
1.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정 ····· 7
1) 외국인력제도의 변화과정 ····· 8
2) 외국인력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적 반향 ····· 11
(1) 민간단체의 활동과정 ····· 11
(2)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둘러싼 이견 ····· 15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 22
1) 외국인 노동자 규모 ····· 22
2) 서울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와 활동 ····· 29

제Ⅲ장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 35
1. 조사 개요 ····· 35
1) 조사 방법 ····· 35
2) 조사 경과 ····· 35
(1) 심층면접내용 ····· 35
(2) 조사 준비과정 ····· 37
(3) 조사과정 ····· 39
2. 조사대상자 유형 및 일반적 특성 ····· 41
1) 유형 ····· 41
2) 일반적 특성 ····· 41

3.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과정 ····· 44
1) 본국에서의 생활 ····· 44
2) 입국과정 ····· 49
4. 외국인 노동자의 일과 생활 ····· 66
1) 근무지 ····· 66
2) 주거지 ····· 80
3) 이동력 ····· 86
4) 일상생활 ····· 97
5) 사회적 지지망 ····· 103
6) 의료 및 기타서비스 ····· 109
7) 생활상의 문제점 및 장래계획 ····· 113
5.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형성 ····· 123
1)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적 집중 ····· 123
2)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적 집중의 사례 ····· 125
(1) 성동구 사례 ····· 125
(2) 구로지역 사례 ····· 129
(3) 안산지역 사례 ····· 133
(3) 혜화동성당 근처 지역 사례 ····· 137

제 Ⅳ 장 결론 ····· 141

참고 문헌 ····· 145

부록 ····· 147

표차례

<표 Ⅱ-1>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이견 ····· 21
<표 Ⅱ-2> 생산직 인력 부족률과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추이 ····· 22
<표 Ⅱ-3> 국가별 산업연수생 현황 (2001년 12월말 현재) ····· 23
<표 Ⅱ-4> 산업연수생 현황 (2001년 11월 현재) ····· 24
<표 Ⅱ-5> 외국인 인력현황 (2002년 3월 현재) ····· 24
<표 Ⅱ-6>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 25
<표 Ⅱ-7> 국적별·업종별 불법체류자 현황 ····· 26
<표 Ⅱ-8>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 ····· 27
<표 Ⅱ-9> 서울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현황 ····· 30
<표 Ⅲ-1> 면접내용 ····· 36
<표 Ⅲ-2> 조사협조기관 ····· 38
<표 Ⅲ-3> 유형별 면접대상자 ····· 41
<표 Ⅲ-4> 출신국 분포 ····· 42
<표 Ⅲ-5> 연령 분포 ····· 42
<표 Ⅲ-6> 학력 분포 ····· 43
<표 Ⅲ-7> 체류기간 ····· 43
<표 Ⅲ-8> 아버지 직업 ····· 44
<표 Ⅲ-9> 필리핀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가정환경 ····· 46
<표 Ⅲ-10> 필리핀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가정환경 ····· 47
<표 Ⅲ-11> 입국동기 ····· 49
<표 Ⅲ-12> 체류자격 ····· 57
<표 Ⅲ-13> 국적별 체류자격 ····· 58
<표 Ⅲ-14> 입국비용 ····· 62
<표 Ⅲ-15> 국적별, 체류자격별 입국비용 사례 ····· 64

<표 Ⅲ-16> 거쳐간 직장수 ····· 66
<표 Ⅲ-17> 연수업체 이탈사유 ····· 67
<표 Ⅲ-18> 이직사유 ····· 68
<표 Ⅲ-19> 종사직업 ····· 69
<표 Ⅲ-20> 종사하는 사업체 규모 ····· 70
<표 Ⅲ-21> 근무처 ····· 71
<표 Ⅲ-22> 근무지 위치 ····· 72
<표 Ⅲ-23> 월 소득 ····· 72
<표 Ⅲ-24> 1일 노동시간 ····· 74
<표 Ⅲ-25> 작업현장에서의 경험 ····· 76
<표 Ⅲ-26> 주거지역 ····· 80
<표 Ⅲ-27> 주택 점유형태와 주거비 ····· 82
<표 Ⅲ-28> 가구당 거주 인원 ····· 82
<표 Ⅲ-29> 주거지와 근무지 간의 이동거리 ····· 84
<표 Ⅲ-30> 이웃에 무관심한 사례 ····· 85
<표 Ⅲ-31> 이웃과 원만한 관계의 사례 ····· 86
<표 Ⅲ-32> 이동력 유형 ····· 87
<표 Ⅲ-33>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거지 이동 사례 ····· 91
<표 Ⅲ-34> 일정 주거지에 정착한 사례 ····· 93
<표 Ⅲ-35>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거지 이동 사례 ····· 95
<표 Ⅲ-36> 일정 주거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례 ····· 96
<표 Ⅲ-37> 월 소비지출 ····· 101
<표 Ⅲ-38> 소비내역 ····· 102
<표 Ⅲ-39> 외국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생활의 문제점 ····· 113
<표 Ⅲ-40> 장래희망 ····· 121
<표 Ⅲ-41> 성동구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 128

그림차례

<그림 Ⅲ-1> 조사 진행과정 ····· 39
<그림 Ⅲ-2>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동기 ····· 50
<그림 Ⅲ-3> 중국동포의 입국동기 ····· 51
<그림 Ⅲ-4> 중국동포 이씨의 가계도 ····· 55

사진차례

<사진 Ⅲ-1> 네팔 노동자 주거지 내부 모습 ····· 80
<사진 Ⅲ-2> 외국인 노동자 쉼터 전경 ····· 116
<사진 Ⅲ-3> 성동구 주변지역 모습 ····· 126
<사진 Ⅲ-4> 마장동지역 모습 ····· 127
<사진 Ⅲ-5> 안산지역 모습 ····· 135

제 I 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체계와 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요즘 식당에 가면 의례 조금 다른 말씨의 종업원들을 만나게 된다. 말씨만 약간 다를 뿐 차림이나 행동은 우리 나라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풍습과 언어, 가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던 '동포'들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9만명의 중국동포들이 음식점, 파출부 등의 서비스업, 건설노동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구로구의 일부 지역은 중국식 음식점과 간판이 즐비하고, 중국에서 생활하던 식의 지역사회가 형성되어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고향에 송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부부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기도 한다.

중국동포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과 달리 동·서남 아시아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은 조금 떨어진 데 자리잡고 있다. 풍습이 틀리고 우리말에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섞여서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대개 공단인근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기숙사 등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그러나 이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해 있다.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을 통해 의료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이나 일상생활 공간에 사실상 편입되어있지만, 제도적으로는 노동자도 시민도 아니다. 친인척 방문이거나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을 뿐이다.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무려 78%가 체제기한을 넘겼거나, 연수생에서 이탈하여 불법상태에서 머물고 있다. 바로 이 '불법체류'와 '실질적 노동종사'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현주소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유입이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확대가 '단일민족'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실과 제도는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게 되면 임금이나 노동비용이 오르게 되어 저임노동력의 장점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중소업체의 반

발도 심각하다.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은 모순투성이다.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주요 노동관계법의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체임, 부당노동행위, 산재 등이 빈발하고 있지만 불안한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인권 논의가 심각히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고국으로 송금도 마음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중간 소개업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아파도 마음대로 병원을 이용할 수 없으며, 애들을 키우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구적 생존전략의 하나로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공유, 서비스 획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불법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한, 자구적 커뮤니티 역시 편법과 불법에 기반한 '불안한' 공동체일 뿐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거슬러 보면, 1980년대 후반의 폭발적인 노동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허리띠를 졸라매던 저임금-저소비 사회에서 (고)임금-대중소비의 사회로 전환되어 왔다. 뒤이어 자가용 구입과 해외여행이 붐을 이룬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위 3D 업종의 인력난이 심해진 것도 이 때부터다. 또한 88올림픽에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으로 이어지는 개방화·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외국자본과 인력이 국내 경제활력 유지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선진국으로부터의 자금과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저임금 노동력이 우리 경제의 성격을 좌우하는 세계체제에 편입된 것이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계 자본이 30% 가까이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한 우리 경제운용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경제 체제에서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위상에서 볼 때 불가피한 현상이다.

본 조사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실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만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인력정책, 노동관계, 인권침해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본 조사연구는 서울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 주목하고 있다. 비록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신분상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으며 일상을 꾸려가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주거, 의료, 교육, 결혼, 교우관계, 여가활동, 소비생활 등 일상생활 전반을 파악함으로써, 서울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가 어떻

게 '관계 맺기'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시기상의 차이가 있을 뿐 외국인 노동자가 일상화, 제도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 동안 '낯선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시행된 인권침해 조사나 고발성 연구에서 한발 더 나가, 생활공간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일상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본 조사연구는 또 이를 바탕으로 생활공간의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할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아직 완전한 조사도, 제안도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본 조사연구가 활용되었으면 한다.

2. 연구체계와 방법

본 조사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전개 과정과 그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고 있다.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된 이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변화해 왔다. 정부부처, (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입장을 시기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제도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제Ⅱ장).

이어서 본 조사연구의 핵심부분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다양한 측면, 특히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본국에서의 생활을 포함한 입국과정, 고용조건과 환경, 주거와 주거지역, 여가 및 소비생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커뮤티니 형성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생활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기본적으로 심층면접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외에도 지원단체 종사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의 일반주민 등에 대해서도 인터뷰했다. 면접대상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39명으로 출신국, 거주형태, 성별 등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배정했다. 노동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대개 2번 정도씩 면담을 했으며, 되도록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를 보고하는 방식은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그들이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각 부문의 주제영역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기에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각 부문의 사회 생활영역에서 전형적이고 유형화된 모습을 세밀히 보여주고자 했다. (제Ⅲ장).

마지막 제Ⅳ장에서는 조사결과 발견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맺는 현실을 바탕으로 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정책문제를 체계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정책수립을 위해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제Ⅳ장).

제Ⅱ장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현황

1.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정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제Ⅱ장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현황

1. 외국인 노동자 유입 과정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게 된 데는 몇 가지의 요인들이 있다. 1980년대 후반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 1987년 이후 높아진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임금상승,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확대된 한국의 대외인지도 등이다.

1960~70년대에는 중동·동남아 등지의 해외시장개척을 통해 노동력이 해외로 나갔던 반면에, 1980년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노동시장 취업기회가 확대되었다. 특히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분출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급속히 상승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 노동자들이 단순생산직을 기피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의 단순생산직, 힘들고 고된 3D업종에서의 인력난은 만성화되었다.[1)]

이러한 내부적 요인들과 함께 외부적으로는 1991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고, 한국사회와 단절되어 있었던 조선족 사회의 중국동포들이 유입되었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왕래가 불가능했었던 조선족 사회는 국교 수립과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실제 한국의 발전상을 실감하게 되었다. 더불어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대외인지도 증대로 동남아시아의 전통적 노동력 수출국들은 한국을 새로운 노동력 이송지로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적 요인들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직 인력난이라는 견인요인과 국가 간 소득격차 심화로 인해 저소득국과 고소득국 간의 노동이동을 통해 기대 효과[2)]를 바라는 외국인 노동자의 개인적 압출요인이다.[3)]

---

1) 제조업 노동시장 구조에서 중소업체의 생산직 노동 기피현상은 노동수요 측면과 노동공급 측면의 노동자 의식변화에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이혜경(1994)은 외국인력 도입 배경을 노동수요 측면에서 제조업 노동시장의 이분화 현상, 특히 1987년 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구조와 근로조건의 격차 심화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어수봉(1992)은 노동자 의식변화에 주목하여 제조업이 타 산업에 비해 낮은 노동 정착률을 보이는 것은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 불투명한 장래 등으로 인해 낮은 직업만족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2) 이우현, "아시아 지역의 국제 노동력 이동의 구조 변화", 『국제지역연구』, 1998.

3) 물론 노동력 수출국의 구조적 요인이 외국인 노동자 스스로 노동이동을 결심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다.

1) 외국인력제도의 변화과정

(1) 산업기술연수제의 도입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정의 상황적, 내부적 요인들은 결국 법과 제도의 설립과 변화로 귀결된다. 경제성장, 국내 노동자의 의식 향상, 한국의 대외인지도 증대와 함께 국내노동시장의 인력난을 결국 1991년 '해외투자업체연수생'제도의 시행으로 해소하고자 하였다.

연수생제도의 도입은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가 외국인 노동자 수입 허용을 노동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중소업체들의 요구에 수긍한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발급을 위한 지침과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서 1991년 11월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해외투자, 기술제공, 설비수출관련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서 유입되었다.[4] 그러나 해외투자업체연수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의 해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력난이 심각한 국내의 중소영세기업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1년부터 받아들이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합법·불법적으로 체류하였는데, 1992년 당시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인원이 68,000명이었다.

1993년 11월 기존 연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도입업종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입업종은 기존의 10개 업종에서 21개 제조업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연수기간도 종전의 최장 1년에서 추가로 1년을 연장할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의 실무가 중기협[5]으로 위임된 것이다. 1994년 5월부터 중기협의 주관에 의해 산업기술연수생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입국연수생의 규모는 국내 노동시장상황에 맞추어 외국인산업기술조정협의회[6]가 조정하였다. 1994년 2,000명에서 시작한 산업연수생의 규모는 2001년에는 83,80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2년 외국인력제도개선책을 통해 발표된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는 최대 13만명으로 증대되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가

---

4) 유길상·이규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p.18.
5) 중기협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이다.
6) 이는 재전경제원 경제기획국장, 외무부 재외국민영사국장, 법무부 출입관리국장,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노동부 직업안정국장, 과학기술처 인력정책관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도출되었다. 문제의 원인은 연수생 도입근거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연수생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 역할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완전한 신분상의 지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연수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1995년 2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을 제정하여 산업연수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의 적용과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금품 청산, 근로시간 준수 등 일부 규정의 보호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 및 건강진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95년 7월부터 국내 최저임금법의 적용도 가능하였다. 이런 제도의 변화는 산업연수생제도와 산업연수생의 고용조건과 근무환경에서의 인권적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민간사회단체의 활동에 의해 가능하였다.

(2) 연수취업제의 도입

민간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7]에도 불구하고, 1996년 9월 중소기업청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을 통해 산업연수생 활용업체 대상을 생산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이하인 중소제조업체로 한정하고 대상업종을 음·식료품 등 22개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1997년 9월, 외국인력 관리제도를 개선한 연수취업제도가 도입되었다. 연수취업제는 2년간의 연수 후 일정 자격을 갖춘 연수생들에게 노동자로서 1년간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수취업제는 당시에 꾸준히 사회단체와 노동부에서 거론되던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를 혼합했지만 본질적으로 산업연수제와 달라지지 않았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자 경기악화와 기업들의 도산으로 상당수의 외국인력이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정부정책 역시 외국인 노동력의 사용을 내국인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3D업종을 주 노동시장으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부 정책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당시의 경기악화는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났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하기보다 불법체류상태를 견디고자하는 외

7) 산업연수생과 연수업체에서 이탈한 불법체류자들의 비인간적 현실을 고발하는 사회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 노동부는 결국 불법을 양산하는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연수생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이에 1995년 입법청원을 하였으나 중기협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국인 노동자들도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연수업체에서 이탈하여 정부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8)]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0년부터 연수취업제가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다시 사회단체와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재시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기협과 법무부의 반발이 있었다. 2001년 12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개선대책'을 통해 정부는 2002년부터 산업연수생 할당을 83,800명으로 더 확대하였고, 기존의 연수기간 1년 후 취업기간 1년을 연수기간 1년 후 취업기간 2년으로 조정하였다. 제한적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부여하여 합법적인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2배로 늘리게 하는 정책이었다.

(3) 현 외국인력 정책

2002년 정부는 잠정적으로 30만명 가량으로 추측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게 되었다. 한일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확인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책이기도 했다. 2002년 3월 15일 정부는 '불법체류자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고, 3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1년간의 합법체류기간(귀국준비기간)을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이 기간에 파악된 외국인력은 전체 336,800명이었고, 78%가 불법체류자였다. 이를 토대로 7월 15일 '외국인력제도개선대책'이 발표되었다. 대책안은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분야별 산업연수생제도를 총정원 13만명으로 확대하고, 업종 역시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건설업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서비스업종에 한해 중국 등 외국국적의 동포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취업관리제의 경우 체류기간은 최장 2년이다. 중국동포의 친척방문 연령도 40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정부 조치는 또다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업연수제 폐지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사회단체들은 산업연수제를 확대시키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원 출국 조치시키겠

8) 산업연수생들이 연수업체를 이탈하는 주된 이유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열악한 임금구조와 노동환경과 억압적 고용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다는 정부의 의도는 현실을 묵과한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외국국적의 동포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법이 재외동포법이다. 국내 유입 외국인력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적은 중국이다.[9] 그 중에서 중국동포는 전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중국동포의 체류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재외동포법은 외국인력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사안이다. 1999년 8월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던 1948년 이후에 해외로 이주한 한인에게만 한정하여, 이전에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주했던 한인들은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해외거주 한인들은 국내 거주 한국인들과 동등한 사회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10]

이에 헌법재판소는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그 자손들이 재외동포법의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합치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적용 확대는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과 구 소련 등지 재외동포법이 적용될 경우 그 대상자는 25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 인원이 국내에 유입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혼란을 정부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2) 외국인력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적 반향

(1) 민간단체의 활동과정

민간사회단체들은 가장 먼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민간단체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사회적 반향을 살펴보는 데 중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운동이 구심점을 형성하며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이 결성되면서부터이다. 기존의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상담단체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인권적 대우에 항

9) 2002년 3월 현재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은 중국동포를 포함하여 중국 국적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 2002년 7월 15일자 보도자료)

10) 2년간의 국내 체류가 가능하고 기간 연장도 가능하며 자유로이 출입국이 가능하고 90일 이상 체류하면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의하여 1992년 이후부터 외국인 노동자 권익단체로 성격을 바꾸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외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제일 먼저 관심을 표명한 단체는 종교단체였다. '대한성공회'와 천주교 단체에서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상담활동이 최초의 외국인 지원활동이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구로희년선교회', '구로희망의집' 등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들은 1992년을 전후하여 인권침해사례, 상담과 선교활동, 의료활동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단체들은 중소제조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 노동상담을 하던 단체들이 중소제조업체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실상을 주시하면서 설립되었다.

1993년을 전후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상담소는 '외국인노동자피난처'이다. 1993년 11월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 13명과 피난처 관계자들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경실련 농성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세계화의 구호가 범람하던 시기에 세계화의 이면으로 지적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주장하였던 당시의 농성으로 정부는 3년 산재 보상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경실련 농성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최초로 사회에 제기하였다. 이 시기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었고, 1994년 1차와 2차에 걸쳐 3만 여명의 연수생이 도입되었다. 외국인 연수생들의 인권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11])과 피난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고와 개선을 위한 항의 행진을 진행하였으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95년 1월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다시 한번 한국사회에 부각되었다. 네팔 연수생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요구하면서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였다. 쇠사슬을 몸에 감은 선전전은 충분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외국인이란 신분에 언론은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지는 못했다.[12] 그러나, 이를 계기로 국

11) 한국노총은 중기협이 산업연수제도의 도입을 주장할 때, 민주노총과는 구분되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노동계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한국노총은 외국인력을 국내 노동시장의 위협요소로 파악하였다.

12) 몇몇 일간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농성을 배워간다는 논조의 기사를 실었다.

내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산재해 있던 외국인 노동상담단체들은 상담단체들의 연합체인 외노협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가 각 지역에 새로 개설되고 외국인 노동자 운동도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네팔 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이후, 정부는 1995년 2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을 제정·발표하였다.[13] 외노협은 1995년 10월 공청회를 통해 최초로 노동허가제를 축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의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그 후 1996~97년 외노협은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축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꾸준히 입법청원을 하였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997년 9월 경제장관간담회의에서는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연수취업제도가 결정되었다. 민간단체의 연수취업체 반대집회는 지속되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된 IMF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시기에 외국인 노동자 운동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기업체가 도산하였다. 이 시기 외국인 노동자 운동은 주로 이주노동자의 국제적 연대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9년 외국인 노동자 운동단체에서 새롭게 외국국적 동포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부각되었다. 당시 국회는 중국, 구 소련계, 일본의 무국적자가 제외된 재외동포법을 통과시켰다. 중국동포 문제에 관심을 가진 '구로조선족교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부터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들 사이에 의견차이가 나타났다. 같은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동포 문제와 산업연수생의 문제는 '민족'적 접근과 '국가'에 대한 접근의 두 가지 상이한 맥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1999년 9월 21일에는 외노협을 주축으로 하여,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조합[14]이

---

13) 1995년 동일한 시기에 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법무부와 중기협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14) 외노협을 중심으로 청년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독청년의사회, 대한가정의학회 개원의연합 등은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문제를 개별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들을 위한 단일화되고 조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1999년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천만원을 후원해 준 것이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조합'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매달 일정 금액(5,000원)을 회비로 납부하는 것이 조합기금의 원천이다. 현재 수도권지역 12개의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가 '의료공제조합의 지부'가 되어 조합원을 관리하고 회비를 수합한다.

발족하였다. 수도권 12개 상담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공제조합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조합은 외국인 노동자의 70% 이상이 불법체류인 현실을 감안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15] 민간부문에서 제기된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으로 제한되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들 역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와 건강진단을 받게 되었다.

2002년 3월 12일 정부는 '불법체류자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을 주었다. 자진신고를 둘러싸고 각 민간단체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선족교회는 대부분 자진신고를 권고하였으나, 평등이주노조연합[16]에서는 자진신고 거부,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위를 펼쳤고, 외노협은 자진신고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였으나 자진신고 이후의 강제퇴거[17]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하였다. 5월 29일까지 자진신고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33만 여명이고 이 중 78%가 불법, 21%가 합법체류자였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 통계를 기초하여 2002년 7월 15일 새로운 '외국인력제도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노동권 확보를 모색하였던 노동계와 외국인 노동자 단체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

15)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체류자격에 있어서 불법적 위치에 있지만, 법원의 판례에서도 보듯이 불법체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이 없어 불법체류노동자들은 산재를 제외한 공식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 노동자에 비해 산업연수생은 1995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과 보건의 조치 및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16) 2001년 5월 26일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가 설립되었다. 평등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거주자로서 누려야 할 사회 문화적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7)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으로 불법 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 강제퇴거의 대상을 제46조 및 제68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다.

(2)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둘러싼 이견

① 행정부처 간 이견

법무부

법무부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기업들의 인력수요 증가로 자칫 불법체류자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여 고용허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동부

노동부는 1995년부터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구조적으로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입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2000년 노동부의 당정협의자료에 의하면, 현재 빈번하게 거론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의 문제는 산업연수제도 운영의 잘못보다는 제도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므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종합적인 인력종합계획에 의한 외국인력도입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8]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는 현행 산업연수제를 고수할 것을 주장한다.[19] 산업자원부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 1명당 연간 357만원의 부담이 추가되고, 노사분규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중소 기업체들의 주장을 반영해 외국인들의 합법 취업 안을 거부하고 있다.

---

18) 더욱이 '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역시 고용허가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사례라고 본다. 더 이상 외국인력을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생으로 간주하는 편법을 견지하는 것이 한계상황에 봉착하였다는 판단이다.

19) 이런 산업자원부에 대해 노동부 측은 "산업자원부가 산업연수제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 연수생을 데려올 때 해외송출기관으로부터 받는 공탁금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공탁금은 이행보증금 형식으로 연수생 1인당 300달러씩 받는 돈이다.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연수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보증금은 모두 산업자원부 산하 중기협 차지가 된다. 지난해 적립된 보증금은 42억원에 이른다. 이런 노동부 지적에 대해 산업자원부 측은 "보증금은 연수생 교육과 건강검진 등에 쓰인다"며 "노동부가 이를 문제삼는 건 외국인근로자 관리 권한을 넘겨받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겉으로는 인권보장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부의 권한 강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의 이면을 들춰보면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을 뿐 정작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는 무관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동아일보, 2002년 8월 31일자 참조)

국가인권위원회[20]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공식입장으로 이 개선안이 외국인 노동자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크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소한 산업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 차별 논란이 없도록 취업관리제의 보완, 불법체류자의 단계적 양성화 조치 등이 포함되도록 개선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21]

② 정당 간 이견

한나라당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제도를 현행 산업연수생 방식에서 정식 근로자 채용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 경제의 여건으로 볼 때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이들을 정식 근로자로 대우하면서 중소기업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는 동시에 노사문제, 인권과 범죄 등 사회문제, 불법체류 문제, 송출비리 문제 등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22]

민주당

2000년 민주당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임금 상승 등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한 적이 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역시 노동자로서의 인권적 처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동당

---

20)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26일에 출범한 국가 독립기구이다.

21)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가 연수라는 명목으로 근로를 종사하게 하는 편법고용이고, 따라서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을 정당하게 고용하고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2) 문화일보, 2002년 7월 23일자 참조.

정부 개선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정책이 아닌 허울좋은 개선안일 뿐이라 평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가혹한 근로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하며, 그 형식은 노동자 개인에게 일정기간 노동허가를 내주는 노동허가제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이해집단 간 이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기협은 산업연수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실제 중기협은 1994년부터 산업연수제의 실무 주체를 담당하고 있다.[23] 중기협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불법체류, 인권침해, 착취문제의 근본원인은 산업연수제도 그 자체가 아니고 제도 외적인 환경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불법체류자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일할 수 있게 하는 단속의 부재, 공권력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본다.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취업생에게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부의 악덕 업주 때문이며,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있어도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이탈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인들이 연수생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5](이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2002년 7월 15일의 정부 개선안에 대해 “연수생제도는 그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노동착취,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자 급증, 송출 및 관

23) 일부 노동계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들은 중기협이 산업연수제도의 모든 실무를 담당함에 따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중기협이 산업연수제의 최대 이익집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4) 중기협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업체가 최근 주5일제와 PL제도(제조물책임제도)의 실시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 대한 지원책으로 산업연수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5) 민주노총은 “일부 유관부처의 집단이기주의로 정부가 당초 검토했던 고용허가제가 무산됐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고용허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은 최근 민변과 공동으로 법안을 작성, 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 고용허가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통해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다.(중앙일보, 2002년 7월 31일자 참조)

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불러왔고 이런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사용 규모와 업종 확대는 노동허가제를 실시, 신중한 정책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등록 불법체류자도 절차를 마련, 사면한 뒤 노동허가를 해줘야 한다"[26]고 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한국노총의 입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에 관심을 가지나, 국내 노동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옹호한다는 전제를 가진다. 최근 정부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한국노총 역시 민주노총과 동일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 산업연수생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유린과 불법체류자 양산 문제 등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개악안이므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27]

④ 민간단체 간 이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노협은 기본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노동허가제를 더 선호하지만,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노동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므로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에의 종속성이 그리 강하지 않다. 반면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는 방식인데,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에 대한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노협이 고용허가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제도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7월 15일에 있었던 정부의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의도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전부 내보낸 자리를 확대된 연수생으로 채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하였다.[28] 또한 현실적으로 30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노동자를 강제

26) 중앙일보, 2002년 7월 31일자,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인터뷰 참조.
27) 중앙일보, 2002년 7월 30일자 참조.

출국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산업현장에 심각한 인력왜곡을 초래하고 본인의사와 무관한 강제단속과 추방은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관리제 실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라 방문동거자격으로 입국해 체류자격 외의 활동으로 취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하였다. 대체로 외노협이 1995년부터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바는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노동허가제의 실시, 불법체류 노동자의 사면,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이주민협약 비준이다.

조선족교회

정부의 외국인력 개선안에 대해 조선족교회[29]는 취업관리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포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 환영할만하지만 보완조치[30]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03년 불법체류 전원 출국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모든 불법체류를 출국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만, 송출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동포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의 개선방안이 전혀 송출비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송출과정 비리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선족교회에서는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서 연수생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행 제도가 산업연수생 이후에 노동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단지 산업연수생제도가 설득력이 있기

---

28) 외국인력 개선안뿐 아니라 자진신고제에 대해서는 미봉책이라는 점은 인식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는 상황이고, 실제 자진신고를 전면 거부할 수 있는 지원단체나 노동단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진신고에 대한 전면 거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침이라고 보았다. 뿐만아니라 1년만이라도 마음 편히 일하고 싶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망을 묵살하거나 유보하기 어렵다는 이해에서 자진신고의 거부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되도록 자진출국 이후 실시될 강력 단속에 대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식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29) 조선족교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무조건적인 자진신고를 거부하였을 때 이후에 겪게 될 강제 퇴거조치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조선족교회 안에 신고안내센터를 설치해서 자진신고를 권고하였다.

30) 현재 취업관리제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북한 출신의 동포들의 포함, 현재 건설업과 가사관리 등 중국동포들 다수가 취업해 있는 업종으로 취업허용 업종의 확대, 취업관리제를 통한 취업허용, 사업장 변경절차의 완화 등을 말한다.

위해서는 노동력 유입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31](이하 평등노조)

평등노조 외국인 노동자 지부는 고용허가제 반대,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한다. 이주노조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연수생을 근로자로 부르는 것 말고 산업연수제와 똑같은 제도이며, 사업장도 옮기지 못하게 하며 수많은 미등록노동자들을 쫓아내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쉽게 쫓아낼 수 없으니까 우리의 신상을 자세히 알아내서 2003년 3월 31일까지 우리를 모두 쫓아내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통제하기 쉬운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오겠다는 음모가 숨겨져 있다”라고 자진신고와 고용허가제에 대해 비판한다. 평등노조 외국인 노동자지부의 요구는 이주권, 전면적인 사업장 이동권, 완전한 노동 3권의 보장을 토대로 하는 노동허가제이다.

⑤ 종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대책의 이견은 현행 산업연수제도의 틀 유지, 고용허가제의 도입, 노동허가제의 도입으로 요약된다. 2002년 현재까지 노동부와 각종 사회단체,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바 있으나, 중소업체의 반발에 의해 무산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쟁점은 몇 차례의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합법적인 노동권을 부여하는 데는 고용비용의 문제와 외국인력이 노동시장에서 대체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아니면 보완의 효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상이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31) 평등노조는 수도권의 여성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 노조로 2001년 4월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아 합법화된 단체이다. 2001년 5월 26일 민주노총 산하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외국인노동자지부가 창립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평등노조의 지부로서 앞으로 권리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노동조합법상 노조 결성에 국적이 문제되지 않지만 이 지부에 가입한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상 신분이 불법체류자나 산업연수생이어서 정식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한다. 노동부 관계자는“이들이 합법 노조의 지부를 만든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단체협상에 나설 경우 신분상의 제약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사업주가 문제삼으면 추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01년 5월 28일자 참조)

이런 가운데 현재 정부의 외국인력 개선안은 수많은 사회단체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외국국적의 동포와 연수생 간의 차이점을 국제 정세와 국내 여론에 맞추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정부가 안고 있는 다른 숙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이견

각 기관		현행 산업연수제도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행정부처	법무부	○	×	-
	노동부	×	○	-
	산업자원부	○	×	-
	국가인권위원회	×	○	-
정당	한나라당	-	○	-
	민주당	-	○	-
	민주노동당	×	△	○
이해집단	중기협	○	×	×
	민주노총	×	-	○
	한국노총	×	-	-
민간단체	외노협	×	△	○
	조선족교회	△	-	-
	평등노조	×	×	○

주 : ○은 옹호, △는 부분적 옹호, ×는 반대, -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한다.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외국인 노동자 규모

한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꾸준히 유입된 사실은 다음의 <표 Ⅲ-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 1998년 외환위기라는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수가 잠시 줄었지만, 그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II-2> 생산직 인력 부족률과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추이

(단위 : 명, %)

	생산관련 직종 인력 부족률[1]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수[2]				
년도	현원	총부족 인원	총부족률	년도	전체	취업비자	연수비자	불법 체류자
-	-	-	-	1987	6,409	2,192	-	4,217
-	-	-	-	1988	7,419	2,403	-	5,007
-	-	-	-	1989	14,610	2,474	-	12,136
1990	2,420	166	6.85	1990	21,235	2,833	-	18,402
1991	2,446	222	9.07	1991	44,850	2,978	-	41,877
1992	2,320	157	6.76	1992	73,868	3,395	4,945	65,528
1993	1,964	119	6.04	1993	66,919	3,767	8,644	54,508
1994	2,251	124	5.64	1994	81,824	5,265	28,328	48,231
1995	2,161	125	5.80	1995	128,906	8,228	38,812	81,866
1996	2,212	106	4.80	1996	210,494	13,420	68,020	129,054
1997	2,172	84	3.88	1997	245,399	15,900	81,451	148,048
1998	1,874	20	1.04	1998	157,689	11,143	47,009	99,537
1999	1,716	28	1.63	1999	217,384	12,592	69,454	135,338
2000	1,866	40	2.15	2000	285,506	19,063	77,448	188,995
2001	1,887	37	1.98	2001	329,555	27,614	46,735	255,206

주 1 : 1998년까지는 10인 이상, 1999년부터는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조사하였음.
주 2 : 각 년도 12월말 기준이며, 연수비자에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과 산업연수생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노동부, 「노동력 수요동향조사」, 노동부 내부자료, 1987~2001.

<표 II-3> 국가별 산업연수생 현황 (2001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국 가	배정인원[1]	총입국인원[2]	총출국인원[3]	연수 취업자	이탈인원 (a)	연수인원 (b)	체류인원 (a+b)
네팔	1,758	3,520	1,503	397	581	944	1,525
미얀마	195	2,162	1,170	41	698	170	868
방글라데시	5,543	13,504	4,556	618	6,060	2,088	8,148
베트남	12,957	26,612	11,471	1,038	9,358	4,299	13,657
스리랑카	2,821	4,750	2,572	90	1,408	644	2,052
인도네시아	14,887	38,919	24,300	1,650	6,020	6,430	12,405
중국	22,488	41,250	14,454	2,864	15,048	8,205	23,253
한족	-	14,352	6,709	1,074	2,315	3,983	6,298
조선족	-	25,899	7,699	1,420	12,266	4,122	16,388
사기피해자	-	999	46	370	467	100	567
필리핀	8,664	19,347	9,893	892	5,318	2,943	8,261
파키스탄	2,253	4,443	1,907	270	1,256	979	2,235
이란	200	588	520	-	68	-	68
우즈베키스탄	2,876	6,628	4,014	122	1,344	1,111	2,455
태국	2,387	5,074	2,779	120	1,120	1,013	2,133
몽골	900	735	231	25	353	92	445
카자흐스탄	1,351	2,343	1,221	41	600	462	1,062
전체	80,000	169,875	80,591	8,168	49,232	29,380	78,612

주 : 1)은 배정인원은 2001년 12월 현재 각 국가별로 배정된 쿼터를 의미한다.
2)와 3)의 총입국인원과 총출국인원은 산업연수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누계이다.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내부자료, 2001.

산업연수생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연수생들의 높은 이탈률에 있다. 산업연수생의 이탈률은 2001년도 법무부 보고에 의하면 57%에 가깝다.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된 연수생들의 절반 이상이 모두 업체를 이탈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연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 체류기한이 넘은 연수생 혹은 연수취업자가 불법체류할 것을 감안하면, 실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규모는 상당히 클 것이다.

<표 II-4> 산업연수생 현황 (2001년 11월 현재)

(단위 : 명, %)

	전체	해투연수생	중기협추천	수산협추천	건설협추천	기타
전체(명)	110,250	29,536	78,099	1,174	1,070	371
이탈자(명)	63,515	16,031	46,579	426	108	371
이탈률(%)	57.6	54.3	59.6	36.3	10.1	100.0
실제 연수자	46,735	13,505	31,520	748	962	0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2001.

이러한 추측은 이미 2002년 5월까지 시행된 자진신고제[32]를 통해 파악된 통계자료에 의해 입증되었다. 2002년 3월 말 자료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78.9%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5> 외국인 인력현황 (2002년 3월 현재)

(단위 : 명, %)

전체	합 법 체 류 자					불법체류자
		합법근로자		산업연수생	해외투자 기업연수생	
	소계	연수취업자	전문기술 인력			
336,800 (100.0)	70,952 (21.1)	10,394 (3.1)	20,564 (6.1)	27,158 (8.1)	12,836 (3.8)	265,848 (78.9)

주 : 불법체류자는 국내 체류 불법체류자의 수이다.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2002.

<표 II-5>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보면 2002년 3월말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26만 5,848명이고 이중 연수취업자는 3.1%인 10,394명, 산업연수생은 8.1%인 12,836명,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3.8%인 12,836명이다. 이 자료를 통해 현재 외국인력 유입책으로 산업연수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단지 외국인력이

32) 법무부의 자진신고기간에 전체 불법체류자 가운데 92.3%인 255,978명이 신고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자 8천명을 제외하면 미신고자는 1만 2천명이라고 발표했다.

유입되는 방편일 뿐 실제 중소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임을 알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여성개발연구원의 2002년도 외국인 노동자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산업연수제도 내의 합법적 체류자들보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더 나은 고용조건을 가지고 있는 모순적 현실이 불법양산의 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표 II-6>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단위 : 시간, 천 원)

체류자격	성 별	임금	월 평균 노동시간	시간당 임금
연수취업자	남 성 여 성	944 843	290 310	3.26 2.73
해외투자 기업연수생	남 성 여 성	728 567	228 245	3.19 2.27
업종별단체 추천연수생	남 성 여 성	825 817	272 292	3.03 2.81
불법체류자	남 성 여 성	874 779	240 243	3.64 3.2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외국인 근로자고용실태조사-기업체조사」, 2001.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에서 파악한 고용조건을 보면 시간당 임금은 불법체류자들이 가장 높다. 불법이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외국인력이 불법이었을 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33]

자진신고 통계에 따른 불법체류자 현황은 <표 II-7>과 같다.

33) 물론 제도적 한계뿐 아니라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불법체류자를 묵인하고 있었던 정부당국의 안이함도 연수생의 이탈률 증대와 불법 양산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표 II-7> 국적별·업종별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계	제조	건설	음식점	가사서비스	용역서비스	기타
계	255,978 (100)	89,174 (34.8)	55,907 (21.8)	35,117 (13.7)	9,564 (3.7)	8,892 (3.4)	57,324 (22.6)
중국	151,313	19,001	52,002	34,064	9,303	6,456	30,488
(동포)	91,736	8,577	32,691	21,913	6,495	4,096	17,964
방글라데시	17,087	11,746	325	52	9	261	4,694
필리핀	16,078	12,811	133	48	62	246	2,778
몽골	13,952	7,351	1,190	517	106	627	4,161
베트남	10,608	7,707	228	46	9	155	2,463
기타 (91개국)	46,940	30,558	2,029	391	75	1,147	12,740

주 : 자진신고를 마친 불법체류자 현황이다.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2002.

국적별로는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이 151,313명(재중 동포 91,736명)으로 전체의 60%이며, 방글라데시 17,087명, 필리핀 16,078명, 몽골 13,952명, 베트남 13,952명 순 이었다. 총 96개국에서 외국인이 있었고 밀입국자 역시 10,476명이 있었다.

이들의 취업분야는 제조업 89,174명(35%), 건설 55,907명(22%), 음식점 34,573명(14%), 가사보조 9,500명, 농·어업 2,400여 명 등이다. 이 중에서 음식점의 경우 97%가 중국인(동포 62%)이었다. 문제는 신고자 중 단순 체류기간 초과자는 6천여 명에 불과하고, 98%인 25만명이 불법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관광, 방문동거의 목적으로 입국한 후 서비스업종에 불법 취업함으로써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34]

34) 2002년 7월 15일 국무조정실의 '외국인력 개선방안' 보도자료 참조.

<표 II-8>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1)]

(단위 : 명, ( )안은 %)

구분	총계	단기종합	단기상용	산업연수	사증면제[2)]	밀입국	기타
계	255,978 (100.0)	91,521 (36.0)	55,607 (22.0)	52,457 (20.0)	25,208 (10.0)	10,476 (4.0)	20,709 (8.0)
중국	151,313	61,134	47,055	24,092	-	10,293	8,739
(동포)	91,736	36,098	24,930	14,788	-	9,812	6,108
방글라데시	17,087	226	240	5,427	10,279	1	914
필리핀	16,078	6,902	735	5,412	9	1	3,019
몽골	13,952	10,301	1,295	275	510	2	1,569
베트남	10,608	10,608	1,270	641	7,563	33	19
기타 (91개국)	46,940	11,688	5,641	9,688	14,377	183	5,386

주1 : 자진신고를 마친 불법체류자의 현황이다.

주2 : 여기에서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국허가와는 다르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사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심사관이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2002.

체류자격별[35)]로는 단기종합[36)], 단기상용[37)] 등 단기사증 소지자가 18만여 명으로

35) 현재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33가지이다.

열	국내체류 세부자격구분				
A	A-1(외교)	A-2(공무)	A-3(협정)		
B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	C-1(일시취재)	C-2(단기상용)	C-3(단기종합)	C-4(단기취업)	
D	D-1(문화예술)	D-2(유학)	D-3(산업연수)	D-4(일반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연수취업)	
F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4(재외동포)	F-5(영주)
G	G-1(기타)				
H	H-1(관광취업)				

36) 체류자격 'C-3'인 단기종합은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단체여행객이나 중국동포 친척방문 목적이 포함된다. (중소기업협회중앙회)

37) 체류자격 'C-2'의 단기상용은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외국기업 국내 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

약 70%를, 무단이탈 산업연수생이 52천여 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밀입국자도 신고자의 약 4%인 10,476명(중국동포 9,812명)이었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80만원 정도이다. 100만원 이상 소득자의 89%인 24,875명은 국적이 중국인이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가 99,00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82,000명, 인천 14,000명, 대구 3,300명, 부산 2,200명 등이었다. 전체의 77%인 20여 만명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기계 등의 수출입업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서울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와 활동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은 대개 민간부문에서 외국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노동상담,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종교 및 사회단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 인권·복지전반을 다루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 운동단체들이 있다.

외국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들 역시 많다. 이들은 대체로 소수의 안정적이고 정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노동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은 종교 및 사회단체들이다. 대부분 인권보호의 사각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 교회의 협조를 얻거나 외국인 노동자 운동단체의 협조를 얻어 여러 단체들이 연계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진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동·인권상담을 담당한다.

외국인 노동자 운동단체들은 종교단체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사회단체와는 다르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을 일으키고,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기존의 노동운동 진영들이 현재 외국인 노동자 운동단체로 변모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부천외국인노동자센터'가 그러한 경우이다. 이들 단체는 외국인 상담소 단체들의 연합체인 외노협 내부의 회원 단체로 소속되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민간부문 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 단체의 연합체인 외노협의 결성에도 불구하고, 외노협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상호 간의 문제의식을 교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종교 및 사회단체를 포함하여 각 지역별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지원서비스는 대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정착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한글교실, 컴퓨터 교실, 민간단체와의 연계 등이다.

<표 II-9> 서울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현황

구분	분류	주요 활동	단체명	소재지
민간단체	외국인 노동자 운동단체 (외노협 소속)	복지전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종로구 효제동
		의료복지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중구 을지로2가
		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용산구 한강로1가
		인권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서대문구 홍제2동
		노동/인권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구로구 가리봉동 경기도 성남
		인권	평화의 집	강북구 수유5동
		인권보호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종로구 연지동
		노동/인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종로구 창신동
	종교단체	의료+선교	희년 선교회/희년의료공제회	금천구 가산동
		선교	한길교회	도봉구 창동
		인권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광진구 구의동
		복지+선교	서울조선족교회	구로구 구로동
	봉사단체	의료	선한이웃클리닉	중구 장충동
			라파엘 클리닉	중구 연건동
	외국인 자치단체	노동권보호	평등노동조합 외국인 노동자지부	강북구 미아3동
		노동/인권	일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구로구 항동
		인권	여성교회외국인 노동자센터	중구 장충동
		인권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중구 정동
	종교단체	인권	천주교서울대교구 외국인 상담소	성북구 보문동
		선교	장충교회	중구 장충동
		인권	예인교회	성동구 마장동
		인권	나눔과 섬김교회	성북구 장위동
		선교	왕성교회	관악구 신림동
공공단체	지역 복지관	지역복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 장위동
		지역복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성동구 마장동
		지역복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구 옥수동
		지역복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복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중구 신당동
		지역복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 월곡동
	자치구 위탁기관	인권+복지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성동구 홍익동

주 : 실제는 이외의 여러 기관들이 더 있을 수 있다.

종합사회복지관들은 1999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적응을 돕고, 지역 통합을 목적으로 '지역복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시작은 1999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서비스로 한글교실을 개설한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복지관이 위치한 성동구는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거주지로 알려져 있다. 성동구의 또 다른 복지관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역시 2001년부터 한글교실, 컴퓨터 교실, 한국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동대문구의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200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한글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들 복지관은 성동구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이하 성동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성동센터로 그 역할을 이양하거나 자치구 내의 다른 종교단체, 민간단체로 외국인 지원 서비스를 이양하였다.

현재까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관은 중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부터 한글교실, 컴퓨터 교실, 개인상담, 문화체험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성북구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역시 2001년부터 한글교실, 컴퓨터 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북구의 사단복지법인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부터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Ⅲ장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1. 조사 개요
2. 조사대상자의 유형 및 일반적 특성
3.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과정
4. 외국인 노동자의 일과 생활
5.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형성

제Ⅲ장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1.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 심층면접조사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수량적인 조사와는 달리 심층면접조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불법체류자가 다수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묘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접근 과정의 어려움, 실제 면접과정에서 언어소통의 문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꺼려하는 점 등 조사진행상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접근의 어려움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해결하였고, 언어소통의 문제점과 자신의 이야기를 꺼리는 점은 외국인들과 오랜 시간 꾸준히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조사자는 되도록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함으로써 조사자를 꺼리는 외국인들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노력하였다.

본 조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센터에서 이들을 만났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직접적인 이야기에서 그들의 서울생활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심층면접은 평균 2회의 만남을 목표로 하였는데, 면접대상자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서 1회에 그치기도 하고 2회 이상 만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센터에서 실시하는 여행이나 체육대회, 집회현장, 수료식 현장에서 참여 관찰하였다.

2) 조사 경과

(1) 심층면접내용

진행된 조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애사와 외국인들의 서울(경기)생활 및 지역에 대한 태도이다.

<표 III-1> 면접내용

대분류		중분류	내 용
외국인 노동자의 생애사	외국인 노동자의 생애사	입 국	입국동기
			입국전의 한국에 대한 인상
			입국방법/과정
		정 착	정착직후의 고용조건
			근무환경/주거환경
			식생활/ 소비여가 활동
		적 응	근무지에서의 사회적 관계
			주거지에서의 사회적 관계
			본인의 가까운 대인관계
			민간단체방문경험
현재의 서울(경기) 생활 및 지역에 대한 의식	서울생활	하루 일과	일과 내용과 활동지
		주간 일과	주간 활동과 활동지
		향후 목표	향후의 목표와 계획
		가족 관계	국제결혼여부(국제결혼식 법적, 행정적 문제와 자녀교육문제, 사회적 시선의 문제)
			고국의 가족과의 관계
	의식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태도	고용주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
			한국사람에 대한 태도
			서울에 대한 인상
	주거지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
			사는 동네(이웃)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과 희망사항

외국인 노동자의 생애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였고, 어떻게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는가와 같은 입국과정과 정착과정,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경로와 입국동기, 잔류여부 의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서울(경기)생활 및 지역에 대한 태도는 현재의 생활여건, 노동환경, 생활만족도, 사회적 관계,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관계, 주거지와 한국인에 대한 태도 등이다. 외국인들의 직접적인 구술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현재 삶과 한국과 서울에 대한 태도, 주거지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라는 생활영역의 한계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서울생활이 공간과 지역,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였다.

(2) 조사 준비과정

① 면접대상자의 선정

현재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적은 96개국 이상으로 너무나 다양하다. 또한 외국인이고,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특수성으로 인해 면접대상자들은 국적별로 각기 다른 생활습관과 문화양식, 종교적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면접대상자들을 동일 유형으로 묶어서 유형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곤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대상자를 선정할 때 최소한의 범주화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외국인과 외국국적의 동포를 구분하였다.[1] 외국인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할 줄 모르고 생활습관이나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끼는 반면에, 외국국적 동포들은 한국어를 무리 없이 구사하고 한국을 가깝게 느끼고 있으며, 생활습관에서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도 새로운 외국인력 활용정책에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들에 따라 상이한 외국인력 정책을 내놓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크게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들 중심으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사회적 과정의 결과인 국제결혼가정 사례를 일부 포함시켰다.

면접대상자 선정은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단신 생활자로 하되, 가족 단위 사례도 혼합하였다. 그 외에도 대상자 선정 시 연령이나 성별도 고려했다.

---

1) 기존 연구에서도 대개 외국인 노동자를 유형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형'과 '동남아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중국, 몽골과 같이 외모에 있어서 한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형'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피부색과 외모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동남아형'으로 구분하였다. 외모에 따른 사회적 시선/차별이나 외국인 노동자 행동의 제약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유형화/범주화이다.

② 협조기관

각 사례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들의 협조를 얻었다.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고,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면접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뢰하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협조는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지원단체의 소개 및 알선이 면접대상자 선정에 전제가 되었던 점이 오히려 면접대상자 선정에 있어 한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진신고기간에 신고처 근처에서 면접하거나, 지원단체를 통해 소개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시 소개받음으로써 지원단체 협조에 의한 대상자 선정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면접대상자 선정이 임의표집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실제 만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제한되어 있었고 면접에 응해주는 외국인에 한해 면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III-2> 조사협조기관

구분		협조기관	소재지
민간	사회단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산 원곡동
	사회단체	코시안의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내
	사회단체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 집	금천구 가산동
	종교단체	희년선교회	금천구 가산동
	사회단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종로구 창신동
	종교단체	서울조선족교회	구로구 구로동
	사회단체	동북아신문사	조선족교회 내
	종교단체	왕성교회	관악구 신림동
	종교단체	새천년온누리교회	강남구 압구정동
	종교단체	천주교서울대교구외국인상담소	성북구 보문동
공공	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중구 신당동
	복지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 장위동
	복지관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 월곡동
	위탁기관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성동구 홍익동

(3) 조사과정

조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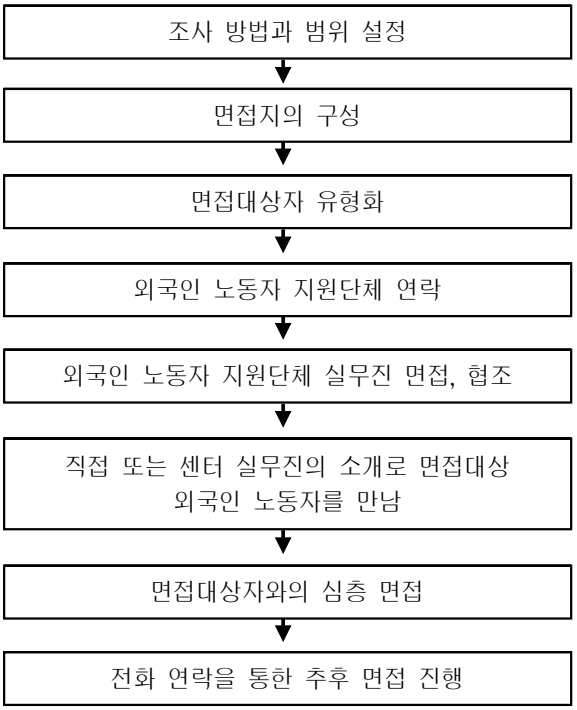

<그림 III-1> 조사진행과정

면접대상자로부터의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면접대상자에 대한 연락은 외국인 노동자가 믿을 수 있는 지원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면접대상자와의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면접대상자의 상황에 맞추어 유동성 있게 사적인 대화부터 시작하였다.

실제 면접을 수행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 중국동포의 경우, 자신들은 잘 살고 있고 단속만 하지 않으면 되고, 중국을 무시하지 말라는 식으로 피상적인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속된 만남에서 자신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반면,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면접에서는 가장 먼저 “때리지 마세요. 우린 돈 너무 조금 받아요”라는 불만부터 터져 나왔다. 그러나 2차의 만남이 진행되

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생활에 상당히 적응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처음부터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질문하고자 하였지만, 상황이 불가능하거나 면접대상자가 회피할 때가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회적인 질문을 통해 면접대상자의 의식이나 한국생활에 있어서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3월 10일부터 2002년 7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그 곳에서 만날 수 있었던 40사례(4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면접을 수행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지속적인 만남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나, 가능한 경우에 2회 이상의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장소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근처의 조용한 장소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지였다. 불법체류 신고기간에는 신고처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2. 조사대상자 유형 및 일반적 특성

1) 유형

면접대상자는 동남/서남아시아인, 중국동포로 나누었고, 추가로 국제결혼가정의 사례를 다루었다. 동남/서남아시아인은 27명, 중국동포는 12명이다. 국제결혼가정의 사례는 남성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 2명과 중국동포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1명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의 체류 자격은 한국인을 제외하고 모두 산업연수생이 아닌 불법체류자였다.

한가지 더 고려하였던 변수는 면접대상자의 가족관계였다. 거주단위를 살펴보면, 중국동포의 경우는 가족 단위의 거주자가 많았고, 동남/서남아시아인은 가족 단위보다는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42명 중 단신이 24명, 가족 단위 거주가 14명이다.

<표 III-3> 유형별 면접대상자

유 형	외국인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중국동포		동남/서남아시아인			
	남	여	남	여	남	여
단신	1	4	19	2	1	2
가족 단위	4	5	4	2		
계	12		27		3	

2) 일반적 특성

(1) 출신국

면접대상자를 출신국적별로 정리하면, 9개 국가에서 외국인 39명이었고,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3명이었다. 9개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네팔, 나이지리아, 이란, 중국이다.

<표 III-4> 출신국 분포

출신국	동남/서남아시아인									중국	한국	총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나이지리아	이란	네팔	소계			
	8	2	9	1	2	1	1	3	27	12	3	42

(2) 연령

면접대상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중국동포는 다양하였고, 동남/서남아시아인은 주로 20대와 30대가 많았다.

<표 III-5> 연령 분포

연 령	외국인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총계
	중국동포	동남/서남아인	소계		
15~19세	2	-	2	-	2
20~29세	1	9	11	1	12
30~39세	3	13	17	-	17
40~49세	2	-	2	1	3
50세이상	4	1	5	1	6
무응답	-	4	2	-	2
계	12	27	39	3	42

주 : 무응답은 평균에서 제외하였다.

(3) 학력

면접대상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중국동포는 고졸 학력이 많고, 동남/서남아시아인은 2년제 및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많았다. 중국동포보다는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학력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표 III-6> 학력 분포

학 력	외국인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총계
	중국동포	동남/서남아시아인	소계		
중졸 이하	3	-	3	-	3
고졸	7	8	15	2	17
대졸	-	15	15	-	15
무응답	2	4	6	1	7
계	12	27	39	3	42

(4) 체류기간

체류기간은 중국동포는 3년~5년 정도가 가장 많았고,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는 2년~3년, 5년~7년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면접대상자의 체류기간은 2년~3년이 가장 많았고, 3년~7년의 장기 체류자도 상당수 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의 평균 체류기간은 3.6년이었다. 현행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최장 체류기간이 3년인 것과 비교할 때 규정보다 더 장기체류하고 있다.

<표 III-7> 체류기간

체 류 기 간	중국동포	동남/서남아인	계
1년 미만	1	-	1
1년~2년	2	1	3
2년~3년	3	9	12
3년~5년	3	6	9
5년~7년	1	8	9
7년 이상	2	2	4
무응답	-	1	1
평 균	2.9년	3.9년	3.6년
전 체	12	27	39

주 1 : 체류기간 평균에서 재입국한 사례는 재입국 후의 체류기간을 적용하였다.
주 2 : 무응답은 평균에서 제외하였다.

3.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과정

1) 본국에서의 생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본국에서의 삶을 파악하고자 했다. 면접대상 외국인 노동자들의 본국에서의 생활수준을 가늠해보기 위해 아버지의 직업을 살펴보았다.

<표 III-8> 아버지 직업

	직업 내용
동남/서남아	교사(2명), 농업(5명), 기계기술자(1명), 군인(1명), 주택임대업(1명), 교수(1명), 장사(1명), 무직(6명), 무응답(8명)
중국동포	한국 불법체류 건설일용직(2명), 농업(4명), 교사(1명), 무직(2명), 무응답(3명)

주1 : 면접사례 중 아버지의 직업이 '교수'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면접과정에서 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였는데, 면접을 하면서 그가 한국에 왜 들어왔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응답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주2 : 무직에는 환자, 사망의 경우가 포함되었다.

아버지의 직업을 살펴보면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농업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교사가 많았다. 아버지가 농업이나 교사 혹은 그 외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반면,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무직이거나, 환자일 경우는 집안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다. 따라서 어린 나이부터 자녀들이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였다.

중국동포의 경우, 동남/서남아시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직업은 농업이 많았다. 일반적인 중국동포들의 생활이 중국동포 집단거주지인 동북 3성지역[2]이고

2) 중국 동북 3성인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등지에 2백만명 가까운 중국 동포가 살고 있다. 특히 자치주로 분류된 옌볜 지역에는 많은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 틀 안에서 우리의 언어, 역사, 풍습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동포사회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다. 젊은 층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중국 내 대도시로 빠져 나가면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랴오닝 단둥(丹東)시에 사는 홍채화(34, 여)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동북 3성을 떠난 중국 동포가 2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 직업은 농업이 가장 많았고, 사범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가진 교사이거나 혹은 국영 기업체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1)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① 생활이 어렵지 않았던 가정환경

면접대상자들의 아버지 직업은 농업이 많았고, 그 외 교사, 기계기술자, 상인(장사) 등이 있었다.[3] 안정된 수입이 있었던 경우, 본국에서 생활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 【 본국의 생활 】 "가족은 9명이다. 현재 부모님은 모두 살아 계신다. 여자형제가 4명이고 남자형제가 3명이다. 내가 셋째인데, 남자형제는 모두 어리고 다 고등학생이다. 여동생의 직업은 선생님이고, 아버지의 직업은 농부이다. 우리 집의 생활은 중간정도쯤 된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N씨)

> 【 본국의 생활 】 "아버지는 65세로 기계기술자이고, 어머니는 60세로 교사였다. 두 명의 누나가 있는데 큰누나는 공무원이고 작은누나는 이탈리아에서 가정부를 하고 있다. 내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는 우리 집은 중상류층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교육받은 집안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꾸준히 있었다." (필리핀 노동자 B씨)

다음은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관계이다. 가족구성원 다수가 대졸자이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본인만 고졸 출신이다. 이 노동자의 경우 한국취업이 아주 절박했던 상황은 아니었다.

3) 농업과 교사 외에 더 나은 가정환경을 가진 사례도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이 기계기술자인 사례와 교수라고 응답한 사례는 중류층 이상의 사례로 보인다.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표 III-9> 필리핀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가정환경

관 계	나 이	성 별	혼인 상태	직 업	학 력
본 인	30	남	기혼	한국공장에 취업	고졸
(1) 아버지	68	남	기혼	주택임대업	2년 대졸
(2) 어머니	66	여	기혼	주부	2년 대졸
(3) 큰형	47	남	기혼	회사원	4년 대졸
(4) 둘째형	미상	남	기혼	회사원	4년 대졸
(5) 세째형	미상	남	기혼	회사원	4년 대졸
(6) 큰누나	미상	여	기혼	회사원	4년 대졸
(7) 둘째누나	36	여	기혼	회사원	4년 대졸

주 : 미상이라고 쓰여진 부분은 면접과정에서 알아내지 못했다.

② 생활이 어려웠던 빈곤형 가정환경

아버지가 무직이거나 환자 혹은 사망한 경우는 가정의 고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해야 한다.

> 【 본국의 생활 】 "아버지는 1983년에 돌아가셨다. 그 이후에 형과 내가 공부와 일을 번갈아 했다. 그러나 형보다는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자리도 없었고 전기배선 공사 일을 했는데, 수입이 적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N씨)

면접대상자였던 한 필리핀 출신 여성노동자는 본국에서도 힘겨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16세에 아이를 낳은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남편이 경제적 무능력자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기 전까지 힘든 노동현장을 전전하였다. 현재는 알콜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하였고, 다섯 자녀와 무직 상태의 부모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 다음은 그녀의 가족관계이다.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있고, 아들은 고정수입을 갖기엔 아직 어린 나이이다. 그녀 자신을 제외하면 가족의 수입원은 없다.

<표 III-10> 필리핀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가정환경

관계	나 이	성 별	혼인 상태	직 업	학 력	장애(유형)	질환(병명)
본 인	39	여	미혼	여관 청소	고졸	-	-
(1) 아버지	57	남	기혼	없음	초졸	-	-
(2) 어머니	61	여	기혼	없음	초졸	-	심장병
(3) 남동생	24	남	미혼	대학생	대재	-	-
(4) 아들	19	남	기혼 (2001. 12 결혼)	대학생	대재	어깨부상	-
(5) 딸	16	여	미혼	고등학생	고재	-	-
(6) 딸	14	여	미혼	고등학생	고재	-	-
(7) 딸	11	여	미혼	초등학생	초재	-	-
(8) 아들	7	여	미혼	초등학생	초재	-	-

(2) 중국동포

중국동포들의 가정환경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동북 3성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 유형이다. 중국동포 자치주 내에서는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도시로 나와 거주하는 경우로 각자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형이다. 도시에 나와 고정적 수입이 있거나 교사나 국영 기업체에 근무했던 동포들은 국가에서 연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는 생활을 하였다.

중국은 국가가 개인에게 땅을 분배해 주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 중국동포들은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 밖을 벗어나 살지 않았었다. 이러한 유형은 부유하게 살아가지는 못했어도, 자치주 내에서는 걱정 없이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개방의 흐름을 타고 도시로의 이주현상과 함께 조선족 자치주인 동북 3성지역을 벗어나는 삶이 생겨나게 되었다. 자치주를 벗어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을 통해 도시에서 고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면 자치주 내에서 농사를 짓는 것 이상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 중국사회의 변화 】“중국에서는 국공립 기업체에 다니고 만 50세가 되면 연금을 다 탈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개방이 되어서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을 도입하면서 회사 사정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생긴다. 회사 상황이 다르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와서 일할 생각을 많이 한다.” (중국동포 이씨)

① 생활이 어렵지 않았던 가정환경

면접대상자 중에는 남편이 영상기사를 하였고, 백화점 관리를 하면서 도시에서 살았던 사례와 오랫동안 식당을 경영하면서 어렵지 않게 살았던 동포들도 있었다.

【 본국의 생활 】“중국은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다들 집 한 채씩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자기 집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시골에서 도시로 금방 나와서 집이 없어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람들뿐이다. 직장만 가지고 있다면 몇 년 뒤에 집을 구할 수가 있다. 중국은 본인이 천 만원을 내면 국가에서 천 만원을 보조해 주어서 집을 얻을 수가 있다. 나도 한국 나오기 전까지 젊을 때는 백화점 일을 했다. 남편은 영상기사였다. 둘 다 연금을 신청했고 50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중국에서 못살지 않았다. 중상 정도라고 보면 된다.” (중국동포 이씨)

② 생활이 어려웠던 빈곤형 가정환경

면접대상 중국동포들의 직업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농업이었다. 농업이 평범한 중국동포들 대부분의 직업유형이다. 그러나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환자의 치료로 인한 빚으로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였다. 가장인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무직이거나, 환자인 경우는 가정은 생활이 어려웠다.

【 본국의 생활 】“집에 남편이 아팠는데 약값만 130만원 정도 썼다. 갚을 길이 없었다. 아직도 1년 농사를 지으면 빚쟁이들이 싹 가져가고 겨우 먹을 것만 남는다.” (중국동포 정씨)

【 본국의 생활 】“아버지는 농촌에 살다가 혼자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곧 망

했다. 어릴 때는 어렵지 않게 살았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나서 집에 빚이 생겼다." (중국동포 김씨)

【 본국의 생활 】"가게를 했었는데 가게를 내는 데 4만원이 채 들지 않았다. 3만 8천원에 임대를 했는데 세금을 못 내서 다시 만원에 임대를 주고 가게를 정리했다. 결국 망해서 남의 셋집살이를 하게 되었다. 집세로 한 달에 10원을 냈다. 중국에서는 그것도 큰 돈이다. 하루종일 일해도 벌 수 없다.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다. 쌀도 팔기 힘든 중국에서 쌀을 남방으로 도매해서 넘겼는데 이것도 불법이라 허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었다. 불법으로 하다가 이 일도 그만 두었다." (중국동포 서씨)

2) 입국과정

(1) 입국동기

<표 III-11> 입국동기

순위	항 목	중국동포	동남/서남아인
1	돈을 벌기 위해서 (빚, 학비, 사업자금마련 등)	5	16
2	한국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2	-
3	본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	3
4	가족 따라서 함께	2	-
5	공부하기 싫어서	2	-
6	해외취업이 보편화되어서	-	2
7	정치적 혼란	-	1

① 입국특징

외국인 노동자의 주된 입국동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에서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한국행을 선택하였다.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의 생애사에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데에는 몇 가지의 원인이 있다.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구조적 방출요인으로 제3세계 국가

의 만성적 실업상황과 저임금 구조의 경제가 첫 번째 원인이다. 두 번째 요인은 송출국의 열악한 경제 사정에 의해 전통적으로 해외취업이 보편화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고민할 때 쉽게 해외취업을 떠올린다. 더불어 주위 아는 사람의 권고라는 개인적 결정요인에 의해 해외취업의 계기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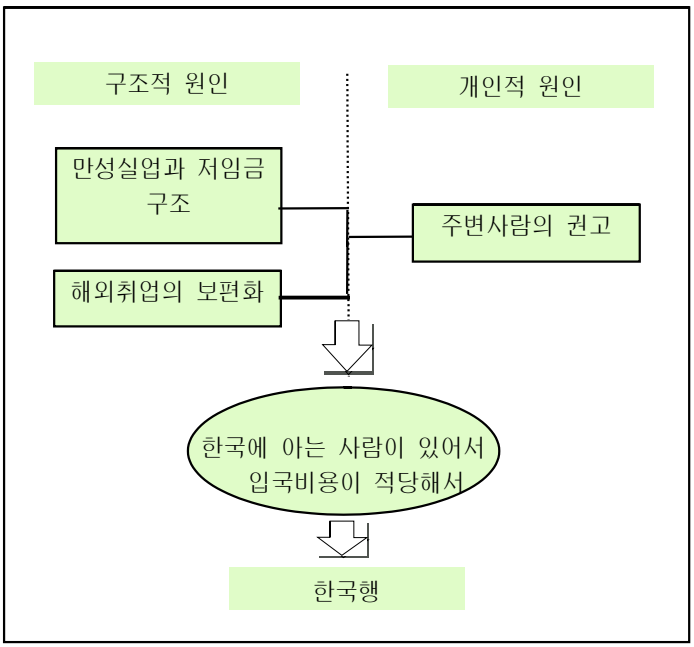

<그림 III-2>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동기

중국동포의 경우는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와 약간의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구조적 방출요인은 첫째 중국동포들이 중국사회의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집단으로서 주류사회에 편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요인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알게 되고, 모국이라 생각하던 나라에 대한 선망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족 사회에 부는 '한국열풍'이란 사회적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더불어 개인적 요인들은 조선족 사회 내에서 한국에 다녀와서 잘 살게 된 사례를 직접 보거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조선족 내의 한국에 대한 소문은 실제 동포들의 입국을 부채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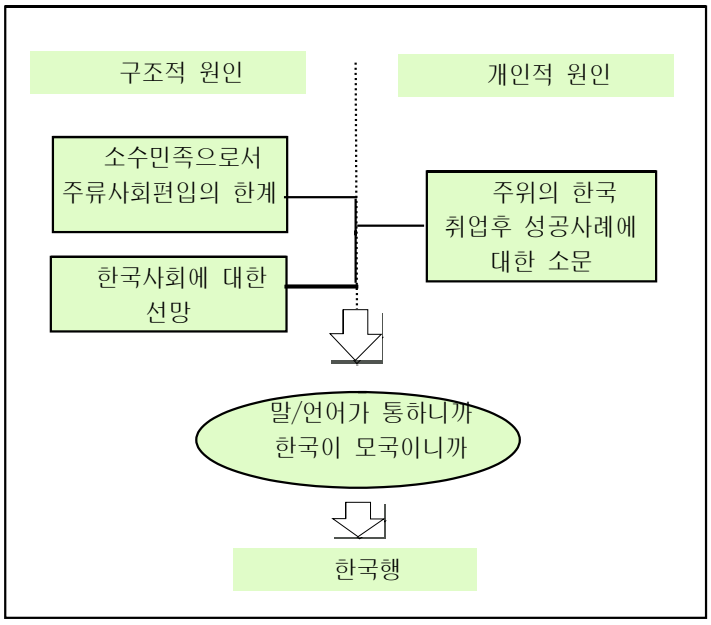

<그림 III-3> 중국동포의 입국동기

그렇다면 이주 지역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일부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온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라는 점과 '입국비용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국행을 선택하였다. 이와 다르게 중국동포들은 '말이 통하기 때문에', '모국이니까'라고 대답하였다.

②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입국동기

동남아시아의 경우 취업기회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이란 현상을 가장 잘 보여준다. 제3세계 국가들의 만성적 빈곤과 실업은 해외취업을 유일한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 해외취업의 동기 】"1997년 3월 13일날 한국에 왔다. 처음엔 한국에 올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방글라데시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려 했었다. 아버지는 선생님이라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그냥 먹고 살 정도로 살았다. 그런데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돈 벌고 들어와 살 수 있으면 살

려고 한 것이다. 방글라데시에는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되도록 외국에 나가고 싶어한다. 예를 들어 해외취업 지원자는 500명인데 200명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기다려야 한다. 필요한 만큼 비자가 나오질 않는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J씨)

방글라데시 노동자 J씨의 진술에서 해외취업을 통한 노동력의 이동은 개인에게는 삶의 새로운 탈출구로서, 새로운 기회로 부각되고 있다.

【 새로운 기회인 해외취업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는 돈을 별로 벌지 못했다. 가족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하고 싶은 일도 못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무척 많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N씨)

제3세계 국민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데에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일본, 호주에 이어 발전된 국가로 서서히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해외취업을 알선하는 취업소개소가 공공연히 브로커로 활동하게 되었다. 구직자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국가별로 입국비용이 매겨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보다 입국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동남아시아인들이 한국 취업을 선호하게 되었다.

【 입국비용 】"비자를 받는데 3개월이 걸렸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나라는 더 비싸게 지불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을 가려고 하면 1,500만원을 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호주나 미국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일본이나 호주보다는 훨씬 싼 값으로 한국에 올 수가 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R씨)

한국과 대만 등지로의 해외취업은 그들 나라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해외취업의 선택 】"태국 사람들은 대만에 정말 많이 가고 있다.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이 대만에 가는 것 같다. 나도 대만에 3년 전에 갔었다. 대만에서 세

라믹공장에서 일을 했다. 대만에 필요한 인력은 방송,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인력을 모은다. 한 사람이 3년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처음에 2년, 그리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태국 노동자 E씨)

【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음식점 배달원 일을 하면서 자동차 수리공 공부를 했었다. 아내는 홍콩에서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 아들은 사촌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지내고 있다. 부모인 형 내외는 각각 스페인과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필리핀에서 좋은 직장을 가질 만큼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라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면 가려고 결심했다." (필리핀 노동자 A씨)

취업을 위한 경제적 요인 외에 그 사회가 처한 종교적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 들어오기도 한다.

【 종교적 소수자로 인한 탈출 】"한국에 있을 수 있어서 좋다. 파키스탄은 답답하다. 무슬림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월급도 적고 살아가기가 어렵다. 한국에 있으면 일도 많고, 이제는 적응되어서 말도 알아들으니까 지금이 좋다." (파키스탄 노동자 F씨)

면접대상자 중에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80% 이상이 이슬람교도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드물게 기독교인이었다. 면접에서 이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이 파키스탄 내 5%의 소수의 기독교 신자이며 파키스탄 사회가 기독교인에 대한 많은 압력이 있다는 사실을 토로하였다.

③ 중국동포 입국동기

중국동포들은 주로 조선족 자치주 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사회의 주류로 자리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다. 현재 중국은 급속도로 산업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시점에 있지만, 동북 3성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조선족 자치주는 산업화의 흐름을 타기보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산업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중 수교가 체결되고, 한국의

발전상이 소개됨에 따라, 중국동포들은 소수민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국을 선택하였다. 발전된 모국, 내 할아버지·아버지의 나라가 중국보다 발전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에 대한 환상, 막연히 발전된 국가에서 무언가를 하면 내 나라, 내 땅이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입국하고 있음을 면접대상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 소수민족의 한계 】 "지금 중국동포는 56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족 자치구인 동북 3성 지대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농사만 지어서는 아이들 대학을 보내기가 어렵다. 게다가 농사도 1년에 한 번밖에 짓지를 못하니 못살 수밖에 없다. 장사를 하려 해도 아는 사람이 있나, 발이 넓기를 하나…. 우리는 일개 소수민족으로 힘이 없다. 조선족 중에 출세한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한국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살기 힘들고 하니, 언어가 통하는 조상의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다. 제나라 가서 잘 살아 보겠다고 나온다." (중국동포 서씨)

> 【 한국에 대한 막연한 선망 】 "중국에서는 한국에 못 오면 바보라고 한다. '남들 다 가는데, 나는 왜 못 가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웬만하면 다 한국에 가려고 한다. 중국 사람도 오고 싶어하는데, 중국동포는 더하다. 다 오려고 한다." (중국동포 심씨)

중국동포들은 아무리 중국말을 잘해도 아주 나이 어린 세대가 아니면 중국동포인지 한족인지 구분이 된다. 조선족 자치주로 분리되어 생활해왔기 때문이다. 주류사회로의 진입 장애와 중국의 거대한 국토로부터의 지역 간 단절은 소수민족으로서의 중국동포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간다. 그러므로 농사를 주로 짓는 동북 3성지역 역시 농사가 아닌 다른 삶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다. 따라서 중국동포 사회의 '코리안 드림'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의 일이 어렵더라도, 중국과 한국 간의 경제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의 중국동포 이○○씨의 가계도는 중국동포들의 코리안 드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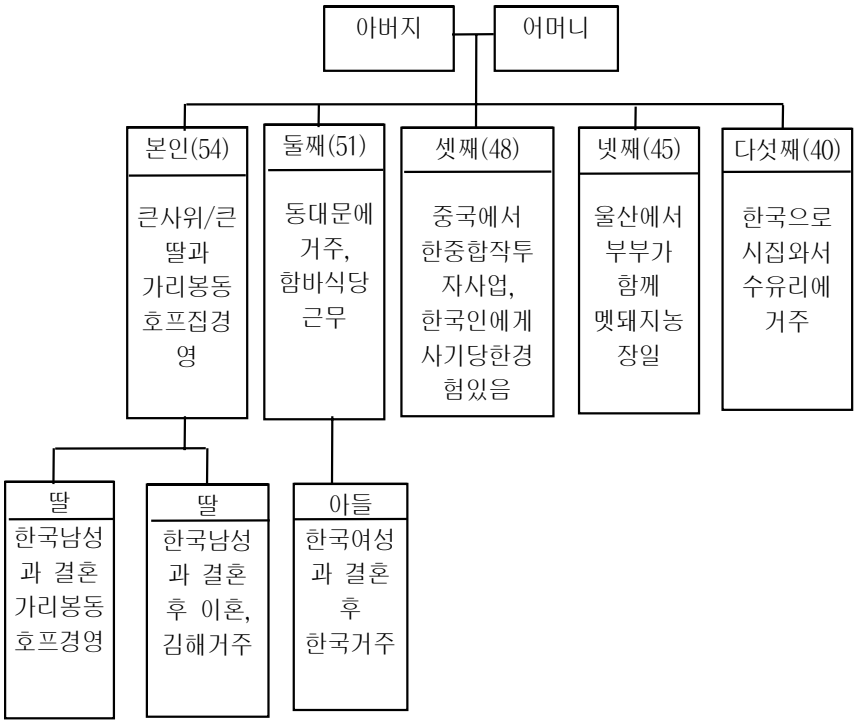

<그림 III-4> 중국동포 이씨의 가계도

중국동포 이○○씨는 5자매의 맏딸이다. 그녀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5자매 모두 한국과 연관되어있다. 맏딸인 이○○씨는 두 딸을 한국으로 시집보냈고, 둘째 역시 아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셋째는 중국에서 한·중 합작 투자 사업을 하고 있고, 넷째는 울산에서 농축사업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 다섯째는 한국인과 혼인하여 현재 수유리에 살고 있다.

중국 중국동포 사회의 한국 열풍의 또 다른 현상은 결혼이다. 자녀를 한국인과 결혼시키려고 한다. 한국으로 시집보냄으로써 일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한국으로 시집보내기 】“우리 고향동네를 보면 25살 이상의 남자들 30명 정도는 결혼을 못했다. 대개 여자들은 혼인소개소를 통해 한국으로 시집을 간다. 그런데 요즘은 위장결혼이 많으니까 결혼을 해도 비자를 잘 안 준다고 한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자기 하나 한국으로 시집가서 집안을 살리려고 한다. 여자는 고향 떠나 부모, 친척 다 버리고

오는데 한국에서 잘 못해주고, 무시하니까 도망을 간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사기치는 경우도 너무 많다. 사촌누나도 돈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한국에 와보니까 돈은 하나도 없는 남자였다. 어떤 경우는 남자가 술 먹고 때리고 심지어 집에 돈도 못 부치게 하니까 조선족 여자들이 결혼하고 도망을 간다. 이게 다 집안을 살리겠다고 고향 떠나오는데, 처우가 그러니 도망을 간다. 한국남자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돈 때문에 시집을 가려고 한다." (중국동포 김씨)

(2) 입국방법과 초기의 정착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과 초기의 정착과정이다.

① 입국방법

유형 1. 한국에 친척이나 친구가 있거나 기타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듣고 관광비자, 사업비자 등 단기사증으로 입국하게 된다.
유형 2. 본국에 일자리가 없거나 구하기 어려워서, 취업 소개소를 통해 한국에 연수생 비자로 입국하게 된다.
유형 3.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지만, 취업소개소를 통해 관광비자, 사업비자 등 단기사증으로 입국하게 된다

대부분 한국에 오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두 가지의 입국 유형을 보인다. 관광비자, 사업비자와 같은 단기사증으로 입국하거나 연수생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 연수생 비자로 입국하거나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다. 중국동포 역시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을 경우 연수생 비자로 입국하고,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 대개 관광비자나 친척방문 비자로 입국한다. 입국 유형은 대개 단기사증과 연수취업의 두 가지 형태이지만,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여부는 입국과정과 입국 후 한국에서의 최초의 정착 생활과 적응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표 III-12> 체류자격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			
체류자격		한국에 아는 사람 여부		체류자격		한국에 아는 사람 여부	
구분	명	있다	없다	구분	명	있다	없다
연수생 비자	6	1	5	연수생 비자	3	-	3
관광비자	15	12	3	관광비자	2	2	-
친척방문	-	-	-	친척방문	4	3	1
사업·무역 비자	4	2	2	사업·무역 비자	2	2	-
무응답	3	-	-	무응답	1	-	-

유형 1. 아는 사람이 있어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 아는 사람이 있어 관광비자로 입국 】"한국에 오기 전에 파키스탄에서도 일을 했었다.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한국에 친구가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그에게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의 전화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나도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부탁했었고 그 친구가 서류를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파키스탄 노동자 V씨)

대부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위의 친구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한국에 올 것을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위의 도움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는 훨씬 수월하게 입국한다.

조사대상자 중 중국동포는 한국에 친척이나 친구 등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총 10명 가운데 7명이었다. 중국동포는 자신의 친척이나 동네 친구들이 한국에 먼저 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도 쉽고, 입국 후에도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하여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는 사람 없이 연수생 비자로 입국한 경우는 김○○씨와 정○○씨와 같이 한국에 충분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기 전에 입국한 사례였다.

유형 2. 아는 사람 없이 연수생 비자로 입국한 경우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 직접적인 정보 입수가 어려울 때에는 연수생 비자를 허가 받고 입국한 사례가 다수이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수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III-13> 국적별 체류자격

체류자격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중국	계
연수비자	1	2	1	1	-	1	-	-	-	3	9
관광비자	4	7	1	-	1	-	-	-	2	2	17
친척방문	-	-	-	-	-	-	-	-	-	4	4
사업·무역비자	1	-	-	-	1	-	1	1	-	2	6

【 연수생으로 입국 】"한국에 오게 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한국에 오기 위해 2,000달러(200만원)를 브로커에게 냈다. 마닐라에 취업소개소가 있어서 200만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으면 연수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돈 내고 면접을 받은 것이 1999년 8월이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뒤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필리핀 노동자 B씨)

【 연수생으로 입국 】"스리랑카에도 일자리는 있었는데 그냥 한국에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되었다. 연수생으로 오는 과정도 어렵다. 돈을 많이 내면 한국에 올 수 있다. 스리랑카의 브로커들에게 240만원 정도 주었다. 이 돈을 내면 한국에 입국을 시켜준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했던 일은 자동차 브레이크를 만드는 일이었다. 월 24만원을 받았다. 연수생이어서 월급이 적었다." (스리랑카 노동자 H씨)

유형 3. 아는 사람이 없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연수업체의 배정을 받아 연수생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 서류를 만들고 입국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주로 본국의 취업소개소를 통해 입국한다. 대부분은 취업소개소가 다른 사람의 비자를 위조해서 관광

비자, 사업비자를 만들어 주어 입국하게 된다. 이 경우는 가까운 친구나 직접 아는 사람을 통하는 것보다는 훨씬 불안하고 힘든 정착생활을 하게 된다.

【 아는 사람이 없지만 관광비자로 입국 】"한 달 반짜리 여행자 비자로 왔다. 브로커에게 6,000달러 주고 비자를 만들었다. 브로커가 서류를 위조해서 만들었다. 한국사람이 어떤 네팔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아파서 못 가게 되어서 내가 대신 온 것이다. 네팔은 매우 가난한 나라이고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갔다가 잘 나오질 않으니까 비자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세미나 같은 서류를 많이 만들어준다. 공항에 입국할 때는 긴장하지 않았다. 한국사람이 나를 초대했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공항에서 돌려 보내지기도 하지만 난 99% 확신했다." (네팔 노동자 K씨)

② 초기의 정착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음 한국에 오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초기의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일까? 면접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체류자격에 따라 정착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형 1. 연수생 비자 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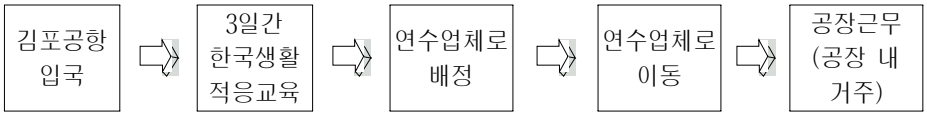

먼저 연수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허가 받은 경우는 한국에 입국한 후 3일간의 연수생 국내적응교육을 수행한다. 그리고 각각의 연수업체를 배정 받은 후 배치된다.

【 연수비자 입국자의 정착 과정 】"한국에 입국하여 김포공항에 내린 후 3일 동안 연수생교육을 받았다. 한국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배정을 받았다. 나도 사장님을 따라 공장으로 오게 되었다. 연수업체에 있었던 4달 동안 너무 힘들었다. 연수업체에서 30~40만원 정도(야근을 포함해서)를 받았다. 당시에 2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공장에 있었다. 거주지는 기숙사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공장 이층에 필리핀 사람 2명이 함께 살았다.” (필리핀 노동자 B씨)

【 연수비자로 입국자의 정착 과정 】“연수생 비자는 3년 비자인데 처음에 오면 중소기업청에서 2박 3일간 한국문화와 음식에 대해 가르쳐 준다. 다같이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 근처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45만원 정도를 받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다. 사장님은 2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수역이랑 뚝섬에 두 개의 공장이 있었다. 내가 있던 공장엔 외국인이 5명이 있었다. 방글라데시 사람, 필리핀 사람이었다. 처음 왔을 때 영어로 소통하는데 너무 답답했다. 공장에 있는 누구도 알아듣질 못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J씨)

유형 2. 관광비자 등의 단기사증 취업비자 입국 :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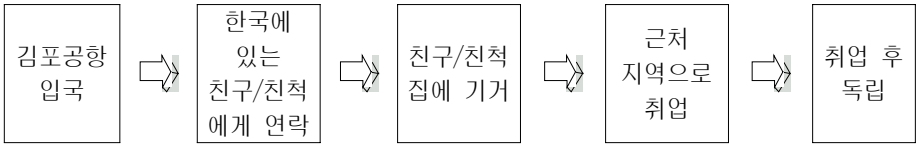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 경우의 정착과정은 의외로 쉬워진다. 관광비자,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15일, 1달, 3달이 지나 체류기간이 경과하면 자연히 불법체류자가 되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방법을 배우게 된다. 구직활동, 소비생활, 친구들과의 만남, 여가생활 등의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아는 사람이 거주하는 근처에 정착하게 된다.

【 아는 사람이 있어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비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입국과정에서 돈을 줄 필요는 없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는 친구 집에서 며칠을 살았다. 그 친구의 전화번호는 파키스탄에서 받아왔다. 그때 친구는 독산동에 거주했었다. 나도 역시 그 근처에서 친구의 소개로 직장을 구했다. 처음의 공장은 독산동의 봉제공장이었다.” (파키스탄 노동자 F씨)

【 관광비자 입국자의 정착 과정 】“처음에 한국에 오자마자 마석으로 갔다.

삼촌이 마석에 있었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에서 삼촌이 있는 마석까지 택시를 잡아타고 갔다. 그리고 나무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장은 삼촌이 소개시켜 주었다. 이때 나무공장에서 7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야근을 하면 1시간에 4~5천원씩 받았다. 그래서 총합 90만원 정도를 받았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R씨)

다수의 중국동포가 이 유형에 속한다. 한국에 먼저 나온 친척이나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정착과정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중국동포의 정착과정 】"중국에서 살던 집, 주인 할머니의 동생이 청량리에 있었다. 한번은 중국의 언니를 보러 중국에 놀러왔다가 우리(서씨 부부)와 친하게 되었다. 그 할머니의 동생은 자꾸 우리에게 한국에 가볼 것을 권했다. 그래서 친척에게 부탁해 초청 비자를 받아 중국에서 건너왔다. 그런데, 김포공항에 와보니, 친척들은 마중을 안나오고, 그 할머니가 공항에 나와 있었다. 결국 그 할머니를 따라 청량리에 왔다. 할머니는 이불하고 자리까지 만들어주고 쉬라고 하였고, 그 다음부터 친척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중국동포 서씨)

유형 3. 관광비자 등의 단기사증/취업비자로 입국 :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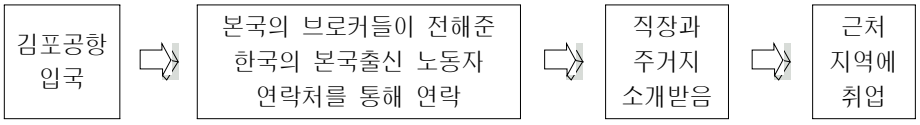

단기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한국생활 정착과정에 버팀목이 되어줄 지지자가 없는 경우는 대개 입국과정에서 한국입국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에 의해 한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소개받게 된다.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지 않으면, 출국 전에 미리 한국의 어디에 가면,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국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체류를 위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입국한다.

【 아는 사람이 없지만 사업비자로 입국 】"○○호텔은 이란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만난다. 그곳에 가면 이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 호텔에 대한 정보는 이란에서 이미 알고 왔다. 그래서 한국 도착해서 ○○호텔로 갔고 이란 사

람들을 만나서, 직장도 소개받았다." (이란 노동자 T씨)

【 아는 사람이 없지만 사업비자로 입국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에 소개소에서 연락처를 받아온 네팔 사람을 찾아갔다. 그 사람이 직업을 소개해줬다. 그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는 네팔에서 미리 주소를 알고 왔다." (네팔 노동자 K씨)

③ 입국비용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정 정도의 입국비용을 송출기관에 지불한다. 입국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송출국마다 그 비용이 각각 다르고, 그 비용도 실제 소요비용보다 몇 배나 높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수요는 많은데 외국인력 수입에는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표 III-14> 입국비용

입국비용	중국동포	동남/서남아	합계	해당국가
입국비용 없음	-	5	5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100만원 미만	1	1	2	태국
100~200만원	-	4	4	필리핀
200~300만원	-	3	3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300~400만원	-	-	-	필리핀
400~500만원	-	1	1	-
500~700만원	-	2	2	방글라데시, 네팔
700~1000만원	1	5	6	방글라데시, 이란
1000만원 이상	7	-	7	중국
무 응 답	3	6	9	-
전 체	12	27	39	-

면접결과로 현재 입국비용을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국동포이었다. 중국동포들은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동남/서남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도 700만원 정도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국가

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은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많은 국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송출기관들은 더 많은 입국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바로 송출비리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

> 【 입국비용 】"비자를 받는 데 6개월 정도 걸렸다. 삼촌 친구를 통해 그나마 빨리 구할 수 있었다.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공식적으로 계약과 서명을 하지 않는다. 대체로 입국하는데 700~800만원 정도가 든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지불비용 전체를 200만원이라고 작성한다. 나의 경우 입국비용은 삼촌에게 빌렸다. 어떤 경우는 집을 팔아서 입국비용을 만들기도 한다. 그런 경우 제대로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강제추방 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J씨)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취업은 구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자연히 입국비용은 브로커를 통해 증가된다. 더 많은 입국비용을 치르는 사람에게 입국비자가 제공된다. 심지어 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심각한 적체현상이 발생하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시일 내에 비자를 얻을 수 있다.

중국동포의 경우, 중국인 월 평균 수입이 원화로 10~20만원 정도인 것에 비교하면 입국비용으로 자신들 수입의 수십 배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빚을 지고 입국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동남/서남아시아 노동자의 경우 과다한 입국비용을 빚이나 은행대출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 【 입국비용의 조달 】"지금 한국에 들어오려면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가 입국한 1996년 당시는 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그 당시의 입국비용은 부모님이 내주셨다. 그때 약 7,000달러(600만원) 정도 들었다. 그때 환율이 1달러에 850원 정도였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T씨)

> 【 입국비용의 조달 】"입국비용이 너무 비싸다. 한국에 들어올 때 240만원 정도가 들었다. 입국비용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 왔다. 그 빚을 갚는데 1년~1년 반이 걸렸다. 은행에 5% 이자도 내야 한다." (태국 노동자 Y씨)

【 입국비용의 조달 】“큰아들이 한국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800만원을 날리고, 그 아들이 다시 한국에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제주도에서 잡혀서 1,000만원을 또 날렸다. 원래 한국 땅에 발만 들여도 브로커에게 1,000만원을 낸다. 그런데 해병대에게 잡혀서 그 1,000만원을 날리게 되었다. 큰아들이 잡히고 나서 보호소에 40일 정도 있을 때 몇 번씩 보러갔는데, 만나질 못했다. 도망갈까봐 팬티만 입혀놨다는 말을 들어서 옷 사서 넣어주고 끝내 얼굴을 못 봤다. 지금 아들은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형편없이 말랐다.” (중국동포 정씨)

외국인 노동자의 국가별 상황에 따라 관광비자로 입국할 때,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태국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프리미엄이 없었다. 대신 연수생 비자로 입국한 경우는 250여 만원 정도를 지불하였다.

<표 III-15> 국적별, 체류자격별 입국비용 사례

국 가	관 광 비 자			연 수 생 비 자		
	이름	입국년도	입국비용	이름	입국년도	입국비용
파키스탄	F씨	2002년	300만원	-	-	-
	F씨	1999년	비행기값	-	-	-
태국	Y씨	2001년	30~40만원	W씨	2000년	240만원
방글라데시	R씨	1999년	700만원	N씨	1997년	700~800만원
필리핀	J씨	1997년	110만원	B씨	2000년	200만원
국 가	친 척 방 문 비 자			연 수 생 비 자		
	이름	입국년도	입국비용	이름	입국년도	입국비용
중국(중국동포)	정씨	1994년	1,100만원	심씨	1999년	1,600만원

그러나 방글라데시, 필리핀은 관광비자와 연수생 비자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입국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중국동포의 경우도 방글라데시, 필리핀과 같이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입국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중국동포 정○○씨는 친척방문비자로 입국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비자를 위조하여 입국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제주도로 밀입국하려 한 경우에도 아들의 입국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불하였다.

【 중국동포들의 입국비용 】“아버지는 1998년도에 다시 들어오셨다. 그때 1,000만원~1,200만원 정도 비용을 대고 들어오셨다. 아내는 작년 8월에 임신해서 들어왔고 나는 작년 연말에 들어왔다. 나랑 아내랑 두 사람의 비용은 합해서 2,600만원 정도 들었다.” (중국동포 김씨)

【 중국동포들의 입국비용 】“입국하게 되는 과정은 대강 이렇다. 브로커를 만나 보증금 50~60만원 정도를 먼저 건네준다. 그러면 브로커는 여권과 비자를 만들어 주게 된다. 여권, 비자, 비행기 티켓을 받아 입국 희망자가 한국에 도착을 하면 제 3자를 통해 계약했던 나머지 돈을 건네준다. 대부분 빚을 지고 입국한다. 나도 빚을 갚는데 1년 반이 넘게 걸렸다. 지금도 빚이 2,000만원이 있다. 이자는 2%, 3%이다. 1,000만원 빚이 있으면 1년에 250만원 정도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중국동포 김씨)

국가별 송출기관의 송출비리로 입국비용이 개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운다. 입국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진 빚을 국내에 입국하여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다행이지만, 위조된 서류로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빚을 갚을 길은 없다. 국내에 입국하였어도, 빚을 다 못 갚고 출국을 당하게 되면 평생 다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다.

현행 연수제도는 연수생의 선발·도입·배정에서 송출기관에 연수생 선발 권한을 모두 맡겨놓은 형태이기 때문에[4] 송출과정에서의 비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입국과정의 무리한 입국비용의 부담은 입국 후 저임금의 연수생으로 남아있기 보다는 더 나은 임금을 받는 불법체류 노동자로 이탈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4) 송출기관의 연수생 모집과정은 각국의 언론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필요한 인력은 방송,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것을 보고 인력을 모은다.”(태국 외국인 노동자 E씨)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연수생 모집광고를 한다. 그리고 연수생 모집·송출 관리 사무실이 담당한다.”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 H씨)

4. 외국인 노동자의 일과 생활

1) 근무지

(1) 취업활동

① 체류기간 중에 거쳐간 직장수

면접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동한 직장수를 조사해 본 결과, 다음 <표 Ⅲ-16>과 같다.

<표 III-16> 거쳐간 직장수

직장수	중국동포	동남아	합계
1 개소	3	2	5
2 개소	1	3	4
3 개소	1	6	7
4 개소	3	6	9
5 개소	1	3	4
6 개소 이상	-	3	3
무 응 답	-	4	4
비 해 당	3	-	3
평 균	2.9	4	3.6
전 체	12	27	39

주 : 일용노동자는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거쳐간 직장은 평균 4개소였다.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이 평균 3.6년[1]이라고 하면, 1년에 한 직장을 거쳐가는 셈이다. 실제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상당한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5개 이상의 직장을 경험하였다. 특히, 중국동포들보다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면접대상자들의 평균 한국체류기간은 3.6년이었다.

【 빈번한 이직의 사유 】“처음에 가죽공장에서 5달 정도 일했다. 처음 공장에서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고 한 달에 33만원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15일간의 보증금을 강요했다. 그리고 공장을 떠나면 맡겨두었던 보증금을 주겠다고 해놓고서 주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다. 처음 공장에 간 이후로 10번 이상 직장을 바꾸었다. 상사나 사장님이 대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장을 바꿨다. 동상주조, 리어카공장 등등. 동상주조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 일하고 도망쳤다. 바꿀 때마다 보증금은 받지 못했다.” (필리핀 노동자 E씨)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E씨의 면접에서 나타나듯이, 공장주와 한국인・외국인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상당부분 노동자들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면접결과, 중국동포보다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더 높다는 사실은 동남/서남아시아인들의 작업환경이나 고용관계가 중국동포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닌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고용주의 비인도적 태도에 대한 가장 비공식적인 저항이 바로 이직으로 나타난다.

② 연수업체 이탈 사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체류 중에 이직을 한다. 그 가운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연수생들 역시 대개 불법적 신분으로 이탈한다. 연수업체를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입국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했는데, 그에 비해 연수생들이 받게 되는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이고, 심지어 그 돈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III-17> 연수업체 이탈사유

순위	항 목	중국동포	동남/서남아시아
1	임금체불	2	3
2	비자만료	1	1
3	주위의 권고	1	-
4	공장폐쇄・이전	-	1
5	동료의 산재를 통한 업무에 대한 충격	-	1

【 적은 월급과 고용조건으로 인한 이탈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달에 24만원을 받았다. 연수생이라서 월급이 너무 적었다. 난 연수생으로 3개월 있었는데, 공장의 일이 힘들고 문제도 많았다. 야근도 많고, 월급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만두었다.” (스리랑카 노동자 H씨)

【 산재에 대한 공포로 인한 이탈 】“네 달을 연수업체에 있었다. 너무 힘들었다. 공장에서는 30~40만원 정도(야근을 포함해서)를 받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 공장에서 처음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았었던 것 같다. 생활은 기숙사라고 하긴 좀 그런, 공장 이층에서 살았다. 철공장이었는데 기계를 다루면서 사고의 위험이 많았다. 결국 손가락이 기계에 짤릴 뻔한 일을 겪으면서 그 공장을 도망쳐 나왔다.” (필리핀 노동자 B씨)

③ 이직 사유

<표 III-18> 이직사유

순위	항 목	중국동포	동남/서남아시아인
1	임금체불	2	7
2	적은 수입	1	7
3	계약기간 만료, 퇴직명령, 회사의 이전, 공장폐쇄	1	6
4	관리자의 구타와 욕설	-	5
5	과도한 업무	-	4
6	질병, 임신, 산재	1	3
7	회사가 숙식제공을 하지 않아서	-	1
8	불법단속, 강제추방	1	1
9	일이 위험해서	-	1
10	자녀양육때문에	-	1

주 : 중국동포들은 대개 식당일이나 일용직을 하기 때문에 이직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동남아 노동자들은 대개 중소, 영세제조업 공장 노동자로 근무하기 때문에 공장상황과 인간관계에 따른 이직이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조건과 노사관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높은 이직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접 밝힌 이직 사유에서도 나타난다. 직

장을 많이 옮기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임금체불이다. 그리고 관리자와의 갈등과 적은 보수이다. 임금체불의 문제와 욕설, 구타의 문제는 중국동포보다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은 호소를 하고 있다.

④ 종사직업

<표 III-19> 종사직업

구 분	중국동포	동남/서남아시아인	국제결혼가정한국인
남	일용직 (3명) 중국동포교회직원 (1명)	웰링공장 (1명) 플라스틱공장 (5명) 봉제공장 (5명) 양말공장 (1명) 가죽공장 (1명) 바닥청소기공장 (1명) 센터일 도움 (1명) 라벨공장 (1명) 전기공장 (1명) 벨트가방처리공장 (1명) 옷세탁공장 (1명) 슈퍼보조 (1명) 옷공장 (1명) 가구공장 (1명) 악세사리공장 (1명)	중국꼬치구이집 경영 (1명)
계	4	23	1
여	식당일 (2명) 미싱보조 (1명) 포장회사 (1명) 호프집 경영 (1명) 무직 (2명) 구직 중 (1명)	여관청소 (1명) 자수공장 (1명) 양말공장 (1명) 김치공장 (1명)	무직 (2명)
총계	8	4	2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동포의 종사직업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동포의 경우 남자는 건설일용직 종사자가 다수이고 여자는 주로 식당 서빙이나 주방 설거지를 한다. 동남/서남아시아인은 성별에 상관없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면접 결과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총 27명 중 플라스틱공장 종사자가 5명, 봉제공장 종사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동포

들은 총 12사례 가운데 남성의 경우 일용직 3명, 여성의 경우 식당 보조가 많았다.

⑤ 작업장 규모

대부분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작업장의 규모는 직원 9인 이하의 영세한 경우가 많았다.

<표 III-20> 종사하는 사업체 규모

규모	동남/서남아시아인	중국동포	계
1~4인	5	2	7
5~9인	4	1	5
10~19인	2	1	3
20~29인	1	1	2
30인 이상	1	-	1
무응답	14	3	17
비해당	-	4	4
계	27	12	39

주 : 중국동포의 경우 일용노동자들은 일정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해당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조건은 300인 이하의 중소제조업체로 숙박시설이 있는 업체로 대개는 50인 이상의 업체라는 자격요건[2]을 연수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은 10인 이하 규모의 영세업체이다.

---

2)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연수업체의 자격요건)

① 연수생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삭 제 < '98. 6.15 >
2. 생산직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중소제조업체
3. 연수생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제조업체
4.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되는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도 가능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수생을 5년 이상 활용한 연수업체로서 생산직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자격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체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도금, 열처리업종 등 내국인 취업기피가 심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기협에 연수업체 신청을 내고 연수생을 받은 제조업체보다 영세한 규모의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연수생 신분이 아닌 불법체류노동자들이 실제 인력난이 심각한 영세규모업체에 찾아들고 있다.

⑥ 근무지[3)]

<표 III-21> 근무처

국 가	근 무 지		국 가	근 무 지	
방글라데시	창신동 쉼터	종로구	필리핀	신림동 봉제공장	관악구
	성수동 프레스공장	성동구		독산동 양말공장	금천구
	월계동 봉제공장	노원구		미아동 김치공장	강북구
	남가좌동 슈퍼	서대문구		부천 플라스틱공장	부천
	을지로 바닥 청소기 공장	중구		삼성동 여관청소	강남구
	남양주 화학공장	남양주		수유동 자수공장	강북구
파키스탄	신림동 봉제공장	관악구		신당동 라벨공장	중구
	부천	부천	네팔	군포 플라스틱공장	군포
스리랑카	안산가죽공장	안산		인천 세탁공장	인천
베트남	봉제공장	성북구	나이지리아	남양주 전기관련공장	남양주
태국	파주 가구공장	파주	태국	왕십리 옷공장	성동구
중국	대림동 미싱보조	영등포구	중국	가양3동 포장회사	강서구
	구로 중국동포 교회	구로구		압구정동 식당	강남구
	횟집 설겆이	-		가리봉동 호프집 경영	구로구
	비해당 (7)	-			

주 : 비해당 항목은 무직자와 일용노동자를 포함한다.

면접대상자들이 말하는 근무지역을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보면, 서울의 25개 자

3) 정연주(2001)는 1994년, 1996년, 1999년 시간이 가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공간의 확장과 전이과정을 살펴보았다. 정연주에 의하면 1994년 서울시 금천구의 가리봉3동 지역에 두드러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1999년에는 금천구 가리봉2동과 독산1동, 구로구 구로3동, 성동구 화양동, 성수2가1동으로 확장되었고, 급증하였다고 한다. 또한 강서구 방화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거여동, 도봉구 도봉동, 쌍문동에 외국인이 증가하여 서울외곽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분포도 확장되었다고 한다.

치구 중 11개 자치구에 근무지가 있었다.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해있는 지역인 성동구, 구로구, 중구를 제외하고 강남구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강남구의 근무처는 식당, 여관이었다. 서울지역은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지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안산, 부천, 남양주와 같이 제조업체 밀집지역에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었다.

<표 III-22> 근무지 위치

서울	종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금천구, 중구(2명), 관악구(2명), 성동구(2명), 강북구(2명), 강남구(2명), 구로구 (2명)	11개 자치구
경기도	안산, 군포, 인천, 부천(2명), 남양주(2명)	

(2) 고용조건과 환경

① 소득

<표 III-23> 월 소득

월 소득	동남/서남아시아 노동자		중국동포		국제결혼가정
	단신	가족 단위	단신	가족 단위	가족 단위
70만원이하	3	-	3	-	-
71~80	2	-	1	-	-
81~90	6	-	-	-	-
91~100	8	-	2	1	1
101~120	2	-	-	-	-
121~180	1	2	1	-	-
181~200	-	1	1	1	-
201이상	-	-	-	2	1
무응답	1	-	-	-	1
비해당	1	-	-	-	-
평 균	95만원	163만원	99만원	247만원	150만원

면접대상자들이 밝힌 월 소득을 살펴보면, 단신 동남/서남아시아 노동자는 월 소득이 95만원, 가족 단위는 163만원이다. 중국동포는 단신 노동자의 소득은 99만원,

가족 단위의 소득은 247만원이었다. 물론 몇 개의 제한된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면접결과의 수입을 외국인 노동자 전반에 일반화시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중국동포의 소득이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의 소득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가족 단위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함께 입국한 부부가 동시에 돈을 벌어 두 사람의 수입을 합산하였기 때문이다.

소득 면에서 볼 때 가장 높은 소득자는 중국동포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중국동포 김○○씨는 한 달에 180만원 정도를 번다고 한다. 그러나 일용직은 날씨와 경기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 내내 고정적으로 18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개 한 달에 20일, 1년에 6개월 정도 일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여름의 장마철이나 비가 오는 날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면접대상 중국동포 남성의 경우 일용직, 여성의 경우 식당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남성은 180만원 정도, 여성은 80~100만원 정도를 벌었다. 반면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남성의 경우 90~100만원 정도, 여성의 경우 70만원 정도를 벌었다. 대체로 기본급 70만원에, 야근을 하면 시간당 3,000원을 받고 있었다.

【 건설일용직의 수입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일이 꽤나 많았다. 그때 한 달에 한 180만원~200만원 정도 벌었다.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 일도 잘했다." (중국동포 김씨)

【 건설일용직의 수입 】"일거리는 새벽시장에서 구한다. 4시 30분에 일어나서 신림동 새벽인력시장에 나간다. 밤에는 10시, 11시 사이에 잔다. 사람들을 만나 5시 30분쯤 일을 나가게 되고 일당은 10만원 정도 받는다. 나같은 경우는 건설노동의 경험이 있으니까 10만원 정도 받는다. 건설 일용노동이 대부분의 일이다. 일 많으면 한 달에 20일 정도 일을 한다. 점심을 먹고 잠깐의 휴식시간이 있고, 오후 일은 하면 5시쯤에 일이 끝난다." (중국동포 김씨)

【 중소제조업체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 】"천안의 연수업체에 가서 받은 돈은 한 달에 30만 6천원이었다. 가리봉동 볼펜공장에서는 7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볼펜공장에 있다가 인천남동공단에 갔다. 거기서는 잔업시간을 합치면 월 110~120만원 정도를 받았다. 부천공장은 역시 일은 힘든데 돈은 많이 못 받았

다. 기본급 70만원, 잔업을 하면 1시간에 3천원이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W씨)

【 중소제조업체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 】“수원에 있는 공장에서는 내가 가진 기술도 없었으니 60만원을 받았고 야간을 하면 한 달에 80~90만원을 받았다. 성수동 공장에서는 85만원을 받고 야간을 하면 90~100만원, 11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야근은 바쁘면 일주일에 4번, 안 바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없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는 회사가 바쁠 것 같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J씨)

【 중국동포 여성 노동자의 수입 】“건설현장의 식당에서 80만원 정도를 받았다. 탄천하수처리장에서도 8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그 뒤에 있었던 도시락공장은 130만원 정도, 좀 넉넉히 받았다.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란 것을 알았지만, 일이 워낙 힘들고 많아서 일하려는 사람은 없으니 동포들을 고용했다.” (중국동포 이씨)

② 노동시간

<표 III-24> 1일 노동시간

(단위 : 명)

노동시간	중국동포	동남/서남아시아	총 합
10시간 미만	6	6	12
10~11시간미만	-	7	7
11~12시간	-	1	1
12~13시간	3	3	6
13~14시간	1	3	4
14~15시간	1	3	4
15시간 이상	-	-	-
무응답	1	4	5
평균	10.6시간	10.8시간	10.8시간
전체	12	27	39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10.7시간으로 대략 11시간 정도이다. 야근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이다. 면접대상자의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동남/서남아시아 외

국인 노동자가 10.8시간, 중국동포는 10.6시간으로 동포들의 노동시간이 다소 적었다. 이 노동시간의 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 간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인들이 종사하는 제조업과 중국동포들이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식당 서비스 업종의 차이이기도 하다.

> 【 중국동포 여성 노동자의 근무시간 】 "건설현장의 식당일은 대개 컨테이너 박스에서 다른 4명의 교포아줌마들이 함께 자고 먹고 한다. 일은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이 있다. 월급은 100만원을 받았다." (중국동포 이씨)

> 【 중국동포 여성 노동자의 공장경험 】"한국 나갈 때까지 도시락공장에서 일을 계속했다. 일은 새벽 4시 30분~오후 5시, 늦으면 오후 9시까지 일을 했다. 처음엔 나 혼자였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손이 모자라니까 점점 교포들이 늘었고 교포 3명이 함께 일했다. 이런 일은 한국아줌마들은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한다." (중국동포 이씨)

> 【 중소제조업체의 근무시간 】"일은 아침 8시 30분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근무한다. 이것은 낮 근무일 때의 시간표이고 일주일 간격으로 밤 근무와 낮 근무를 교대로 한다. 밤 근무는 저녁 8시 30분에 시작해서 아침 7시까지 일을 한다." (파키스탄 노동자 V씨)

> 【 여관청소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시간 】"자는 시간외에는 계속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 미리 얘기하고 허락을 받고 외출할 수 있으나, 일요일과 은행에 갈 때 빼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필리핀 노동자 T씨)

③ 작업장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

작업현장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면접대상자들의 반응은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으로 나뉘어졌다. 면접자의 인상으로는 중국동포들은 작업장 내에서 고용주와 동료, 감독관(관리자)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였고,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관계보다 작업장 감독자(관리자)와 한국인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향이 있었다.

작업장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면접대상자들의 작업장 내의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동포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II-25> 작업현장에서의 경험

항 목	동남아시아 외국인		중국동포	
	고용주와 관계	한국인 관리자/동료와의 관계	고용주와 관계	한국인 관리자/동료와의 관계
구타	1	5	-	-
욕설	9	2	1	-
성희롱	-	1	-	-
임금체불	17		3	
산재	2		1	
산재보험유무	1사례만 산재처리됨		산재처리됨	

주 : 동남아시아 외국인은 총 27사례이고, 중국동포는 총 12사례이고 그 가운데 구타, 욕설, 성희롱, 임금체불, 산재경험에 대한 면접대상자들의 응답이다.

중국동포들이 욕설을 당한 사례는 1명에 불과했고, 구타나 성희롱을 당한 경험은 없었던 반면,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구타를 당한 노동자 6명, 욕설 11명, 성희롱 1명이었다. 임금체불 역시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총 27명 중 17명으로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을 경험하였고, 중국동포들은 총 12명 중 3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초래한 데에는 언어소통의 오해가 있기도 하겠지만, 외모가 한국인과 다르다는 사실에 기인하기도 한다. 동남/서남 아시아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장 내 관계에서는 고용주보다는 한국인 동료와 감독관(관리자)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많았다.

【 한국인 동료와 감독관과의 관계 】"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맞은 적이 있다. 안산에서는 한국인 동료가 발로 찼고, 가구공장에서는 감독자가 항상 때렸다. 그냥 참았다. 어쩔 수 없었다." (필리핀 노동자 E씨)

【 한국인 동료와 감독관과의 관계 】“관리자가 너무 나빴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여권을 빼앗아 갔는데,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도 주지 않았다. 몇 번 맞기도 했다. 그리고 관리자 외에 다른 한국사람들이 때리기도 했다.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도 모두 빼앗아갔다. 처음에는 여권을 맡아준다고 해서 사장님을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는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다. 2~3일 동안 부탁했었는데도, 받을 수 없었다. 그때는 한국말을 몰랐으니 한국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나중에 욕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N씨)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작업장 내 고용주와의 노사관계 외에, 함께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관계 역시 불편하고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마치 작업장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 아래, 작업장의 위계구조 최하위층에 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면접 사례에서도 한국인 동료와의 관계가 위계적이고 욕설과 구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드물지만, 공장에서 한국인 고용주와 동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외국인 노동자도 있었다. 한국에 체류하는 5년간 직장을 10번 넘게 바꾸었던 필리핀 노동자 E씨와 달리 이직을 한번도 한 적이 없었던 나이지리아 출신의 H씨는 근무지에서 사업주와 동료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

【 고용주와 동료와의 관계 】“현재 사장님과 동료들과의 관계는 좋다. 임금체불이나 폭력 같은 일도 없었다. 한국인 회사동료들이 가장 친한 한국인들이다. 말은 안 통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매일 같이 살기 때문에 매우 가깝다. 이웃과의 관계도 좋다. 특히 옆집 사람은 나를 잘 도와준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아기와 아내를 잘 돌봐주었다.” (나이지리아 노동자 H씨)

H씨는 입국한 지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계속 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도 만나지만, 현재의 고용주와 공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이직 한번 없이 일하고 있다. 동남/서남아시아 노동자들은 고용주와 공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H씨와 같이 생활의 안정감을 얻는다. 외국인 노동자들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노동현장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작업장 내의 사회적 관계는 한국생활의 정착과 적응에 상당히 중요하다.

동남/서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작업장 내에서 다소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

면서 동료들과 사장에게 이직을 하거나 인내로 버티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중국동포들은 대체로 원만한 작업장 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 중국동포의 작업장 내 사회적 관계 】 "직장에서 사람들이 다 잘해 주는 편이다. 우선 일하기 바쁘니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다. 하여간 겉으로 다 잘 해 주는 편이다. 싫은 내색은 안 하는 것 같다.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괜찮다." (중국동포 심씨)

> 【 중국동포의 작업장 내 사회적 관계 】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도 있다. 보조들은 다 월급이 비슷하다. 딱히 중국인이라고 차별은 거의 없다." (중국동포 이씨)

그러나 중국동포들이 종사하는 직종 가운데 건설일용직의 경우, 현장의 십장과의 관계는 일거리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동포들이 십장에게 절대 복종하거나 많은 부분을 인내하며 일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십장과 건설 일용노동자인 중국동포들 간에는 위계서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건설일용직의 십장과의 관계 】 "일할 때는 관계가 좋아도, 일하고 나오면 돈을 적게 주려고 하고, 돈을 안 주려고 한다. 교포들에게만 그런다. 한국사람에게는 어디 그럴 수 있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다. 신고하면 법무부에서 나오니까 그러지도 못한다. 단지 불법체류자니까 우리에게만 그런다." (중국동포 김씨)

> 【 건설일용직의 십장과의 관계 】 "종종 노동현장의 동료를 우리집에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동행해서 온 한국사람들은 대개 고자세이다. 반말로 말을 하고 교포들 앞에서 특권의식을 보이며 행사하고자 한다. 교포들은 작업현장의 동료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 경우는 정말 보기가 싫다. 손님들에게 그런 경우 한국사람을 데려오지 말라고 권한다." (중국식 꼬치구이집을 운영하는 국제결혼 가정 국씨)

건설일용직의 현장과는 달리, 주로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동포 여성들은 비교적 한국인 동료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는 임금체불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기도 한다.

> 【 중국동포의 작업장 내의 관계 】“성북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6년간 일을 했다. 여기서도 월급을 제때 받은 적이 없다. 한 달에 약값으로 겨우 10만원 정도만 주었을 뿐이다. 매번 다음 달 월급은 미루고 주지 않았다. 내가 약값으로 돈을 달라고 해서 월급을 받으면 다음 달 월급은 주지 않았다. 어떤 경우는 3달, 어떤 경우는 6달 월급을 주지 않았고, 1~2년치 월급을 못 받기도 했다.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말할 때마다 계속 돈을 준다만 말만 할 뿐이었다. 그러다 사장이 죽었고 그 후로 아들이 사업을 계속 했는데, 아들은 아예 밀린 월급을 못 준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소송중이다. 그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잘해 주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같은 동포들도 있었고 한국 사람들도 있었다. 성북동 쓰레기분리사업소에서는 재활용 일을 하던 미화원들과도 같이 일했는데, 그 사람들은 참 좋았다. 아프면 빵도 사주고 수시로 감싸주고 돌봐주고, 아플 때는 돈도 먼저 빌려주었다. 고마운 사람들이다.” (중국동포 정씨)

작업장 내에서의 고용주와의 관계, 한국인 동료들과의 관계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 동시에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결정짓는 한 요소가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공간은 외국인 노동자 생활공간의 70%를 차지한다. 작업장 내의 관계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자, 사회적 관계가 된다.

2) 주거지

(1) 주거지역

<표 III-26> 주거지역

지역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중국동포	국제결혼 가정
서울 지역	독산동(2명), 대림동, 성수동(2명), 왕십리, 석계, 창신동, 삼성동, 수유동, 신당동(2명)	서울 지역	군자동, 신도림(2명), 노량진, 동대문지역, 구로동(3명), 청량리, 봉천동, 개봉동, 오류동	신림동, 가리봉동
해당 지역구	영등포구, 중구(2명), 성동구(2명), 종로구, 금천구(2명), 강북구, 강남구	해당 지역구	구로구(7명), 광진구, 동작구, 관악구, 동대문구, 종로구	관악구, 구로구
경기 지역	부천(3명), 인천, 군포, 파주, 남양주(3명), 안산	경기 지역	-	안산

면접대상 동남/서남아시아 노동자들의 주거지는 서울지역은 독산동, 성수동, 신당동 등이고, 경기지역은 부천, 남양주 등이다. 중국동포는 면접대상자 모두 구로동, 신도림 등의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서울지역 자치구 단위로 거주지를 살펴보면, 동남/서남아시아 노동자의 경우, 중구, 성동구, 종로구와 그 외의 지역에 동일하게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동포의 경우는 구로구에 집중 거주하고 있었고, 그 외의 지역 거주지 분포는 동일하였다.

(2) 주택 점유형태와 거주인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거형태는 조사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월세 방 한 칸, 좁은 부엌에서 살고 있다. 화장실은 공용인 경우도 있고, 방 옆에 화장실 공간이 따로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지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지하 셋방이나 옥탑 방에 거주한다.

【 사진 Ⅲ-1 】 네팔 노동자 E씨의 월세 방 내부 사진이다.

E씨는 군포시 낭동의 4층 옥탑 방에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 방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 20만원씩을 지불하는 방으로 싱크대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부엌이 문을 열자마자 왼편으로 놓여있고, 바로 그 옆에 2평 정도의 작은 방이 있고 현관을 나와서 오른편으로 작은 화장실이 붙어있다. E씨는 옥탑이라 독립된 공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방이 좁은 것을 제외하고는 집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E씨에 의하면 화장실이 공동공간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기다린다고 한다. 아래의 첫 번째 사진은 화장실 창문의 사진이다.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면접대상자 중 12명이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였고, 공장 밖에서 사는 경우는 주로 월세 방에서 살고 있다. 중국동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월세 방에 거주한다. 그러나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경우는 전세 방이나 전셋집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부부가 함께 입국한 경우는 부부가 한 방에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본국 출신의 친구와 함께 두 명이 산다.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도 평상시에 두 명이 함께 거

주하지만 일이 많아 인력채용이 많으면 3~4명이 함께 살기도 한다. 중국동포는 면접대상자들이 대부분 가족 단위 거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부 두 명이 함께 생활을 하거나 자녀와 함께 3명이 월세 방이나 전셋집에서 생활을 한다.

<표 III-27> 주택 점유형태와 주거비

(단위 : 명, 만원)

주거점유 유형	동남아		중국동포		국제결혼가정	
	해당수	주거비	해당수	주거비	해당수	주거비
월세	9	0/16**, 0/20(3), 50/20, 100/20, 200/14(2), 200/20	6	100/15, 200/15, 200/20, 300/20, 500/15, 500/25,	1	500/15
전세	-	-	2	1,300, 1,000	1	-
기숙사 (회사제공)	12	-	1	-	-	-
쉼터	1	-	1	-	-	-
무응답	4	-	2	-	1	2

주 : 보증금과 월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0/16은 보증금 없이 월 16만원의 비용을 지불함을 의미한다.

<표 III-28> 가구당 거주 인원

인원	단신	2명	3명	4명	5명 이상
동남/서남아시아	3	15	2	1	1
중국동포	2	5	3	1	-

【 회사의 기숙사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나쁘지 않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숙식이 모두 해결된다. 방은 하나이고 식당이 있다. 화장실은 건물 내부에 있다. 방 하나에 2명이 잘 때도 있고, 공장이 바쁠 때는 4~5명이 함께 자기도 한다. 4~5명이 잘 때는 생활하기가 좀 어렵다. 보통 3명이 지낸다.” (네팔 노동자 K씨)

【 지하 전셋집 】“봉천동 집은 반 지하이고, 천 만원짜리 전세집이다. 집이 아주 높은 곳에 있다. 걸어서 10분은 올라간다. 아이도 있으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반 지하가 아닌 곳으로 이사가고 싶다.” (중국동포 김씨)

【 회사 기숙사 】“지금 사는 곳 역시 회사의 기숙사이다. 밥은 해먹는다. 그게 더 싸게 먹힌다. 지금 현재 2명이 한 방을 쓰고 있다. 넓으면 3~4명이 쓴다. 기숙사 내방에는 옷장 두 개, 냉장고 1개, 에어콘 1개, 정수기 1개, TV 1개, 세탁기가 있다. 방안에 다 들어간다. 방안의 물품은 에어콘을 빼면 나머지는 다 내가 구입한 것이다. 다 중고제품을 구입하였다. 가전제품은 새 것을 사면 비싸고 이사를 가면 버리니까 중고를 산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J씨)

【 월세 방 】“사는 집은 현재 대림동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8만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합치면 20만원 정도이다.” (필리핀 노동자 B씨)

(3) 주거지와 근무지 간의 이동거리

교회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허○○씨와 병으로 교회 쉼터에서 생활하는 정○○씨를 제외하고, 중국동포들은 면접대상자의 모든 경우가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씨는 광진구 군자동의 옥탑 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매일 아침 압구정동의 식당으로 출근하고 있다. 건설일용노동을 하는 중국동포들의 주거지는 각각 청량리, 개봉동, 봉천동이었다. 동남/서남아시아 노동자들은 파악된 22명 가운데 9명이 근무지와 주거지가 동일한 형태였고, 나머지 13명은 근무지와 분리되어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리된 형태에서 근무지와 주거지 간의 거리는 중국동포의 경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반면, 동남/서남아시아 노동자의 근무지와 주거지 간의 거리는 가까웠다. 대개 동일 자치구 내에 근무지와 주거지가 있거나, 떨어져 있더라도 바로 인접한 지역이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 V씨는 현재 관악구 신림동 봉제공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금천구 독산동의 친구 월세 방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금천구, 구로구, 성동구에 많았다. 중국동포 역시 근무지와 주거지가 인접 지역구이거나 동일 지역구인 경우도 있지만, 동남/서남아시아 노동자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다. 중국동포 서○○씨는 매일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고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의 새벽시장을 간다. 그리고 중국동포 김○○씨 역시 광진구 군자동에서 강남구 압구정동의 식당까지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다닌다.

<표 III-29> 주거지와 근무지 간의 이동거리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		
국가	근무지	주거지	지역 구분	근무지	주거지	지역 구분
방글라데시	창신동쉼터	쉼터	동일	교회	교회 숙소	동일
	성수동 프레스공장	기숙사	동일	건설일용직 송파구의 새벽시장	청량리 월세 방	타지역
	월계동 봉제공장	석계 월세 방	동일 지역	무직(남편은 압구정동 식당보조)	구로동 지하 월세 방	타지역
	남가좌동 슈퍼	남가좌동 월세 방	근처			
	을지로 바닥청소기공장	성수동 월세 방	인접 지역	압구정동 식당	군자동 옥탑 전세방	인접 지역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공장 컨테이너박스	동일			
	남양주 마명리 우성화학	공장 컨테이너박스	동일			
파키스탄	신림동 봉제공장	독산동 월세 방	인접 지역	횟집 설거지(남편은 성남 일용직)	오류동 월세 방	타지역
	부천	부천회사근처 월세 방	근처			
스리랑카	안산가죽공장	안산 월세 방	근처	구직중 (함바식당에 있었음)	동대문 월세 방	-
베트남	봉제공장	월계동 월세 방	-			
필리핀	신림동 봉제공장	구로동 월세 방	인접 지역	대림동 미싱보조	신도림 월세 방	동일 지역
	독산동 양말공장	대림동 월세 방	근처	가양3동 포장회사	노량진	타지역
	미아리 김치공장	공장 앞	근처			
	부천 플라스틱공장	회사에서 제공하는 월세 방	근처			
	삼성동 여관	여관	동일	가리봉동 호프집 경영	신도림	인접 지역
	수유동 자수공장	공장 2층(동일)	동일			
	서울 신당동 라벨공장	신당동 회사에서 제공한 월세 방	근처	건설일용직 신림동 새벽시장	개봉동 월세 방	인접 지역
네팔	군포플라스틱공장	군포 월세 방	근처	건설일용직 신림동 새벽시장	봉천동 반지하 전세집	동일 지역
	인천 세탁공장	인천 회사에서 제공한 방	근처	무직(질병)	중국동포교회 쉼터	-
나이지리아	남양주 전기관련공장	기숙사	동일			
태국	파주가구공장	기숙사	동일			
	왕십리 옷공장	기숙사	동일			

주 : 거리상 동일>근처>동일지역>인접지역>타지역 순으로 가깝다.

(4) 주거지에서의 사회적 관계 : 이웃과의 관계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의 지하 월세 방 혹은 옥탑 전세방이나 전셋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건물 다른 층의 이웃과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대체로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소통도 원만하지 않고 노동현장에서 장시간 일을 하고 있으므로, 이웃과 마주칠 기회가 없다. 따라서 누가 우리 집 옆에 살고 있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어소통이 가능한 중국동포나 한국말을 약간씩 구사할 줄 아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원만한 이웃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 【 이웃과의 관계 】 "이웃에 누가 사는 지도 모른다. 여기 이사온 지 2주밖에 안되었다." (필리핀 노동자 E씨)

> 【 이웃과의 관계 】 "이웃이나 주변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단지 집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점이 불만이다." (필리핀 노동자 B씨)

> 【 이웃과의 관계 】 "이웃과의 관계는 서로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인사조차도 하고 지내기 어렵다. 집주인은 좋은 편이다." (필리핀 노동자 J씨 부부)

이웃과 마주할 시간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웃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단, 이웃에 본국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생활할 경우는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집주인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위에 제시된 이웃에 무관심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단위와 거주지 이동횟수를 파악해보면, 다음 <표 Ⅲ-30>과 같다.

<표 III-30> 이웃에 무관심한 사례

사 례	거주단위	거주지이동횟수	노동시간	한국어능력
필리핀 노동자 E씨	단신	10번 이상	9시간	전혀 못함
필리핀 노동자 B씨	단신	4	10시간	전혀 못함
필리핀 노동자 J씨 부부	가족	5	12시간	전혀 못함

3명 모두 단신 거주자이고, 면접대상자 평균 직장경험이 4개였던 것에 비해 거주지의 이동이 잦다.

【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특히 옆집 사람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와 아내를 잘 돌봐 주었다.” (나이지리아 노동자 H씨)

【 이웃과의 관계 】“밑의 층 사람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명절에는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 대체로 이웃과 잘 지내고 있고 사람관계에 큰 어려움은 못 느낀다. 그리고 가까운 한국사람도 여럿 있다. 집주인하고 관계도 좋다.” (중국동포 김씨)

【 이웃과의 관계 】“주인집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가져다 준다. 우리가 교포인 것을 주인집도 알고 있지만 서로 잘 지내고 있다.” (중국동포 김씨)

이웃과 관계가 원만한 위의 3가지 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Ⅲ-31>와 같다.

<표 Ⅲ-31> 이웃과 원만한 관계의 사례

사 례	거주단위	거주지이동횟수	노동시간	한국어능력
나이지리아 노동자 H씨	가족	1	10~12시간	못함
중국동포 김씨	가족	3	8~10시간	능통
중국동포 김씨	가족	2	8~10시간	능통

거주단위로 모두 가족 단위로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 이동이 1회나 2회 정도로 적었다. 그리고 한국어가 아주 능통한 중국동포이거나 약간의 어휘를 구사하는 정도의 실력이었다.

3) 이동력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지/근무지 이동력에는 중국동포와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 간 차이가 있다. 중국동포는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소 분리되지만,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거지와 근무지가 분리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대부분의 연수업체들은 연수생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연수업체 선정조건 중 하나가 숙식 제공이다. 따라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때, 업체들은 작은 규모의 공장 내 기숙사를 마련하고 있거나, 회사 근처의 월세 방을 잡아주어 생활하게 한다. 따라서 공장 노동자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개 근무지나 근무지 주변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근무지와 주거지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한국생활에 적응하게 되면 한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중국동포들은 일정한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중국동포 김○○씨는 건설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림동 지하 전셋집에서 건설현장으로 나간다. 그리고 매일 압구정동의 식당으로 출근하는 서○○씨의 남편은 구로동에서 출근한다.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지와 근무지는 대개 결합되어 있다. 일하는 곳이 바로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거지를 변경하였다는 것은 바로 근무지를 옮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무지 이동 사유는 거의 고용관계와 고용조건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월급이 너무 작아서', '임금체불 때문에', '사장님이나 한국인 직원들의 인격적 무시 때문에' 등의 다양한 이유가 주된 이주 사유이다. 한 직장을 이탈한 후에 새로운 직장은 주위 친구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은 대개 공장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동포의 이동력을 몇 가지 사례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사례들은 노동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구성 서술하였다.

<표 III-32> 이동력 유형

구 분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
이동빈도에 따라	이동이 적은 사례 이동이 많은 사례	-
근무지와 주거지 분리여부	근무지와 주거지 일치형 근무지와 주거지 분리형	근무지와 주거지 일치형 근무지와 주거지 분리형

(1)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① 이동이 적은 사례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동력이 적은 사례는 면접결과에서 볼 때 극히 적었다. 대부분의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장을 자주 옮겨다녔다. 그러나 아래의 2가지 사례는 계속 한 공장에서 생활을 하거나, 공장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 꾸준히 한 공장에 근무하고 생활하는 경우이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원만한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 고용주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나 외국인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서로 돕고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탈 없이 꾸준히 생활하고 있었다.

【 나이지리아 노동자 H씨 사례 】 나이지리아 노동자 H씨는 1997년 12월, 사업비자로 입국하였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이어받게 되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남양주의 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그 동안 필리핀 출신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하여 아이도 있다. H씨는 공장에서 고용주와 한국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임금체불이나 폭력 같은 일은 당해본 적이 없다. 월급은 주간에는 90만원, 야간에는 100만원을 받는다.

【 H씨의 근무지 이동 】

남양주 전기관련 공장

【 H씨의 주거지 이동 】

남양주 (기숙사)

② 이동이 많은 사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빈번하게 직장을 옮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무시, 작업장에서의 가혹한 대우, 업주의 횡포, 임금체불,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의 노동 등이 연수업체를 이탈하고 쉽게 이직하는 원인이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조건이 열악해지면 옮겨다닌다. 심한 경우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A씨와 같이 체류기간 5년 동안 10번 이상 직장을 바꾸게 된다. 평균 1년에 2회씩 이직을 했다.

【 방글라데시 노동자 N씨 사례 】

방글라데시 노동자 N씨는 1992년에 사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처음에 신천 플라스틱공장에서 생활했었다. 그때 월급이 30만원이었고, 한 달 월급을 받지 못하고 여권을 빼앗기고, 구타, 욕설 등 관리자와의 갈등이 있은 후에 마포구 성산동 가방공장으로 옮겼다. 우연히 같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를 통해 새롭게 일을 하게 되었다. 성산동 공장에서는 공장 안에 그냥 방치되어 생활을 했었다. 그 공장에서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공장이 폐쇄되어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건물 주인의 도움으로 박스공장에도 취직하였다. 이 공장에서도 여권을 빼앗기는 등 관리자와의 갈등이 있었다. 친구의 소개로 새롭게 찾아간 성수동 플라스틱 공장에서 1997년 1월 단속에 걸려 출국 당하였다. 다시 재입국한 것이 1997년 12월이다. 재입국한 뒤로는 성수동 아동복공장에 다니다가 공장에서 제공했던 월세 방에 정착하였다. 성수동 아동복 공장이 문을 닫은 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을지로 공장에 취직하였다.” 현재 N씨는 성수동에 정착한 상황이다.

【 N씨의 근무지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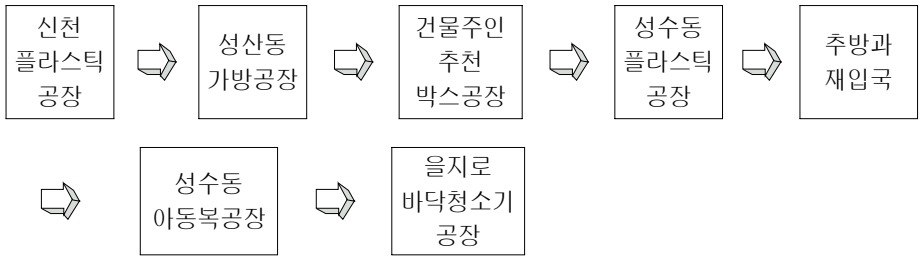

【 N씨의 주거지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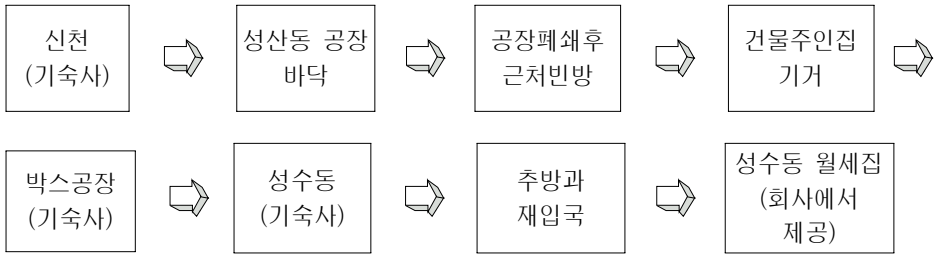

【 필리핀 노동자 T씨 사례 】

필리핀 노동자 T씨는 1997년 10월 소개를 통해 한국인 의사부부의 초청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였다.

"처음에 의사부부의 집안일을 거들며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였다. IMF때 가정부의 월급이 10만원이나 삭감되어 고민하다가 이직하였다. 모르는 필리핀 사람에게 150달러를 주고 일자리를 구했다. 새로 구한 직장은 경기도 분당의 물류운송회사이었다. 그런데 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을 앓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산업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조차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불공장으로 옮겼다. 그러나 임금체불로 인해 다시 장갑공장으로 이직하였다. 장갑공장도 관리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다. 다시 용수리 종이컵공장으로 옮겼는데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성희롱까지 당했다. 그만두고 젤리공장으로 옮겼다. 이 공장은 고용조건은 좋았는데, 여름에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알게 된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삼성동에서 여관 청소를 하고 있다."

【 T씨의 근무지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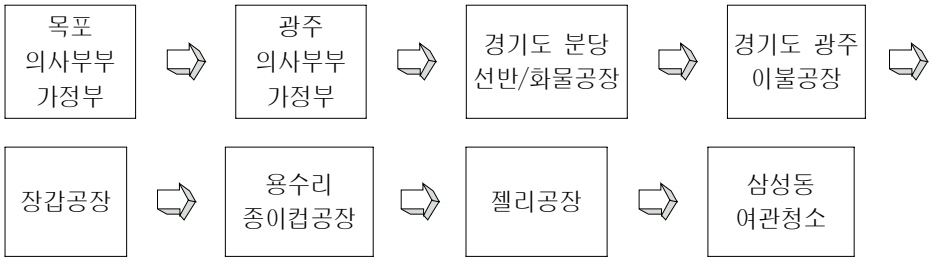

【 T씨의 주거지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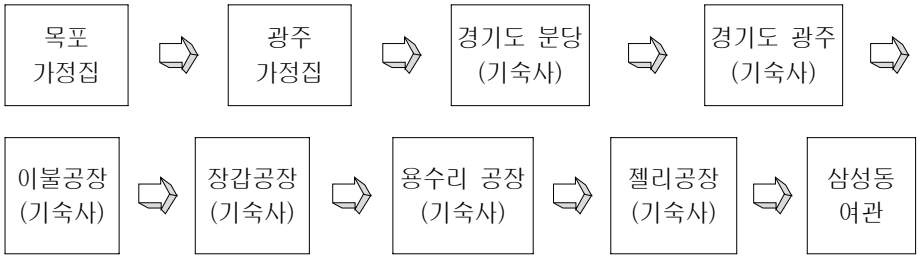

③ 주거지와 근무지 일치형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주거지와 근무지가 동일하다. 이들은 고용조건, 고용관계, 연수기간 만료, 공장폐쇄 등의 이유로 새로운 공장을 옮길 때마다 주거지 역시 따라 변한다.

<표 III-33>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거지 이동 사례

항 목	J씨	W씨	C씨
거주 단위	단신	단신	단신
한국 체류기간	5년 3개월	3년	2년 1개월
정착지	성수동	부천	신당동
정착지의 가까운 대인관계 유무	있음	없음	없음

【 방글라데시 노동자 W씨 사례 】

방글라데시 노동자 W씨는 전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지와 주거지 이동의 형태를 보여준다. W씨는 연수생으로 1997년 5월에 입국하였다.

“연수업체는 천안에 있었다. 월급은 월 30만원이었다. 9개월간 일하다가 회사에 일이 없어지게 되어 공장에 있던 외국인 연수생들을 파주로 옮기게 하였다. 파주의 가전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그러나 파주 공장은 임금도 주지 않고,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무실에 연락하여 가리봉동 볼펜공장으로 옮겼다. 이 공장에서는 70만원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회사의 기숙사가 아닌 월세 방을 구해주었다. 이곳의 사장님은 좋았다. 가리봉동 공장에서 연수생 비자가 말소되었고 그 이후로는 친구가 있는 인천 남동공장으로 갔다. 남동공장은 일이 많았었는데, 이후에 일이 줄어들고 나서 부천의 웰링 공장으로 다시 옮겼다. 현재는 기본급 70만원 야근을 하면 시간당 3천원을 받고 있다.”

W씨의 경우는 연수생으로 비자가 말소된 후에 귀국하지 않고 잔류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례이다.

【 W씨의 근무지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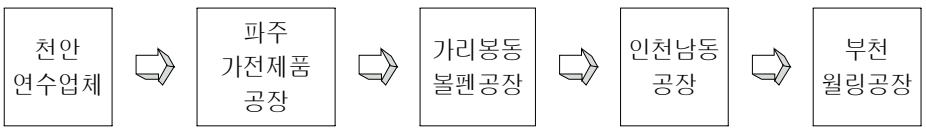

【 W씨의 주거지 이동 】

【 필리핀 노동자 C씨 사례 】

필리핀 노동자 C씨는 취업소개소를 통해 2000년 5월에 입국하였다.

“필리핀에서 미리 연락이 되어있던 소개소에서 사람이 나왔고 조건에 맞는 공장을 골라 갔었던 공장이 처음의 부천 플라스틱공장이었다. 월급은 기본급 70만원이었다. 그러나 식비, 방세를 빼고 나니 돌아오는 돈은 월 28만원이었다. 2개월 있다가 인천의 전자제품관련 공장에 5개월 있었다. 다시 광주 가구공장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서울의 라벨공장에 있다. C씨는 계속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데, 지금도 회사에서 내어준 근처 월세 방에서 친구랑 같이 지내고 있다. 월세는 회사가 지급하고 전기요금만 5만원을 내고 있다.”

【 C씨의 근무지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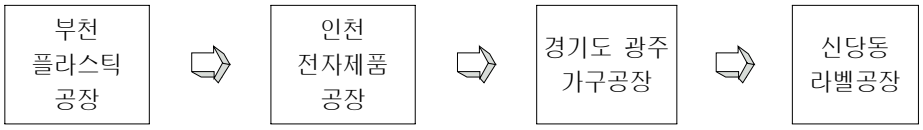

【 C의 주거지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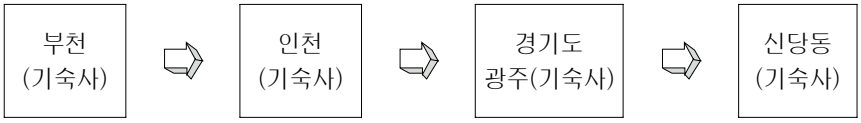

④ 주거지와 근무지 분리형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한국생활에 점차 적응하게 되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 한 곳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부분 처음 정착했던 장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정착하게 되거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동하여 친구들과 모여 살게 된다.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J씨 부부는 신대방동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고 생활하면서 신대방동에 정착하였다.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 H씨 부부 역시 현재 안산에 살고 있다. 안산지역은 같은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H씨 부부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가 주거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H씨 부부는 계속해서 안산에 살고 싶어한다. 한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향

을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특징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고, 정서적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 정착하고자 한다. 의지하는 한국인이나 본국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친구 가까이 정착하거나 외국인노동자센터 주변에 정착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온 경우이다.

<표 III-34> 일정 주거지에 정착한 사례

항 목	J와 A 부부	H씨 부부
거주 단위	가족 단위	가족 단위
한국 체류기간	5년 6개월	5년 6개월
정착지	대림동	안산
정착지의 체류기간	2년 6개월	5년
정착지의 가까운 대인관계 유무	있음	있음

【 필리핀 노동자 J와 A 부부 사례 】

J와 A 부부는 1997년 관광비자로 입국하였다. 필리핀에서 이미 한국인 사장과의 연계를 통해 입국하였기 때문에 입국하자마자 신대방에 있는 그 사장의 공장에서 일을 했고, 회사에서 구해준 월세 방에서 살았다.

"신대방동 공장에서 3년 넘게 일을 했는데, 공장 사장이 사망하게 되어 부부는 새롭게 일자리를 구했다. 처음에 친구 소개로 부평에서 도색 작업을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해보지 않았던 일이어서 이틀만에 도망쳤다. 그리고 신림동 봉제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월급이 너무 적었다. 한 달에 50만원 정도밖에 주지 않아서 다시 가산동의 기계공장으로 옮겼다. 그런데 이 공장 역시 처음에 20만원을 준 뒤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 그 후로 독산동의 양말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 공장에서 받는 월급은 기본급 70만원이었고, 야근을 하면 월 90만원 정도이다."

J와 A 부부의 주거지는 처음 공장의 사장이 제공해 주었던 방에서 계속 살았는데, 그 집이 재건축을 하게 되어 대림동 현재의 월세 방으로 이사했다. 방 한 칸과 화장실, 아주 좁은 부엌이 있었다.

【 J와 A 부부의 근무지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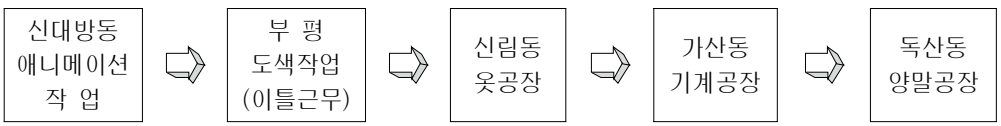

【 J와 A 부부의 주거지 이동 】

【 스리랑카 노동자 H씨 사례 】

스리랑카 노동자 H씨는 현재 아내와 딸과 함께 안산에 살고 있다. 1997년에 연수생으로 입국한 H씨는 처음 김포의 차 브레이크를 만드는 공장에 있다가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안산으로 옮겼다.

“김포에서 같은 스리랑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안산에 있던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연수업체에서 월급은 24만원을 받았다. 연수업체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H씨는 친구들이 있는 안산으로 옮겼다. 처음에 안산의 씽크대 상표를 만드는 공장에도 있었고, 아파트 베란다 공장에도 있었다. 씽크대 상표공장에서는 월 105만원을 받았었다. 그런데 관리자들의 태도가 너무 가혹했다.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 공장에서는 구타를 당한 경험도 있다. 안산에 온지 3개월 뒤에 안산의 아파트 월세 방에 정착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아내도 입국하였고, 그 뒤 함께 안산에서 생활하며 일했다. 그리고 친구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센터도 알게 되었다.”

현재 H씨 부부는 아이 때문에 오후에 빨리 퇴근할 수 있는 가죽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이 때문에 이 공장을 선택했다. 정해진 수량의 일만 마치면 언제 퇴근해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아이는 외국인 센터의 도움을 받아 낳았고 현재는 놀이방 비용과 분유, 기저귀 값을 지원 받고 있다. 현재 안산의 월세 집에 살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에 딸려있는 월세 집이다. H씨 부부는 안산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외국인 센터와 안산에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함께 소일거리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 H씨 부부의 근무지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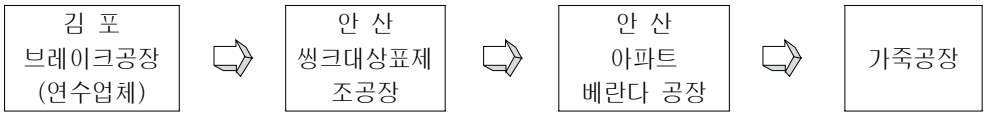

【 H씨 부부의 주거지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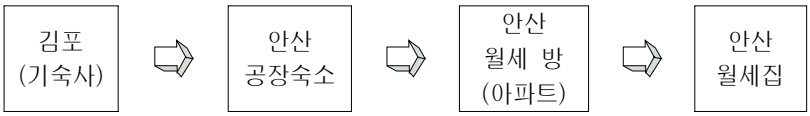

(2) 중국동포

① 주거지와 근무지의 일치형

중국동포 역시 대개는 직업 이동, 근무지 이동에 따라 주거지가 변화한다.

<표 III-35>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거지 이동 사례

항 목	허씨	정씨
거주 단위	단신	단신
한국 체류기간	3년	7년 6개월
이직횟수	4	5

【 중국동포 허씨 사례 】

허○○씨는 1999년 9월에 무역비자로 입국하였다. 처음에 와서 강원도의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 천호동에서 건설현장 일을 했다.

"십장이 천호동에 월세 방을 잡아주었다. 7개월 뒤에 김포의 회사로 들어갔다. 생활은 기숙사에서 했다. 여기서 사고를 당했다. 기계 오작동이 원인이었다. 당시 허씨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고가 난 뒤 목사님이 공장에 산채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산재처리를 받았다. 병원에는 1년 동안 있었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월급의 70%를 받고 병원비와 수술비를 제공받았다. 그후 교회에 자원봉사를 3개월 정도 하다가 교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아 현재는 교회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 중국동포 허씨의 근무지 이동 】

【 중국동포 허씨의 주거지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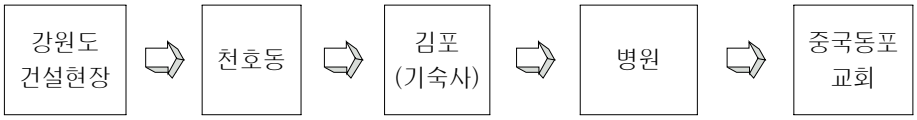

② 주거지와 근무지 분리형

면접대상자 가운데 한 지역에 정착한 경우는 입국하여 최초의 정착지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였거나, 주위에 친한 사람이 있거나 외국인센터가 있어서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얻고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정착하여 생활하는 경우는 대부분 가족 단위의 거주형태가 많았다. 면접대상자 가운데는 17, 18세의 어린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부모가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기반을 잡고 나중에 국내에 유입된 사례이다.

또한 중국동포 남성의 경우는 일용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집값이 싼 지역에 정착하고자 한다. 중국동포 김○○씨에 의하면 이동이 편리한 2호선 지하철 근처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안산과 성남 등의 건설현장으로 이동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동포들은 많은 경우 한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자 한다. 집세가 싼 곳을 찾아서 서울지역 내의 옥탑이나 지하 월세에 거주한다.

<표 III-36> 일정 주거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례

항 목	김씨	김씨
거주 단위	단신	가족
한국 체류기간	7년	3년
정착지	군자동	봉천동
정착지의 체류기간	7년	1년
정착지에 가까운 대인관계 유무	있음	무응답

【 중국동포 김씨 사례 】

김○○씨는 1995년 연수생으로 입국하였다. 연수업체는 군자동 장갑공장에 배치되었다. “일이 힘들어도 동료들과 사장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곳에서 연수생 생활을 마치고 회사 측과 합의하여 회사를 나왔다. 그때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나와 계속 근처 군자동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 뒤 파출부, 가정부 일과 식당일을 했다. 직업은 대부분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구했다. 현재 압구정동 식당일을 하고 있고, 군자동 옥탑에 전세로 살고 있다.”

【 중국동포 김씨의 근무지 이동 】

【 중국동포 김씨의 주거지 이동 】

【 중국동포 김씨 사례 】

김○○씨는 1999년에 한국으로 나왔다. 아내와 함께 나왔고, 지금은 봉천동에서 아내와 아이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김○○씨는 일용노동을 나가고 있고 그의 아내는 봉천동에 식당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 와서 한국으로 시집온 천호동 사촌누나 집에 있다가 근처에 정착했었다. 천호동에서 월세 방에 살았다. 지금은 신림동 전셋집에 살고 있다. 현장 일을 하다보면 교통이 좋은 곳을 찾게 된다. 안산, 인천, 수원 등 출퇴근하기 편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구로동이나 대림동처럼 지하철이 연계가 되기 쉬운 곳을 찾게 되기 마련이다."

【 김씨의 근무지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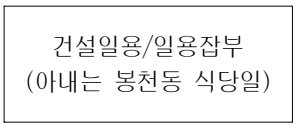

【 중국동포 김씨의 주거지 이동 】

4) 일상생활

(1) 하루 일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하루 일과는 매우 단순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바로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를 모두 직장에서 먹고 난 뒤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다. 야근은 대체로 일주일에 2~3일 하고, 야근시간은 대개 19시 30분~22시까지이다. 야근을 제외한 평균적인 업무 시작은 8시 30분 혹은 9시에 시작하고 업무의 끝은 19시 정도이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하는 일은 대부분 TV시청이 주된 활동이다. 취침시간은 밤 12시 정도이고 아침 7시에 일어난다.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정도이다.

【 하루 일과 】“근무시간은 아침 8시 30분에서 저녁 6시 30분까지이고 야근을 하면 다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한다. 하루 일과는 7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밤에는 주로 12시나 12시 30분 정도 잔다. 집에서는 주로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J씨)

【 하루 일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시 45분에 공장에 간다. 버스를 타고 간다. 그리고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고 야근이 있으면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야근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3~4번 정도 야근을 하고 있다. 그러니 거의 시간이 안 난다고 볼 수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의 비슷한 스케줄이다.” (필리핀 노동자 J씨 부부)

(2) 주간생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간생활은 매일매일의 일과가 반복된다. 단 일요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거나, 친구들과 여유시간을 즐긴다. 그러나 평일에는 거의 개인시간을 가질 수 없다.

【 주간생활 】“하루 일과는 대개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하고 7시에 끝난다. 그 외에는 늘 집에 있다. 주로 집에서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 HBO, V 채널을 본다. 그리고 좀 늦게 밤 11시 아니면 12시, 1시에 자기도 한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PC방에 가서 인터넷을 하거나 주로 채팅을 한다. 대개는 일주일이 비슷하지만, 가끔 수요일은 형부 될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그리고 대체로 금요일은 광명시 형부 집에 간다. 토요일은 5시에 일을 끝내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성경공부를 한다. 일요일은 교회에 간다. 남는 시간은 쇼핑을 다니거나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다닌다.” (필리핀 노동자 B씨)

(3) 여가생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 일을 하고 평일 야근과 주말 잔업을 하기 때문에 좀처럼 여가시간이 없다. 일을 끝내고 집에 오면 잠을 자거나, TV를 본다.

【 여가생활 】“남는 시간에는 TV를 보거나 한국어 공부를 하거나 기타를

친다. (교회에서 예배볼 때 기타 반주를 한다). 대체로 그냥 자고 TV를 본다. TV도 그림만 본다. 말을 모르니까 그냥 그림만 본다. 퇴근하면 집에 와서 쉬는 것이 더 좋다. 식사하고 씻고 잔다. 다른 사람과 어울릴 시간이 없다. 일이 고되서 매우 피곤하고 졸립다." (필리핀 노동자 E씨)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가를 즐길만한 시간도 없고,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남는 시간에는 되도록 휴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간혹 시간이 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신분 때문에 섣불리 여가를 즐길 생각을 하지 못한다. 불법체류자 단속과 검문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 여가생활의 제약 】"주말이라는 것은 없다. 주말에도 일을 하지, 놀러 다닐 시간이 없다. 시간이 나도 쉬고 싶지 어디 다닐 생각은 못한다. 만일 다니다가 검문이라도 당할까봐 늘 불안하다. 그리고 노는 것도 돈이 많이 든다." (중국동포 서씨)

【 여가생활 】"처음에 오면 길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놀러 다닐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검문이 무서워서 다닐 수도 없다. 늘 피하기 바쁘다. 아마 대부분 못 나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대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친구들과 만나서 논다. 아저씨들은 주로 술을 마신다. 시간이 없어서 만나기도 힘든데, 노는 날이 한 달에 두 번 정도이다. 식당일은 평일에 주로 논다. 사람마다 노는 날이 다르니,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중국동포 심씨)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불안한 신분과 노동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말의 노는 날에는 대부분 자신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교회나 사원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난다. 이슬람교를 믿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들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 집에서 함께 비디오를 본다. 중국동포들은 중국에서 독주를 마시는 습관들로 인해 시간이 나면 주로 친구 집에서 중국술을 사서 마시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여가를 즐긴다.

【 여가생활 】"토요일에는 가끔 이슬람 사원에 간다. 그리고 친구들 집에 가

서 시간을 보낸다. 방에 TV와 VCR이 있어서 방글라데시 드라마도 보고, 노래도 듣는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N씨)

【 여가생활 】"쉬는 날에는 난 혼자 사니까 방 정리도 하고 빨래하고 가끔 친구들 월요일 날 놀면 한잔하고 들어오고 대개는 안 나간다. 주로 만나는 장소는 뷔페식당에서 만난다. 지금 교회는 월요일 쉬고 친구들은 일요일 쉬게 되니까 잘 못 만난다. 예전엔 일요일마다 만나는 편이었다. 잘 가는 데는 뷔페식당이다." (중국동포 허씨)

면접대상자 가운데 방글라데시 노동자 N씨, G씨, T씨, 네팔 노동자 D씨는 한국에서 자국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외국인들은 민간 외국인단체와 연계가 되어 있는 외국인들이었고,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상담활동을 하고 있었다.

【 여가생활 】"이슬람 사원에 자주는 못 가지만 토요일에 시간 있으면 간다. 대체로 주말에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모임에 나간다. 지금 내가 커뮤니티 활동의 장을 맡고 있다. 우리 커뮤니티는 살롬의집 담당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만들게 되었다. 일요일에는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 회사에서 일요일에 수당을 준다고 해도 일 안하고 커뮤니티에 간다. 일요일마다 미팅이 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R씨)"

(4) 소비활동 : 송금, 소비

단신 거주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20~30만원 정도를 한 달 생활비로 쓰고 있다. 노동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고 외식을 할 여유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생활비의 지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

<표 III-37> 월 소비지출

(단위 : 만원)

생활비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				국제결혼가정
	단신		가족 단위		단신		가족 단위		가족 단위
	생활비	송금	생활비	송금	생활비	송금	생활비	송금	생활비
20만원 이하	5	-	-	-	-	-	-	-	-
21~30	8	-	-	-	2	-	-	-	-
31~40	2	-	-	1	1	-	-	-	-
41~50	2	2	-	1	-	1	2	-	-
51~60	-	3	-	-	-	-	-	-	-
61~80	-	6	2	-	-	1	-	-	-
81~100	-	-	-	-	-	-	3	-	-
101이상	-	-	-	-	-	-	-	1	-
무응답	6	11	-	-	1	3	2	6	2
없다	-	1	-	-	1	-	-	-	-

단신 동남/서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쓰는 내역은 대개 식비, 전화비, 교통비 등이다. 그리고 계절별로 옷을 사 입는 정도이다. 더욱이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숙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지출비가 거의 없다. 대부분이 고국에 전화를 거는 비용이나 친구들끼리 여가를 즐기는 비용이다. 가족 단위의 거주자들은 단신 거주자보다 더 많은 지출비용이 든다. 가족 단위 거주자는 집세와 식비, 여가비가 기본적으로 지출되며,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비 부담까지 더해서 지출항목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월 생활비가 동남/서남아시아 단신 거주자는 적게는 20만원에서 자녀가 있는 중국동포 가족의 월 생활비는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출된

다.

<표 III-38> 소비내역

거주 형태	유 형	지 출 내 역	총 비용
단신	방글라데시 노동자 R씨	식비 15만원, 전화카드 2~3만원. 교통비 7~8만원	25만원
	필리핀 노동자 A씨	국제전화비로 10만원, 식비, 여가활동비	20만원
가족	스리랑카 노동자 H씨	집세 20만원, 전기, 가스비, 식비, 유아원비 25만원(절반은 지원센터보조) 등	70만원
단신	중국동포 허씨	교통비, 핸드폰비, 유흥비	20~30만원
가족	중국동포 김씨	핸드폰비, 식비, 교통비, 생활용품비, 유아원비, 여가생활비 등	100만원
	중국동포 김씨	집세 30만원, 핸드폰비 10만원, 식비, 교통비, 생활용품비, 여가생활비 등	100만원

【 중국동포의 생활비 】"지금은 교회에서 월급으로 80만원 정도 받고 있다. 한 달 생활비는 20~30만원 정도 쓴다. 교회에서 숙식이 다 제공되니까 주로 쓰는 돈은 밖에 나가 친구들 만날 때 쓰는 돈이 생활비의 대부분이다." (중국동포 허씨)

【 중국동포의 생활비 】"집은 보증금 300만원을 냈고 다달이 20만원 정도 세를 지불한다.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 든다. 그리고 생활비로 대개 40~50만원 정도는 쓴다. 그리고 핸드폰비 10만원 정도. 모두 합하면 한 달 생활비는 80~100만원은 든다." (중국동포 김씨)

【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비 】"송금은 방글라데시로 보통 70만원 정도를 보낸다. 많으면 80만원을 보내기도 한다. 생활비는 15만원 정도 든다. 5만원은 차비이고 한 달에 쓰는 돈은 대략 20만원 정도이다. 옷은 한 달에 한 번씩 산다. 명동에 주로 간다. 남대문에 가기도 하지만 명동이 좋은 것 같다. 저축을 하기도 한다. 지금 현재 통장에 200~300만원 정도 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J씨)

가족 단위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부담은 자녀양육비이다. 출산비용

도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예방접종, 분유와 기저귀 값, 좀더 크면 유아원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이를 출산하면 노동을 하던 여성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양육비의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온다. 대개 아이가 커서 유아원에 맡길 나이가 될 때까지 엄마는 집안에서 아이를 보게 된다.

스리랑카 노동자 Y씨도 아이가 15개월 될 때까지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다. 지금은 유아원에 보내는 데 한 달에 25만원이 든다. Y씨 부부의 월수입이 155만원인 것에 비해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 중국동포 김○○씨의 경우는 유아원 비용 월 20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다.

> 【 양육비의 부담 】 현재 H씨의 월급은 95만원이고, Y씨 월급은 60만원이다. 한 달에 월 155만원을 벌고 있는데 집세 20만원 포함해서 생활비가 한 달에 70만원 정도 든다. "아기가 15개월 될 때까지 일을 하지 못했다. 그때 생활비가 한 달에 6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일을 하는 대신에 아이를 놀이방에 보내고 있다. 아이의 놀이방비는 한 달에 25만원이다." (스리랑카 노동자 H씨)

외국인 노동자들은 필요한 생활용품을 근처의 쇼핑몰이나 슈퍼, 편의점에서 구매한다.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일요일에 여럿이 함께 쇼핑을 다닌다. 외국인들이 쇼핑하는 공간과 내국인들이 다니는 공간은 크게 분리되지 않는다.

> 【 쇼핑 장소 】 "개인물건은 대형할인매장에 가서 산다. 재래시장도 둘러보았는데 시장물건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대형할인매장에 간다." (중국동포 허씨)

> 【 쇼핑 장소 】 "대형할인매장에 가서 쇼핑을 하거나 돌아다닌다. 대부분은 쇼핑보다는 구경하면서 돌아다니기만 한다." (필리핀 노동자 B씨)

5) 사회적 지지망

주거지와 근무지에서의 사회적 관계 외에 외국인 노동자의 서울 정착과 적응과정에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대상은 본국출신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

자 지원단체들이다. 언어가 통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을 공유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위안이 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는 낯선 곳에서의 정착과 적응을 위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지지망이다. 면접대상자 가운데 몇몇은 가까운 한국인 친구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까운 한국인 친구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생활에서 많은 도움과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못지 않은 사회적 지지망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소수였고, 대체로 한국인과의 관계에서 면접대상 외국인 노동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1) 본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와의 관계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과 언어소통 장벽, 생활습관 차이에서 오는 정신적 고단함을 본국 출신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서 풀고 있다. 유일한 위안이자, 자신들의 유일한 유희가 가까운 본국 출신 친구들을 만나 얘기를 하는 것이다.[4)]

> 【 본국 출신 노동자와의 관계 】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필리핀 사람이다. 다른 나라 사람보다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 친구들이랑 음식도 사먹고 다닌다." (필리핀 노동자 E씨)

> 【 본국 출신 노동자와의 관계 】 "안산의 친구들은 대부분 스리랑카 친구들이다. 연수생이었을 때부터 소개로 만나 알게 되었다. 친구들 집에 가서 스리랑카의 전쟁상황이나 정치상황 등 고향소식을 많이 나눈다. 가장 친한 친구도 역시 스리랑카 친구들이다." (스리랑카 노동자 H씨)

> 【 본국 출신 노동자와의 관계 】 "친구들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태국 친구들을 매일매일 만난다. 주로 만나서 비디오를 본다. 비디오 있는 친구가 있어서 빌려서 가서 보고, 음식도 해 먹는다." (태국 노동자 Y씨)

---

4) 자국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가 통하고, 어렵게 타국생활을 하는 고통을 나눌 수 있더라도, 자국에서의 학력, 나이, 가정환경 등에 의해 자국 출신 노동자들끼리 모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말할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 J씨는 자신과 비슷한 학력자도 드물고, 자신의 성격이 조용한 편이라, 쉽게 사람을 만나지도 않지만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구들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대체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가 통하는 자국 출신끼리 모여 다니고, 대화를 한다. 관계망의 형성 자체가 국적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자국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있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자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대체로 이러한 국가별 커뮤니티는 민간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종교적 믿음을 나누고자 하는 종교단체들은 국가별 커뮤니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안정감을 얻도록 돕고 있다. 실제 조사대상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필리핀 노동자와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교회의 예배시간에 외국인 예배를 돕는 한국인 교인들과 일정한 교류를 나누고 있었다. 교회가 민간 지원단체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서비스 못지 않게 정서적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응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민간단체에서 형성된 자치 커뮤니티는 국가별 모임이 사회 단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국민에 대한 상담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 【 교회에서 이루어진 관계망 】“교회의 네팔 커뮤니티 친구들과 가장 친하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친구가 많이 생겨서 괜찮다. 룸메이트하고 관계도 좋다. 룸메이트는 같이 일하는 공장의 동료다.” (네팔 노동자 K씨)

> 【 교회에서 이루어진 관계망 】“현재 알고 있는 친구들은 대개 교회의 친구들이다. 아주 가까운 사람은 없다. 친구들은 대개 서울에 살고 있다. 나만 부천에 있다. 자주는 아니지만 서울로 놀러 오기도 하고 밥을 먹으러 오기도 한다.” (파키스탄 노동자 V씨)

> 【 국가별 커뮤니티의 형성과 활동 】“커뮤니티는 샬롬의집의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만들게 되었다. 현재 커뮤니티는 한 30명 정도가 속해 있다. 이곳의 일이 너무 많다. 매일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대개 임금체불과 작업장 현장의 구타와 욕설 같은 인권문제, 노동상담이 가장 많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R씨)

(2)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관계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원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은

거의 지원단체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중국동포 면접대상자 중에서 동포지원단체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동포는 교회 직원, 교회 집사, 쉼터 이용자뿐이었다. 교회와 관련이 없는 동포들은 동포활동을 지원하는 교회나 단체에 무관심하였다. 단지 '그런 단체들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은 정도에 불과하였다. 중국동포들은 단체나 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자신들이 접촉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관계망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단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국동포와 상황이 다르다. 자신이 직접 교회와 단체를 찾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자신이 아는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관계망을 넓혀갈 뿐이다. 그러나 지원단체를 통하면 현재의 외국인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불법적 신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지원단체의 한국인을 통해 받을 수도 있다.

> 【 지원단체와의 관계 】"일요일은 주로 부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온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을 만난다. 교회는 2년 전에 신림역 근처를 지나다가 그때 교회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보고 교회에서 영어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전에는 가리봉동의 다른 한국교회를 갔었는데, 한국말로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영어 예배가 있어서 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 그 뒤로는 계속 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 (파키스탄 노동자 V씨)

> 【 지원단체와의 관계 】"임금체불과 중풍으로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교회 찾아가라고 해서 여기(교회쉼터) 2000년도에 왔다." (중국동포 정씨)

대개 외국인 대상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나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는 우연히 길에서 목사님을 만나 알게 되거나 친구들의 소개로 교회나 단체를 찾아가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원단체와 종교단체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의존적인 경향을 보인다.

스리랑카 노동자 H씨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고, 근처 외국인 노동자센터 관계자

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다. 안산센터로부터 아이 놀이방비와 분유값, 기저귀를 지원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아이의 출산부터 예방접종 등 모든 일에 센터 관계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H씨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센터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H씨와 같이 네팔 노동자 E씨도 교회 관계자가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말한다. 많은 부분을 지원단체의 한국인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외국인들의 불법적 지위로 인한 사회적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이란 외국인 노동자 T씨는 종교가 이슬람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에 가면 자국출신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교회의 한국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란 노동자 T씨의 경우처럼 교회로부터의 물질적, 정서적 지원은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큰 안정감을 주고 있다. 네팔 노동자 E씨는 네팔에서 이미 알았던 한국인과 현재까지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네팔 커뮤니티의 한국인과 공유하고 있다.

> 【 지원단체에 대한 의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면 살롬의 집 신부님을 찾아가거나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의 ○○라는 친구를 찾아간다. 그러면 같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민해준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는 ○○의 집의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다. 사람들은 한 30명 정도이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R씨)

> 【 지원단체에 대한 의존 】“한국에 오자마자 교회를 찾아갔다. 1990년도에 이미 네팔에서 한국인 주○○ 간사님을 알고 있었다. 그때 간사님은 네팔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간호사로 봉사활동 중이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뒤 바로 간사님에게 연락했었다. 이 교회는 네팔어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네팔 사람들을 많이 알 수 있다. 나와 제일 친한 사람이 주○○ 간사님이다. 문제 있거나 아프거나 어디 갈 때도 의논한다.” (네팔 노동자 E씨)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 단체를 다니며 지원단체 서비스에 대해 비교, 평가하고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불안정한 지위와 거주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지원단체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 지원단체에 대한 의존 】“원래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지금은 광명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교회에는 이란 사람들이 많아서 좋다. 그리고 어차피 신은 하나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별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대개 일요일 오전 10시에 예배가 시작한다. 예배가 끝나면 식사도 할 수 있다. 교회를 갔다가 오후에 ○○복지관을 간다. 이 복지관에 온 지도 9개월이 넘었다. ○○복지관은 미국친구가 알려줘서 오게 되었다. 교회에 간 지도 9개월이다. 교회는 이란 친구가 알려 주어서 다니게 되었다.” (이란 노동자 T씨)

【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 】“○○선교회는 네팔 친구가 알려줘서 1999년에 처음 방문했다. 1~2군데 다른 단체도 알긴 하지만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다. 여기가 제일 낫기 때문이다.” (네팔 노동자 K씨)

(3) 한국인과의 관계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인은 대부분이 노동현장의 동료들이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다보면 가까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이나 민간단체의 한국인들과 친해지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피부색이나 제3세계 국가 출신 노동자라는 사실이 한국인과의 관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소극적으로 되는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대상자 가운데 몇몇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까운 한국인 친구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과 총 42명 중에 불과 1~2명이었다.

【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한국친구이다. 어려울 때 같이 나누는 친구이다. 이 친구는 예전에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이다. 만난 지는 한 4년 정도 된다. 그 친구도 30살이고 동갑이다. 이 친구 지금 어느 공장의 과장이다. 예전엔 대리였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N씨)

【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4~5명 정도이고 대개는 어릴 때부터 동네친구들이다. 한국친구는 대구에 사는 친한 친구가 있다. 초기에 일할 때에 알게 된 사람인데, 나이도 비슷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다. 그 친구에게 처음에는 중국에서 왔다는 말을 안 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친해지고 알게 되었는데, 잘 지낼 수 있었다.” (중국동포 김씨)

【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 】“한국인과 친구가 되기는 어렵다. 한국인들이 나를 꺼려하는 것 같다. 내가 방글라데시 사람이라 그렇다. 한국사람을 만날 때는 고민부터 하게 된다. 내가 만일 미국사람이라면 나를 따르겠지만 한국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할까? 상대방이 먼저 친구하자고 먼저 제의를 해오면 모를까, 일단 망설여진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J씨)

한국인과의 관계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 스스로도 어려워한다. 중국동포들은 되도록 한국인에게 자신이 중국동포임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도 있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자신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 의료 및 기타서비스

(1) 의료서비스

외국인 노동자들은 민간단체의 의료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비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일반 병원에 가서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면접조사를 했던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회나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진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만일 질병에 걸리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일반 병원에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공제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료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매달 5,000원씩을 내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 병원에서 50%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 의료-민간단체지원 】“배에 담석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비가 130만원이었는데, 교회의 의료공제회에서 50%를 내줬다.” (네팔 노동자 A씨)

【 의료-민간단체지원 】“민간단체를 방문했던 경험은 희년선교회뿐이다. 의료공제회 도움을 받고 있다. 2년 전 내 동생이 아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명동성당에서도 도와주었다. 동생이 대림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 (파키스탄 노동자 F씨)

【 과중한 의료비 부담 】“아내가 임신했을 때 성남의 병원을 다녔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갔다. 한 번 가면 5~6만원 정도 들었다. 출산비만 60만원 정도 들었다. 그래도 우리는 작은 병원엘 가서 적게 든 편이다. (다른 중국동포의 경우는 197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동대문의 큰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고 한다) 사실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면 아이 낳는데 19만원이면 되는데 우리는 의료보험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요새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떼서 약을 타야하니까 사먹기도 힘들다.” (중국동포 김씨)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몇몇 외국인 노동자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중국동포들은 국내에 입국한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전직 의사, 약사들로부터 진료를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가족들이 보내온 약을 먹는다. 한국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 비싸고 영문표기가 되어 있어 약에 대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중국동포들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약국을 이용하거나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다. 반면에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구책은 좀 더 현실적이다. 어쩔 수 없는 중병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별 커뮤니티에서 돈을 모아 병원비를 지불하기도 한다.

【 의료지원에 대한 자구책 】“아픈 데도 많았다. 그러나 병원에 가볼 생각은 안 했다.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너무 비싸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좀처럼 병원에 안 간다. 대신에 중국에서 보내온 약을 먹는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국동포가 많아서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다. 의사도 있고, 선생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중국동포 의사에게 찾아가 진료도 받고, 중국약도 받는다.” (중국동포 김씨)

【 의료지원에 대한 자구책 】“1992년도에는 부천에 네팔 커뮤니티가 있었다. 그때 돈 못 받고 다쳐서 병원가도 병원비도 못 내는 문제가 많이 많아,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만들었다. 예전에 심장병으로 입원한 친구가 있었는데, 병원비가 1,500만원 정도 나왔었다. 네팔 커뮤니티에서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지불하였다. 부산, 대구, 여러 군데에 커뮤니티가 있어서 다들 아프면 도와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망한 네팔 사람이 48명이다.” (네팔 노동자 E씨)

(2) 금융, 전화서비스의 이용

은행구좌의 개설은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도 가능하다.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과 중국동포들의 은행개설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송금은 한국인 명의를 이용하여 보내고 있었다.

면접대상자 가운데 필리핀 노동자들은 대체로 남대문에 있는 필리핀은행을 이용하는데 송금은 주로 자신이 아는 한국인, 예를 들면 교회 관계자를 통해 송금을 하였다.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경우는 필리핀 노동자와 다르게 자국 은행지점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송금을 하려면 외국의 여러 은행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송금을 위한 브로커를 활용하고 있다. 면접내용에 따르면 국내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 외국의 다른 은행들을 거쳐 송금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비싸고 1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브로커를 이용하면 하루 안에 송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수수료를 내고 브로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동전화의 개통은 대개 한국사람 명의를 빌려서 한다. 태국 노동자 Y씨가 말하듯이 요즘은 이동전화 대리점에 가면 대리점 직원들의 명의를 통해서 불법체류자도 전화개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이 전화는 '카드전화'라고 불리는 전화비 선불제제도이다. 원하는 만큼 돈을 먼저 지불하고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브로커와 편법의 사각지대에서 송금과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 【 한국인 명의를 통한 송금 】 "필리핀 대사관 외에 다른 공공기관은 거의 이용한 적이 없다. 필리핀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남대문에 있는 은행(필리핀 은행 한국지점)에 가서 송금을 한다. 그러나 반드시 한국인이 송금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교회 목사님이나 목사님 사모님에게 돈을 맡기면, 주중에 송금을 해서 그 다음 주쯤 우리에게 영수증을 갖다 주신다." (필리핀 노동자 E씨)

> 【 브로커를 통한 송금 】 "한국은행을 통해 송금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지만, 방글라데시 브로커에게 연락을 하면 24시간 안에 송금이 가능하다. 그리고 브로커들은 중간 수수료를 뗀다. 집에 돈이 갔는지 확인한 뒤에 브로커한테 중개료를 지불하게 된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T씨)

【 동남아시아 노동자의 핸드폰 구매 】“은행은 가 봤다. 여권만 있으면 가능하다. 핸드폰도 어렵지 않게 만들었다. 전자상가에 가면 바로 개통이 된다. 전자상가의 한국인 명의로 다 해주는 것 같다.” (태국 노동자 Y씨)

중국동포들은 송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대신 이동전화의 개설은 자신이 아는 친구나 친척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하고 있었다. 중국동포 이○○씨는 한국인 며느리가 있다. 그래서 모든 통장이 며느리의 명의로 되어 있고, 핸드폰도 며느리를 통해서 개설하였다.

【 중국동포의 핸드폰 구매와 은행이용 】“전화는 한국친구 명의를 빌려서 했다. 여권을 가지고 가면 통장은 만들어준다. 그렇게 만들어서 저축하고 있다. 나는 중국에 돈을 보내지 않으니까, 저축하는 편이다.” (중국동포 김씨)

【 중국동포의 핸드폰 구매와 은행이용 】“난 핸드폰을 며느리(한국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핸드폰 비용은 4만원 정도 나온다. 은행통장도 있는데 2~3개의 통장이 있다. 모두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다.” (중국동포 이씨)

(3) 기타 서비스

외국인들이 한국에 쉽게 정착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의 습득은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한글 교실은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외국인 지원단체와 몇몇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어/컴퓨터 수업 】“복지관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고 있다. 예전에는 3시에 컴퓨터 수업이라서 끝나고 오면 됐는데, 요즘은 2시부터 수업이 있다.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다.” (이란 노동자 T씨)

【 한국어/컴퓨터 수업 】“대학교 사회복지관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였다.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명동에 있는 유네스코에서 3개월 정도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문제를 준비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하고 있다. 현재의 센터를 알게 된 것은 이 센터 시작하고 두 달 후에 관장님을 만났다. 관장님은 명함을 주고 반갑다고 하고 센터에 오라고 해서 일요일 놀러갔다. 명동○○센터에서

인터넷을 공짜로 가르쳐 주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J씨)

【 한국어/컴퓨터 수업 】"대학교 사회복지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다. 한 번은 무슨 발표회에서 나의 경험을 말해서 신문에 난 적도 있다.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른 센터에 가 본 적은 없다. 교회에 한번 나갔었는데, 거기서 지금 센터의 관장님을 알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N씨)

7) 생활상의 문제점 및 장래계획

(1) 외국인 노동자들이 말하는 생활의 문제점

면접대상자들이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입국과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표 III-39> 외국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생활의 문제점

순위	항 목	중국동포	동남/서남아인
1	불법신분의 보장, 합법적 노동비자 획득	4	3
2	의료혜택	2	-
3	언어와 의사소통의 문제	-	1
4	임금체불, 작업장 내 비인권적 실태	-	1
5	송출비리	2	-
6	장시간의 노동	1	1
7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1	1

중국동포들은 송출비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합법체류제도와 의료서비스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합법체류제도와 언어, 임금체불대책 등을 요구한다.

종합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기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체류자격에 대한 문제였고, 요구사항 역시 합법체류가 가능하길 희망하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1,000만원 이상의 입국비용이 드는 송출비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 외국인 지원단체의 실무진들이 파악한 생활의 문제점

① 결혼과 출산・양육

외국인 노동자 가정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동거와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을 하여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부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아이의 출산비용, 출생 신고, 그리고 양육에 관한 문제 등이다. 아이를 한국에서 비싼 비용을 치르고 낳아 본국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아이는 한국에서는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국적체류자가 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국내의 출입국법에 따라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본국으로 보내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아이가 출국하게 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아이를 낳게 된 많은 외국인 가정의 부모들은 갈등하게 된다. 무국적자가 될 아이를 부모 곁을 떠나 본국으로 보낼 것인지, 국내에서 부모 밑에서 기를 것인지 갈등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엄마는 아이가 클 때까지 일을 하지 못하므로 수입은 줄어든 채 양육비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의 양육문제에서 크게 고민하고 있다.

> 【 결혼과 출산・양육 】“지금 딸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다 스리랑카에는 되어 있다. 사실 한국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한국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질 않는다. 정말 문제다. 아이들 양육비도 너무 비싸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이 없으니 돈을 전액 다 지불해야 한다. 또 아이가 아플 때마다 아이 부모와 의사 간의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매번 센터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 (스리랑카 노동자 H씨)

> 【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문제 】외국인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낳은 지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한다. 태어난 지 1개월 안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는데 한 달이 넘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런데 부모가 불법체류자인데, 가서 신고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를 1개월 안에 친구들 통해서 국외로 보내거나 아니면 데리고 있거나 한다.
>
> “내가 아는 동포가정이 있다. 남편도 중국동포이고 아내도 중국동포이다.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혼인신고도 중국에 되어 있고 아이도

중국 호적에 올렸다. 그래도 아이가 사는 곳이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니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아이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 학교 가는 문제, 자격증 따는 문제 등 너무 많은 문제들과 부딪혀야 한다. 부모와 아이가 사회의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 제약이 많다. 그러니 아이를 한국에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여기서 태어났지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 아이를 부모 곁을 떠나 중국으로 내보려고 한다." (코시안의집 담당자 김○○씨)

② 장기체류에 따른 본국에서의 재적응 문제

면접대상자 가운데 재입국한 사례가 전체 외국인 39명 가운데 5명이 있었다. 중국동포 2명,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3명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재입국은 각각의 사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한국에서의 장기체류 이후에 본국에 귀국했을 때의 재적응 문제와 관련이 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N씨는 국내에 5년 동안 체류하였다가 1997년에 강제퇴거를 당하였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가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재입국하였다.

【 재입국 사례 】"1997년에 귀국해서 그해 12월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으니까 방글라데시에는 얼마 있지를 못했다. 그런데도, 방글라데시에 가보니 나랑 너무 안 맞았다.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 있었고, 모든 것이 안 맞았다. 심적으로 적응도 안되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고, 결국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N씨)

중국동포 김○○씨는 한국에 재입국하게 된 이유가 전에 한국에 체류하면서 벌었던 돈을 더 모으지는 못하고 중국에서 쓰게만 돼서 다시 입국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동포 김씨와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노동자 F씨 역시 한국에 같이 입국했었던 동생이 아프게 되어 병원비로 모았던 돈을 탕진하고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하였다고 한다.[5]

5) 장기 체류로 인한 본국에서의 재적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 민간 외국인 지원단체에서는 '이주자 창업협동조합'과 같은 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③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면접대상자 중 중국동포 정○○씨는 현재 59세로 중풍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과도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생겨난 병이지만, 보상받을 길은 전혀 없다. 더구나 정○○씨의 경우는 임금체불이 너무 많아 모아둔 재산도 없다. 이런 경우 유일한 대책은 민간센터의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산업 연수생의 경우도 산업재해가 아닌 이상 병이 발생하여 노동력을 상실하면, 대안은 귀국밖에 없다. 실제 파키스탄 노동자 F씨의 동생이 2000년도에 병으로 사망하였고, 중국동포 이○○씨의 남편 역시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모두 한국에서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이다.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는 엄청난 치료비용이 필요하고, 노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 사진 Ⅲ-2 】 외국인 노동자 쉼터이다. 이불이 쌓여 있고, 벽에는 외국인들의 짐들이 쌓여져 있다. 넓은 공간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3) 국제결혼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한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과 같은 난관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국제결혼가정은 노동현장에서 만나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동시에 단순기능직 업무를 하고 가정생활을 병행한다. 더욱이 국제결혼가정은 외국인 남편에게 합법적인 노동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취업을 감행해야한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과 임금체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들 국제결혼가정은 상업, 자영업을 목표로 살아간다. 한국인 아내의 명의로 가게를 마련하여 장사하는 것이 가장 큰 꿈이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야하는 신분으로 인해 쉽게 돈을 모으기도 어렵고, 아이가 생기게 되면 양육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는 더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고 남편의 나라인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도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신국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제3세계 국가의 경제적 사정과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 여성들이 외국에서 적응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은 외국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국제결혼가정[6]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국제결혼가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① F1 비자(거주/동거 비자)의 문제점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점은 거주, 동거비자가 나온다 해도 취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가장이 외국인일 경우, 가정의 생계보장은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따른다. 현재는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외국인 남성이 불법을 감수하고 취업을 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다.

> 【 경제적 어려움 】 스리랑카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지○○씨 역시 안산의 지하 월세 방에서 갓 태어난 아들과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방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15만원을 내고 있다.
>
> "아이가 어려 일을 할 수가 없다. 남편은 사실 법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형식이라서 얼마 벌지를 못한다. 월 60만원이 우리 가족의 주 수입이고, 내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외국인 센터에 나가 허드렛일을 하고 40만원 정도를 받는다. 계획으로는 아이가 3살이 되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 일이 힘들다고 나에게 일을 하라고 말을 하지만, 사정이 어렵다. 지금 사는 집도 지하라서 싫긴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사를 갈 수가 없다. 남편은 2년 정도 거주한 후에 귀화를

6) 국제결혼가정 가운데, 남편이 한국인이고 아내가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는 그다지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는다. 남편의 취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외국인 노동자이고, 아내가 한국인일 경우, 이 가정은 빈곤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로 다른 사례는 남편이 외국인이고, 아내가 한국인인 사례들이다.

할 예정이다.”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여성 지씨)

【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 남편의 비자 】“F1 비자라는 것이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의미인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F1 비자는 취업이 불법이라니 말이 되질 않는다. 그래도 다 식구들 먹어 살리려고 다 불법으로 일을 한다.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 너무 힘들게 살았다.”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여성 오씨)

국제결혼가정은 경제적 빈곤 때문에 결국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가정의 부부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빈곤을 극복할 방법을 찾기도 어렵고 참고 견디는 것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국제결혼가정의 갈등 】“이혼하는 국제결혼가정이 많다. 대개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25만원 짜리 방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합쳐 35만원 내고, 둘이 벌어봐야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고, 이 남자가 직장에서 질시 받는 이 남자가 본국에서 대학을 나오건, 뭐하건, 잘하건, 말건 상승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한 상승의 욕구는 있지만, 이 사회는 받아주지 않는다. 공장에서 매일 일을 해도 월급은 차별 받고 야근은 보통이고 친정의 원조도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위기는 결혼 초기에는 부모와 가족, 친구들의 결혼 반대 때문이지만 초기단계를 지나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인 이유로 국제결혼가정이 쉽게 깨어지게 된다.” (코시안의집, 김○○씨)

② 귀화시험의 문제

면접대상자 중에서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였다가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례가 있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체류자격은 얻었지만,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었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서 귀화를 결심했다. 필리핀 노동자 A씨는 5번의 시험 끝에 합격하여 현재 귀화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귀화시험이 생활에 전혀 필요없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귀화를 준비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하다는 것이다.

【 귀화시험의 문제 】“남편이 시험을 5번 봐서 귀화했지만, 아직도 한국 사

람 취급을 안 한다. 그리고 그 시험은 지금 내가 봐도 정말 황당하다. 우리 나라 시를 보고, 그 시를 지은 사람이며, 제목이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외국인들이 알겠는가? 귀화시험이 너무 쉬워서 중국교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시험대상에 따라 시험을 분리해야 한다. 중국교포들이야 한국말을 잘 알지만, 외국인들은 잘 모른다. 그러니 분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남편이 5번만에 붙었지만 5번에 되기도 힘들다. 시험에 70%를 맞아야 하는데, 미국은 준비책자라도 있지 우리 나라는 책자도 없다. 시험준비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법무부에서 하는 말이 초등학교 3~6학년 4년 과정을 국어, 사회, 도덕을 공부하고 그 외는 상식을 공부하라고 한다. 너무 광범위하다."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여성 오씨)

③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문제

국제결혼가정의 지○○씨 역시 아들이 엄마 성을 따랐다. 그런데, 앞으로 스리랑카에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한다. 지○○씨는 한국생활이 당연히 좋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한국생활이 어려워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씨는 아이들 남편의 나라인 필리핀으로 보냈다.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때 너무 많은 놀림을 받아서 한국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

지금 국제결혼이 이루어진지 10년이다.[7] 초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정도의 나이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5~8세 아이들과 영유아기 아이들이 많다.

【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문제 】"엄마 앞으로 사생아가 된 애들은 괜찮은데, 아빠 앞으로 된 애들은 주민등록도 없고 컴퓨터로 시험을 보려 해도 시험자격이 없다. 그래서 애들이 탈선을 한다. 애들이 탈선을 하고 공부를 해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으로 학교를 뛰쳐나갈 때마다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매번 학교가 바뀔 때마다 이 아이는 혼혈아이고… 등의 사정을 다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집은 아예 골치가 아프니까 애들를 외국으로 보냈다. 아무리 남편이 외국인이라도 체류비자가 있고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 외국인인 아버지에게 영주권이나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집도 자식도 있고 나는 한국사람인데 우리집은 너무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여성 오씨)

---

7)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된 역사가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초기에 국제결혼을 한 경우의 자녀 나이는 10살 정도이다.

④ 국제 결혼한 여성에 대한 차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은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차별과 무시를 겪게 된다. 주위 시선뿐 아니라 실제 한국인 여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 관계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안산 국제결혼가정 모임을 이끌고 있는 관계자에 의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하게 되고 친청 식구들로부터도 배척당하기 쉽다. 그만큼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국제결혼가정은 생활하고 있다.[8)]

【 사회적 차별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여성 지씨는 공단에서 일했고, 남편은 전기부품공장에 다녔었다. 안산에서 생활하는 것은 처음에 무척 어려웠다. 지씨가 직장을 다니면서 왜 외국사람과 사귀냐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야 했다.

"같이 살던 기숙사의 언니들 모두 나에게 안 좋은 말들만 했다. 결국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나왔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남편과 나와서 생활을 했었다. 그때 이미 사람들은 모두 신랑과 나를 얕잡아 보았고, 신랑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어쩌나 싶어, 겁도 나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지냈다."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여성 지씨)

【 관계망의 상실 】"친정식구들의 관계는 거의 다 안 좋다. 지금은 나이도 들고 10년 넘게 살았으니, 연락을 하긴 하지만, 지금도 관계가 좋지 않다. 친정에서 아직까지 왜 국제결혼을 하느냐는 말을 듣는다. 왜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느냐, 네가 뭐가 부족하냐, 하필이면 동남아 외국인이냐는 등 식구들이 너무 심하게 대한다. 그리고 친구들도 없다. 친구 동창들도 뒷말하기만 좋아한다. 자연히 친구들과 식구들과 연락을 안 하게 된다."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여성 오씨)

(4) 장래계획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 세계 각국을 다니며 일하려고 한다. 사업과 장사를 하기

8) 국제결혼가정 모임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 센터 관계자들에 의하면 어려운 환경의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사회분위기의 완화, 가까운 친척/가족/친구들의 지지망이 버텨준다면 실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한국에서 강제단속을 하여 내쫓는다면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른 국가로 이동하거나 한국의 음지에 더 깊숙히 잠입할 것이다.

<표 III-40> 장래희망

순위	항 목	중국동포	동남/서남아시아인
1	본국에서 가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싶다	4	17
2	한국에서 살고 싶다	4	4
3	본국에서 편히 살겠다	2	1
4	공부하고 싶다	1	1
5	빚 갚고 싶다	1	-
6	NGO활동을 하고 싶다	-	1

면접결과를 보면, 중국동포 12명 중 4명은 한국에 살고 싶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27명 중 4명이 한국거주를 희망하였다. 한국거주를 희망하는 중국동포와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 간의 차이점이 있다. 입국할 때 한국거주에 대한 의사가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동포들은 입국할 때부터 내심 한국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입국을 한다. 따라서 가족 단위의 이주가 많다. 중국에서 중국동포들은 소수민족의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평범한 하류층의 삶에 대한 자구책으로 한국에 입국한다. 선택은 두 가지가 된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중국에서 사업을 하든지', '한국의 제도가 바뀔 때가지 계속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 것' 두 가지이다. 어차피 중국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국에 나와서 고생을 하더라도 노동능력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중국동포들에게 한국행은 명확한 대안은 아니지만, 자신들 삶의 하나의 기회라고 본다.

【 서울과 중국생활의 비교 】"서울은 생활하기에 편하다. 특히 하루 벌어 생활하기가 훨씬 좋다. 중국은 돈벌기가 힘들다. 특히 중국동포라 먹고살기가 더 힘들다. 돈벌어서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다." (중국동포 김씨)

【 한국거주의사에 대한 의견 】“정책이 바뀌면 계속 있고 싶다. 그러나 정책이 계속 이렇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정책이란 것도 법 만드는 사람이 엄격하게 한다해도, 실행하는 사람들이 너그러우면…(괜찮다).” (중국동포 김씨)

그러나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르다. 처음부터 한국에 정착하길 희망하지는 않았다. 자국의 경제적 사정이 아무리 열악하고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처음엔 ‘단 3년만 있다가 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입국한다. 그런데 한국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사회적 관계망도 넓어지고, 주변에 도움을 주는 민간지원단체의 한국인들도 만나게 되면 타국 생활의 안정감도 찾게 되고, 자국에 있던 아내와 아이들을 부르거나 혹은 국내에서 만난 다른 노동자와 결혼을 하여 생활하게 된다. 안정적인 적응을 하게 됨에 따라 자국으로의 귀국과 한국에서의 거주라는 선택지점에서 불법의 신분이긴 하지만, 사회가 안정적인 한국에서의 거주를 희망하게 된다.

【 장래계획 】“앞으로 향후 2년은 더 한국에 있을 예정이다. 만일 한국에서 시민권이 발급이 된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그러나 어차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을 벌어 필리핀에 돌아갔다가 누나가 있는 이탈리아로 가고 싶다. 이탈리아는 입국이 까다롭지만 일단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이탈리아에 가려고 했었으나 이탈리아의 비자는 금방 얻기가 어렵다. 적어도 1~2년 정도가 걸린다.” (필리핀 노동자 B씨)

【 장래계획-한국거주희망 】“처음엔 나와서 빨리 돈벌어 가지고 가야지 생각했다. 스리랑카에도 일자리 있었는데 그냥 한국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왔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능하다면 계속 여기 살고 싶다. 신분 보장이 안되니까 불안하지만 가능하다면 여기서 살겠다. 아이도 여기 학교에 보내고 싶다. 안산에는 스리랑카 부부들이 많이 산다. 스리랑카는 일자리도 없고 전쟁 때문에 위험하다.” H씨 부부는 현재의 직장과 동네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스리랑카에 가기보다 한국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스리랑카 노동자 H씨)

5.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형성

1)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적 집중

조사 결과 서울지역의 성동구, 강북구, 중구, 관악구는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무지로 자리잡았고, 구로구, 영등포구가 중국동포들의 근무지였다. 주거지는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는 중구, 성동구, 금천구에 있었고, 중국동포들은 구로구에 집중 거주하고 있었다. 외국인들의 주거지와 근무지는 성동구, 구로구, 중구로 모아진다. 특히 중국동포들의 경우 구로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서로 지역적으로 밀집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 【 근무지 중심 】“연수업체에서 나올 때도 회사나 우리나 서로 좋게 나왔다. 그때 일하던 사람이 잘 있었다. 그때 13명 있었는데 거의 다 회사 근처에 자리 잡고 산다.” (군자동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김씨)

> 【 근무지 중심 】“경기도의 공장 기숙사에서 나오고 계속 오류동에 살고 있다. 오류동에는 근처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다.” (오류동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심씨)

> 【 사회적 관계 중심 】“이웃관계는 좋다. 3개월 전엔 파키스탄 사람 있어서 안 좋았다. 사람 많이 왔다갔다하고 2~3시까지 안자고 얘기하고 시끄러웠다. 지금은 갔다. 괜찮다. 주위에 외국사람 많다. 방글라데시, 몽골 등 많다. 집주인은 좋은 편이다. 친구들이 와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신당동에 거주하는 이란 노동자 T씨)

동일한 지역에 외국인들이 모여 살게 되는 이유는 저렴한 집값과 근무지와의 짧은 이동거리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까운 친구의 소개에 의해 일자리나 주거지를 구하기 때문에 친구 집이나 친구 공장 근처의 공장을 다니거나 집을 구하게 된다. 쉽게 말해 자신이 예전에 근무하거나 거주했던 곳 혹은 현재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곳을 소개시켜 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모여 살게 된다. 그러므로 비용이 저렴한 공장지대 근처에 외국인들이 밀집하게 된다는 입지조건이 형성

된다.

> 【 거주지역 고려 】“친구들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왔다. 예전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살았다. 광주는 친척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의 집값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 15만원이었다. 지금 개봉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지금 집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 20만원이다. 서울로 이사와서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게 된다. 그래도 교포들이 너무 많은 대림동은 싫다. 너무 시끄럽고,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 술만 먹게 된다. 그래서 일부러 교포동네보다는 개봉동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하는 일이 현장 일이라서 교통이 좋은 곳을 찾게 된다.” (중국동포 김씨)

외국인 노동자들의 밀집지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리봉동(구로구), 대림동(영등포구) 지역이다. 국내의 중국동포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이곳은 중국식 음식점과 중국동포를 상대로 하는 상점들이 있다. 특히 가리봉 시장 앞의 골목에는 중국식 잡화상, 주점, 음식점, 노래방이 40여 곳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구로공단 지역의 공단 노동자들이 ‘쪽방’에서 생활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지역의 싼 집값과 구로공단지대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도 만명 넘게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9] 그리고, 대림동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림1,2동지역은 8천~1만명의 중국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10]

> 【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형성 】 구로구, 금천구의 가산동 가리봉동 일대는 수출공단지역이었다. 구로공단지역, 수출공단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쪽방 벌집에서 살았고 공단 퇴조하면서 노동자들이 떠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방 값이 싸고 불법신분으로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만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되는 금액을 선호하는 것이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이다. 교통이 좋아서 이곳에 외국인이 밀집하게 된 계기가 된다. 인천, 안산, 수원, 서울 다 갈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어서 선호하게 되고 밀집하게 되었다.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김○○ 목사)

---

9) 시사저널, 2002년 2월 14일자 참조.
10) 조선일보, 2002년 2월 15일자 참조.

외국인들의 지역적 집중형태는 주거지, 근무지 밀집지역과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외국인 상점 지역과 노점형성과 같은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각국의 외국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이태원의 이슬람사원 근처와 서울·경기지역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말에 모여 여가를 즐기는 안산지역이 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들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혜화동성당 앞은 일시적으로 장이 서고 있다. 외국인들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 집단적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사례이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적 집중의 사례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지조건은 싼 집값과 교통여건이다. 실제 면접을 중심으로 지역적 집중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 사례는 본문에서 면접대상자 총 42명의 근무지와 주거지 조사를 통해 나타난 밀집지역인, 성동구, 구로구의 사례와 경기도 안산지역을 살펴보았다. 경기도 안산지역은 이미 언론에서 '외국인들의 전유공간'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일부 지역의 사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 거주와 밀집지역의 지역적 대응의 예를 알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게 되거나, 집단적으로 결집하였다 흩어진다는 데에는 일정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성동구 사례

① 지역적 특성

성동구 일대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은 성수1, 2가동 지역은 서울에서는 드문 준공업지역으로 약 1,350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구민들의 고용기회를 넓혀 주고 있으며 중랑천과 청계천이 유입되는 왕십리, 마장, 용답지역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11]

11) www.seongdong.seoul.kr 성동구청 홈페이지 참조.

【 사진 Ⅲ-3 】 성동구 주변 지역의 소규모 공업사들의 모습이다.

성수동의 중소기업체들-예를 들어 기계공장, 동대문에 납품하는 봉제공장 등-은 성동구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마장동지역은 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이다. 마장동 농수산물시장에 가면 심심지 않게 몽골노동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성수동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각국의 동남/서남아시아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 성동구지역특성 】"성동구 성수동은 마츠코바, 다이마루라고 하는 값싸고 장시간 노동하는 중소 영세업체가 있었다. 나는 실제로 그곳에서 야학도 하고 그랬는데, 1990년대를 지나면서 청년 노동자들이 감소했다. 성동구는 원래 야학이 많은 곳이었다. 야학이 많다는 것은 청년 노동자가 많다는 소리인데, 1990년대 지나니까 청년이 없고, 그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작은 공장에 인력이 없고. 특히 여기 왕십리에는 평화시장 등으로 제품을 보내는 공장이 있는데 사람이 없었다. 미싱이나 봉제들에는 점점 인력이 줄었다. 그리고

마장동 쪽에 육류 가공에는 몽골 사람들이 많다. 광장동에는 몽골 학교도 있다. 거기서 광진구와 몽고 울란바르토와는 자매결연도 맺고 있다. 몽골 문화센터도 있다" (성동외국인센터 소장, 이○○ 목사)

【 사진 Ⅲ-4 】 마장동 농수산물 시장 앞의 전경이다.

성수동, 왕십리, 마장동 등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무지를 중심으로 기숙사에 살고 있거나, 회사 근처에서 월세 방에서 생활-육가공업체에 종사하는 몽골인들은 대부분 마장동 근방의 월세 방에서 거주한다-한다. 성동구지역에 중소제조업체가 밀집[12]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업체와 상업지역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성동구지역으로 집중 거주하게 된다. 결국 지역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밀집이 생긴다. 현재 성동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지는 성수동 준공업지역이다.[13]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예가 방글라데시 노동자 J씨이다. J씨는 한국에 입국하여 계속 뚝섬, 성수동 일대의 공장에서 일해왔다. 잠시 6개월간 수원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제외하면 성동구에서 거의 5년을 넘게 살았다. 그

12) 성동구 준공업지역에는 2002년 1사분기 현재, 공장등록이 1,086개소이다. 등록된 공장은 준공업지역에 864개, 주거지역에 218개, 상업지역에 4개이다. (성동구청 자료)

13) 특히 집단거주지는 성수동 2가 3동 일대이다.

국가	주 소	세대주	인원	비고
이란	성수2가3동	H씨	6	남5, 여1
몽고	〃	S씨	2	여
인도네시아	〃	E씨	3	남
필리핀	〃	A씨	5	남
중국교포	〃	육씨	2	
일본	〃	C씨	1	

만큼 성수동 지역은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친구들도 많다. 성수동은 J씨가 한국어 수업을 배웠던 건대 사회교육원도 가까웠고, 근처에 성동외국인센터도 있다. 현재는 성동외국인센터에서 한국어와 컴퓨터 수업을 듣고 있다.

② 지역의 대응 : 민·관 협력사례

현재 성동구청에서는 성동구가 위탁 제안을 하여 민간이 성동외국인센터를 2001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센터의 실무는 세계선린회가 담당하고, 센터의 관리를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한다. 이 지역 민·관 협력사례로 성동외국인센터가 설립된 예는 의미가 크다. 이 센터의 설립뿐 아니라 성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의 수혜대상을 반드시 합법체류자로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4]

다음은 현재 성동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표 III-41> 성동구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사업방향	사 업 명	사업내용
자긍심고취	외국인 근로자의 날 제정선포	2000. 5. 선포식 실시 매년 기념행사 개최
	각국 주요국경일 축하	소속국 근로자에게 기념품 전달
	외국인근로자 생일축하전문 발송	생일축하전문, 자체축하행사 유도
복지강화	외국인근로자센터 개관·운영	2001. 12. 14 개관 애로 및 법률상담실, 한국어교실, 인터넷교실 등 운영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장기과제)	2004년 목표로 추진 중 (서울시 지원요청 중)
	외국인근로자무료건강검진	실시 : 매월 넷째 주 일요일 내용 : 내·외과, 안과, 피부과 등
한국문화 이해	한국어교실	-
	한국전통문화체험	문화유적지 탐방
친목교류 분위기조성	자매결연 추진	-
	송년위안잔치	위안행사 및 각종 레크레이션

14) 현재 서울지역에서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소수의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옥수종합사회복지관(성동구), 성동종합사회복지관(성동구), 장안종합사회복지관(동대문구), 생명의집(성북구), 장위종합사회복지관(성북구), 유락복지관(중구)가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성동구 소속 복지관은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 업무를 성동센터로 이양하였다.

성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외국인 노동자 생일축하전문 발송, 각국의 국경일 축하 등의 프로그램은 실제 외국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한글교실, 무료진료, 상담, 인터넷 교실 등은 합법·불법의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2002년 3월 24일 '외국인근로자의날'을 제정하면서 실시되었다. 성동구가 외국인 집중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사회의 인력으로 파악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성동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는 2가지 목적이 있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여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과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성수동 지역의 인력난을 해결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

(2) 구로지역 사례

① 지역적 특성

구로구[15]는 전체의 28%가 준공업지역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최대의 공단 중 하나인 '한국수출산업공단'과 '영등포기계공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 있는 전형적인 공업지역의 성격을 지닌다. 대규모 산업용품상가 및 공단의 입지로 기본적인 도시활력의 요소를 지니고 있고, 지하철 7호선의 개통 등에 따른 구 전지역의 역세권 내 포함되어 있다.[16] 그리고 서울 남서부에 위치하고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안양시, 부천시,

---

15) 제조업의 성장에 따라 구로지역의 변화가 일어났다. 1960년대 경인축 개발 시기에는 경인국도 변에의 시가지의 형성과 구로3동과 가리봉2동에 한국수출산업공단(구로 1, 2, 3공단)이 형성되었으며, 그 이후 1970년대에는 구로공단 주변지역인 구로동, 신도림동, 고척동 등에의 공장입지와 그에 따른 주공혼재지역의 발생, 그리고 구로구 남쪽 지역인 독산동과 시흥동이 구획정리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었다. 구로구와 금천구를 경계지르는 남부순환로 주변을 중심으로 구로공단과 공장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구로공단과 그 주변지역에는 주공혼재지역이, 그리고 구로구 남쪽지역에는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오은주, 『구로구 지방노동시장 변화과정연구 - 의류산업의 노동활용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1996.)

광명시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 해있다.

구로지역은 공단 내 기업이 하청 중심으로 생산라인을 축소하게 되면서 소규모, 영세업체 공장들이 밀집하게 되었다.[17] 따라서 소규모의 공장지역을 근거리로 하여 대림동, 가리봉동, 구로동 일대에 중국동포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외국인센터의 실무자에 의하면 구로공단 지역의 입주요인은 편리한 교통과 싼 집값이다. 구로공단 지역은 과거 공단 노동자들의 쪽방 밀집지였다. 70년대 구로공단 지역의 쪽방 밀집지역은 공단 노동자들이 봉제공장, 직물공장, 방적공장을 다니면서 거주했던 거주지로 방 한 칸에,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공간이었다.[18] 공장지대의 쪽방지역은 과거 80년대 비행청소년 탈선의 장소가 되었다가 90년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서게 되었다.[19]

대부분 일정 지역에 정착하기 보다 늘 이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당연히 보증금이 적은 구로구지역의 쪽방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현재 구로지역에 1호선 구로역, 7호선 가리봉역, 2호선 구로공단역 등 지하철을 통한 이동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 【 구로구의 조선족 상권 】 "구로공단의 벌집은 방적공장 여직공을 위한 것이었는데 집값이 싸서 중국동포들이 1995년부터 대거 이주해오면서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구로지역에 동포들 상권이 형성된 것은 1999년부터 2년 정도 되었다. 이 지역 상권의 주인은 거의 절반이 조선족으로 현재 합법체류자인 사람들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동포 여자들이 가장 많다." (중국동포 교회, 김○○씨)

---

16) 구로구 홈페이지 www.guro.seoul.kr 참조.

17) 구로지역의 기업이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청의 증가 등을 통해 생산라인이 축소되었다. 기업의 소규모화는 주로 1~4인 규모에서 이루어졌다. (오은주, 「구로구 지방노동시장 변화과정연구-의류산업의 노동활용전략을 중심으로」, 1996.)

18) 둘이 누우면 꽉 차는 단칸방에 부엌이라고는 시늉만 냈지. 수도가 있기를 했나. 한집에 40개가 넘는 방도 있었고 사는 사람도 100명 가까이 되는데 화장실은 달랑 하나에 수도도 공동으로 썼다. 아침이면 세숫물을 받으랴, 화장실 줄서랴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여성신문, 2002년 4월 1일자)

19) KBS, 수요기획, '가리봉동 사람들' (2001) 참조.

② 지역의 대응 : 상업지구의 형성과 외국인 지원단체의 역할

구로지역에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한 상권이 형성된 것은 센터 실무진들의 의견에 따르면 1999년부터라고 한다.

【 구로지역의 중국동포 상권 】"이 근처는 중국동포로 인한 상권이 형성, 가게가 유지된다. 가전제품 중고판매의 상권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 근처 중국 식당만 해도 100여 개다." (외국인노동자의 집, 김○○ 목사)

【 구로지역의 중국동포 상권 】3만여 중국동포가 살고 있는 구로공단 인근 중국동포 밀집지역에는 중국동포를 상대로 물건과 음식을 파는 업소가 50여 개 있다. 상호 대부분이 한자로 적혀있어 내국인들은 어떤 물건을 파는 곳인지 짐작하기 쉽지 않은 곳도 많다. '중국식품점(中國食品店)'이라고 입 간판을 세워놓은 상점에는 칭다오 맥주, 중국 양념장 등 중국제품이 가득 쌓여 있다. 중국식품점 옆은 중국 노래방이다. 중국 최신가요를 들여 놨다는 광고가 오가는 사람의 눈길을 끈다.

중국노래방 앞에서 만난 중국동포 이일만(34)씨는 한국에 온 지 만 1년째이고, 집은 가산동, 일터는 구로공단이라고 했다.

"중국에서 생활하던 그대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집 구조가 중국하고 유사합니다. 중국보다 깨끗하고 중국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 찾기도 쉽고요. 친구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일자리도 서로 알아 봐주고 그래요. 저보다 3년 먼저 온 고향친구를 이곳에서 만나 그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신동아, 2002년 3월호)

중국동포들의 상점의 대부분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동포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가정 면접대상자 가운데 한 사례는 한국인 남성과 중국동포 여성이 결혼한 사례였는데, 두 사람은 가리봉동에서 중국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 중국동포 상점운영 】국제결혼 가정의 국○○씨는 자신이 외국인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구로동·가리봉동 지역은 오히려 중국동포들로 인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국○○씨는 2년 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작년 말에 결혼을 했다. "아내의 친정 집 도움을 통해 중국음식점을 내게 되었다. 음식 방법 등의 노하우는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중국에서 음

식재료를 들여오기도 한다. 국씨는 앞으로 가게를 3년 정도 잘 운영하여, 중국에 도 체인점을 낼 생각이다." (국제결혼가정 국씨)

구로지역의 중국동포 상권의 형성은 더 많은 중국동포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된다. 이 지역은 내국인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지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리봉동 일대의 중국식 음식점과 술집들은 대체로 내국인 손님을 꺼린다. 내국인과 중국 동포들이 섞여 술을 마시다 보면 자주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중국식 주점과 음식점은 금한(禁韓) 지역이 되고 있다.[20]

【 구로지역 중국인 밀집 조건 】"이 곳에 모이는 이유는 중국 식품점과 같은 편의시설(전화카드판매소, 일자리, 중국식당 등)이 있고 싼 임대료와 교통 때문에 모여 산다."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남성 국○○씨)

구로지역에서 특이할 점은 이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3곳이나 자리잡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가산동), 희년선교회(가산동), 중국동포교회(구로동)이 있다. 희년선교회는 중국동포보다는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은 중국동포와 동남/서남아시아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국동포 교회는 중국동포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희년선교회는 1992년부터 외국인 지원활동을 꾸준히 하였으나, 중국동포교회는 1999년 구로동,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은 2000년, 가산동에 자리잡았다. 중국동포교회와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은 이미 구로지역의 중국동포 밀집 현상이 생겨난 이후에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주말에 구로지역 일대는 외국인들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다. 평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볼 수 없었던 동남아시아 외국인들과 중국동포들이 한꺼번에 센터에 모여들기 때문이다.

구로지역 일대는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이 없다. 대신에 이러한 역할을 외국인 단체들이 맡고 있다. 외국인 단체의 설립을 통해 이 지역에

20) 시사저널, 2002년 2월 14일자 참조.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역·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민간영역의 외국인 지원 단체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인권상담, 한국어 교실, 컴퓨터 교실, 무료진료, 의료공제회, 취업알선, 은행구좌 개설, 전화카드 구입 등이다.

(3) 안산지역 사례

① 지역적 특성

안산시는 수도권의 공업분담을 위한 계획도시로, 반월·시화·아산(조성중) 등 3개 국가공단과 53개의 지방공단(14개 가동중, 24개 조성중, 15개 조성 예정)이 있다. 조립금속, 정밀화학, 자동차 기계부품, 전자 전기부품 등이 주요 업종이며 관련 업체 1만 1000여 개가 밀집되어 있다. 조립금속이 21.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기계장비·화학·섬유 공업 등의 순이다.

안산지역은 반월·시화공단 등이 입주해 있는 계획된 공업도시이다. 따라서 안산지역의 주민구성은 공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그러나 안산시는 현재 두 개의 지역으로 분리되었다. 공단입주의 계획도시로서 성립된 도시가 공단지역중심의 생활권과 고잔역의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한 서울생활권으로 나뉘어졌다. 안산시의 공단지역 내국인 인구는 점차 아파트촌으로 이주해가기 시작하고,[21] 공단지역의 셋집과 셋방의 공동화현상이 생겼다. 이 공단지역을 차츰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가기 시작하였다.

【 안산시의 외국인 밀집과정 】"안산시 전체가 산업기술연수생 2,200명(470여 개 업체), 안산시에 외국인노동자가 3만 여명 있는 것으로, 65% 불법체류자

21) 안산이라고 다 같은 안산이 아니다. 생활권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나뉜다. 지하철 4호선 연장구간인 과천선의 끝의 안산역에서 중앙역, 상록수역으로 올라올수록 고층아파트는 많아진다. 한 부동산 업자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안산역쪽과 고잔 신도시는 1.5배의 차이가 난다'고 전한다. 반월공단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안산역 쪽에 비해 상록수역 쪽은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다. 상록수역 주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현철(42)씨는 안산역의 원곡동에서 출발해 상록수역으로 옮겨온 경우이다. "원곡동에서 시작해 형편이 나아지면 중앙동으로 옮깁니다. 원곡동에서 곧바로 안양이나 서울로 뜨는 경우도 있고요." 이후에 원곡동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겨레 21, '안산이라고 같은 안산이 아니다' 2001년 11월 28일자 참조.)

이다.[22] 지역 인구가 가장 많을 때가 과거 3만 2천이었는데 현재는 1억 8천 만 명이다. 그러나 집들은 더 짓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의 고시촌이 형성, 50군데가 넘는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하게 된 이유는 교통 때문이다. 공단 교통이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반월 공단과 시화공단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밀집하게 된다. IMF를 기점으로 하여 밀집하게 된 것으로 본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한국인들이 같은 값의 더 좋은 집으로 내국인이 이주하여 공단 근처의 지역은 공동화현상이 생겼다. 따라서 점차 주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집을 내어주게 되었다. IMF때 실업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세 방에 집단 거주하게 되었고 이 지역에 외국인이 밀집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IMF이후 집단적으로 방을 얻어 생활하거나 공단에 거주한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 목사)

안산외국인 노동자센터 관계자들은 안산에 외국인 밀집현상이 생겨나게 된 시점은 IMF로 보고 있었다. IMF로 인한 기업의 도산, 실직 등으로 공단에서 쫓겨나 공단 주변의 값싼 월세 방 한 칸에 여러 명이 집단 거주하게 되었다. 현재 원곡본동, 원곡1~2동, 초지동, 고잔동, 선부동 지역이 외국인 노동자 집단거주지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식 집계로 2,000여 명이지만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7,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중국동포가 70%로 파악된다.[23]

② 지역의 대응 : 마을 공동체 만들기

【 안산의 외국인 밀집지역 】 지하철 4호선 안산역 맞은편, 안산시 원곡동 길로 들어서면 한국어 간판을 찾기 힘들다.

길이 500m 거리는 영어, 중국어, 아랍어 간판 일색이다. 길을 가다 만난 10명 중 9명은 외국인이다.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말을 걸어보면 '중국 사람' 이라고 답한다. 2002년 6월 말 현재 안산시 거주자는 총 62만 701명, 이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3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주민 100명당 5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대부분이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필리핀 등 제3세계 출신의 불법체류자다. 안산시 내에서도 원곡동 일대는 2만 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려 살고 있는 외국인 집성촌이다. (조선일보 2002년 7월 15일자)

---

22) 2002년 6월 말 현재 안산시 거주자는 총 620,701명, 이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3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2002년 7월 15일자)

23) 한국일보, 2001년 12월 17일자 참조.

【 사진 Ⅲ-5 】안산지역 원곡본동 주변의 중국동포 상점과 전화카드 상점 등 국경 없는 마을의 전경이다.

안산역 맞은편 원곡본동의 스케치이다. 안산시 원곡본동은 현재 '국경 없는 마을'로 불린다. 원곡본동에 위치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와 원곡본동사무소, 원곡본동의 주민들, 외국인 노동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경 없는 마을 만들기를 펼치고 있다.[24] 국경 없는 마을 만들기는 원곡본동의 주민구성이 바뀌고 원곡동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상권이 형성된 것이 배경이 되었다. 원곡동에 등록된 주민은 1998년 기준으로 3만 3천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1만 8천 여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시촌과 같은 주거지는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외국인 인구

24) 국경 없는 마을 원곡동 추진위원회에는 원곡본동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새마을부녀회부회장, 안산시자원봉사센타, 중국동포상조회, 외국인상점연합회, 원곡본동상조회, 역전상가상조회, 원곡동외국인노동자주민회(준비위),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자료)

가 증가하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를 주축으로 2000년부터 시작한 국경 없는 마을 만들기는 원곡동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민간단체가 제기한 대안이다. 주민구성의 이질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응을 꾀하고, 이방인들의 지역생활적응을 공동목표로 하고 있다.

【 외국인 상점의 역할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이란 등지서 온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료품점과 식당만도 80여 곳에 달한다. 이들 가게는 고향소식과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문화일보 2002년 7월 30일자)

【 안산의 외국인 밀집 현황 】한 슈퍼마켓 주인은 손님은 거의 외국인이다. 살아보니 한국 사람과 다 같은 사람들 이라며 이 사람들 돈 많이 쓰고 와서 쫓겨나면 평생 빚도 못 갚는다 고 안타까워했다.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나 아무개씨는 외국인에게 세를 놓기 위해 한 칸 짜리 방들로 집을 개조한 집주인들이 많아 걱정이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공장이 마비되고 방도 다 빈다. 다들 이 지역이 마비될까봐 두려워한다 고 전했다. (한겨레 신문 2002년 8월 2일자)

안산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를 비단 공단의 노동인력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주민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월세 방이나 개조식 고시촌의 형성이 그것이다. 지역사회가 외국인들을 기반으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출국할 상황에 발생할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변화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들은 만남과 정보 유통의 장으로 안산지역, 특히 원곡동 지역을 인식하고 있다.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식료품점과 식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향소식을 묻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만남의 장소가 된다. 외국 식료품점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와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원곡동 지역의 국경 없는 마을 만들기의 사례는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26] 그러나 이 지역의 사례에서 다시 한번 우려해야 할

25) 면접대상자 가운데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실제 안산지역의 상점에서 음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었다.
26) 5월에 센터가 안산시민 가운데 한국주민 121명과 외국인주민 201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마을 운영에 외국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인 응답자의 50%가 외국인근

점은 원곡동 지역 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와 인식은 원곡동 내의 통합[27]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고층아파트가 밀집해있는 안산 중앙동 지역과는 분리될 수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 혜화동성당 근처 지역 사례

혜화동성당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지시로 지난 1996년부터 매주 일요일에 필리핀 사람들만을 위한 미사를 열고 있다. 영어와 타갈로그어(필리핀 고유어)로 진행되는 일요일 미사에는 4,000여명의 필리핀인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대개 서울, 광주, 마석, 수원, 성남,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혜화동성동은 종교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혜화동성당을 매개로 이국 땅에서 힘겨운 삶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이다.

매주 혜화동성당 근처에서는 생필품 노점들이 줄지어 늘어선다. 비단 물건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정보도 교화한다. 직장을 소개받거나 노동상담이나 인권문제를 토로하기도 한다. 천주교구가 필리핀인을 위한 미사를 진행하는 것에서 출발한 혜화동성당의 필리핀 노동자의 밀집은 자발적으로

로자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발해졌다 고 답했다. 40% 이상의 주민들이 '외국인들이 고유의 의상을 입고 고유어로 떠드는 것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몇몇 주민들은 '외국인들이 가진 문화를 마을의 자산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조선일보, 2002년 7월 15일자 참조.)

27)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의 단합은 월드컵의 개최이후에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화합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월드컵 한국과 스페인전이 있었던 날부터이다. 한국팀이 월드컵 4강에 오르자 센터에 모여 경기를 지켜보던 5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원곡본동 거리로 뛰쳐나가 대~한민국 을 외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인근 외국인 주민들과 한국인 주민들까지 합세해 300여명으로 늘어난 인파는 폭 5m의 거리를 매운 채 한 시간 동안 축제를 즐겼다. 외국인 주민들은 센터에 보관해 둔 인도네시아·파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필리핀·베트남 등 고국(故國)의 국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를 내달렸다. 이날 버스로 다섯 정거장 거리의 지하철 4호선 중앙역까지 달려갔다는 압둘 하만(파키스탄)씨는"붉은색 티셔츠만 입으면 어디서나 환영을 받았다.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월드컵 동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친절한 한국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변화를 겪기는 한국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축제를 지켜보던 김영희(여·46·안산시 원곡본동)씨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가게에 있던 음료수 36박스를 거리에 뿌렸다."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렇게 기뻐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라는 김씨는"돈으로 따져도 외국사람들이 소비해 주는 금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뒤섞여 거리를 뛰어다녔다는 주민 김성원(28·안산시 반월동)씨는"외국인 노동자들을 돈벌러 잠깐 왔다가는 사람 취급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서먹함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도 월드컵 기간의 경험을 통해 변화를 겪고 있었다.(조선일보, 2002년 7월 15일자)

커뮤니티를 형성한 사례이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필요에 의해서 노점도 생겨나고 장이 성립되었다. 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중에는 주중에 공장 등에서 일을 하며 일요일에만 나와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정식으로 가게를 열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합법적 체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강구된 편법으로도 보여진다. 외국인들이 밀집한 곳에 일시적으로 장이 서는 것이다. 서울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센터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장이 서게 된 사례는 드물다. 대부분 외국인들이 밀집하면, 주거지가 형성되고, 상권이 형성된다. 그러나 혜화동은 주거지도 없고,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노점과 같이 일시적인 장이 선다는 점이 구로지역과 안산지역과 대비된다.

> 【 정보 소통의 장 】 "정보를 우리(외국인 지원센터)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다. 필리핀 경우는 혜화동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모임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모든 생활의 정보를 얻고 있다. 거기도 안 보이는 정보의 유통구조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생업을 하면서, 모임이 있을 때 거기 가서 장사도 하고 그런다." (성동외국인센터 이○○ 목사)

혜화동성당과 같은 장소를 통해 필리핀인들이 정보유통은 다른 국적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원활하다. 일요일에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장이지만, 이를 통해 집중되는 외국인들 간의 정보의 공유 유통은 큰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면접대상자였던 필리핀 노동자들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굉장히 컸다'라고 묘사하고 있었다.

제Ⅳ장
결론

제 Ⅳ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사회적 변화에서 사회의 일정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그 자체가 본 연구의 대상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나 그들이 맞는 현실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척박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국내에 입국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들이 입국하고자 하는 동기는 다양하다. 본국에서의 좌절된 삶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부터 단지 국가 간 환 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본국의 취업소개소를 통해 비싼 입국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필사적으로 돈을 벌고자 한다. 국내에서 자신들이 부담한 비용 이상의 개인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은 임금조건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대로 된 벌이를 위해서는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고 불법을 감수하고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의 불안정성은 이미 본국에서의 취업알선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한국의 생활의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취업을 한다. 그리고 노동현장과 일상의 공간에서 내국인들과 함께 공간을 점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치는 공식적으로는 '불법체류자'이며, 비공식적으로는 '단순 생산직 노동자'로 자리잡았다. 외국인들을 규정하는 제도적 보호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은 언제 단속에 걸려 추방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시간을 인내하며 생활한다. 몸이 아프거나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전국적으로 이같이 불법체류 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27만명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그들에게 부여한 제도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한국사회의 한계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70%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1] 본 조사연구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서울·경기지역의 외국인들은 자신의 한국생활에서 불

1) 2002년 3월 불법체류자신고 현황 결과이다.

법체류에 대해 인정하고 소심해지거나, 분노하고 저항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자신들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와 불법체류의 한계를 자신의 생활공간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지역적으로 함께 모여 살면서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들이 서울·경기지역에 살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적응양태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력 수입 역사 10년 과정 속에서 나름의 한국체류의 처세법을 터득해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면접과정에서 외국인들로부터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어딜 가나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생활은 ‘불안한’ 자신들의 심리적, 지역적 공동체와 지원단체를 근간으로 하여 점차 익숙하게 일상화되어 간다. 편법과 불법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런 자신들의 삶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만났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의지는 아주 강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근을 포함하여 한달 수입 100만원, 월 소비 20만원으로 우리사회를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들의 생활상만을 보았을 때 분명 한국의 빈곤층에 속한다. 더구나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생활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삶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최하위층에 놓여있다. 그러나, 만나보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의지와 자활(自活)의지는 한국의 빈곤층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른 면이었다. 국가의 경계선에 넘나들어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고 대처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능한 삶의 방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이다.

서울의 도시 공간을 점차 공유하기 시작한 외국인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 방향은 낯선 이방인들을 모두 쫓아내거나, 아니면 함께 공유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방향이다. 두 가지의 방향 모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모두 쫓아낼 것을 고려할 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었던 영역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는 외국인 집중지역에서의 적절한 사회적 통합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현실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사회의 필요에 의해 우리 주변에 정착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 외국인들

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슬럼화·게토화될 위험을 극복하고, 이 지역을 다원화된 사회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현실에 기반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용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몇 가지의 외국인 집단거주 사례의 지역적 대응은 자치단체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성동구와 같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안산 원곡동 사례와 같이 지역복지, 지역의 사회적 통합전략으로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의 적절한 역할분담 속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인권의 측면'과 '지역복지의 차원'이다. 외국인 밀집지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노동현장의 사고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지방정부에서 가능한 대안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생활상의 문제점은 너무 많다. 지역 내의 사회적 통합의 문제점 외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민으로서 외국인들의 생활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한적인 수준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검토해보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이미 서울·경기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 현상은 간과하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김엘림,『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석현호 외,『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1998.

석현호 외,『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설동훈,『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설동훈,『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성규석 외,『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대책』, 집문당, 1997.

오은주,『구로구 지방 노동시장 변화과정 연구 - 의류산업의 노동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편,『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 청년의사, 2001.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199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

유길상・이규용,『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이우현, “아시아 지역의 국제 노동력 이동의 구조 변화”,『국제지역연구』, 1998.

이욱정,『국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적응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정환・석현호, “외국인노동자의 기대체류기간에 관한 연구”,『한국사회학』, 제35집 제4호, pp.129~157.

이현주,『외국인 노동자 정책 결정 및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과 대만의 노조・기업・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임현진・설동훈,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한국사회과학』, 제22권 제3・4호, pp.153~186.

장안종합사회복지관,『외국인노동자 욕구조사 보고서』, 2001.

정연주,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과정 - 경인지역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4권 제1호, pp.27~42.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 2000.
한현숙, 『한국체류 조선족 노동자의 문화갈등 및 대응』,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허청수 엮음,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출판사, 1998.

● 보도 자료

동아일보, 2001년 5월 28일자
동아일보, 2002년 8월 31일자
문화일보, 2002년 7월 23일자
시사저널, 2002년 2월 14일자
여성신문사, 2002년 4월 1일자
조선일보, 2002년 2월 15일자
조선일보, 2002년 7월 15일자
중앙일보, 2002년 7월 30일자
중앙일보, 2002년 7월 31일자
한겨레 21, 2001년 11월 28일자
한국일보, 2001년 12월 17일자

● 기타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eongdong.seoul.kr)
구로구청 홈페이지(www.guro.seoul.kr)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홈페이지(www.migrant.or.kr)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내부자료

부록

<부록 표 1> 외국인력제도의 변화와 사회적 반향

년도	정 책 내 용	연수생도입규모	민간단체 활동
1991	-10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법무부 훈령 제255호) 발표 -11월, 해외진출기업의 현지고용인력 기능향상을 위한 외국인력 산업기술연수제도 시행 : 2년 연수기간		
1992. 9 ~ 1993. 4	-상공부장관의 추천을 통해 10개 3D업종에 한해 해외투자기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도입 가능 (1993년 4월 중단) ・체류기간 : 최장 1년 (연수기간은 6개월이며 추가로 6개월 연장가능) ・도입규모 : 10,000명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체류기한 연장조치 ・1993년 6월말 (2차 연장), 1993년 12월 (3차 연장), 1994년 6월말 (4차 연장)	-10,000명	-1992년 1월 경실련 농성을 통해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 최초 공개
1993. 11. ~ 1994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조정협의회의 외국인 상업기술연수제도의 전면화 (1993년 11월) ・기존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미비점 보완 및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도입 업종 및 규모 확대키로 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산업기술연수생의 모집・알선 및 사후관리 담당 ・연수업체대상 : 중기협이 추천하는 중소제조업체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개정(1993년 12월) ・연수기간 1년으로 하되 1년 연장가능 -1994년 5월부터 산업연수생 입국시작	-1차 (1993년 11월) ・21개 제조업 ・20,000명 -2차 (1994년 9월) ・섬유(7,500) ・신발(2,500)	
1995. 2. ~ 1996	-고용허가제 도입, 법제정 추진 발표(1995년 2월 노동부) ・통산부, 법무부, 중기협의 반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1995년 2월) 제정(노동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부여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금품청산, 근로시간 준수 등 법적 보호 부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과 보건 조치 및 건강진단의 실시 ・최저임금법 적용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1996월 9월) 제정(중소기업청) ・연수대상 업종, 송출국가 선정, 외국인 산업기술연수협력단, 송출기관, 연수생, 연수업체,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상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1995년)하였으나 국회에서 통과 안됨	-3차 (1995년 5월) ・21개 제조업 ・20,000명 -4차 (1996년 2월) ・22개 제조업 ・19,000명 -5차 (1996년 7월) ・수출중소기업 ・10,000명	-1995년 1월 네팔인 연수생 13명 명동성당에서 농성, 사회적 공론화 : 이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 지침 발표' -1995년 7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설립 -지속적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요구, 입법청원 (1996년 10월) : 외노협에서 노동허가제 중심의 외국인보호법 입법지침 발표
1997 ~ 1998	-1997년 9월 경제장관간담회의에서 외국인력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키로 결정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출국조치 및 내국인으로 대체고용유도	-중국동포 사기피해자대상 1,000명 한시적 도입(1998.7.8)	-연수취업제 반대집회 -이주노동자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
1999	-8월 재외동포법 국회 통과 : 조선족, 고려인, 무국적 일본동포제외		-재외동포법 졸속통과 규탄 -9. 21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 수도권 12개 상담단체 대상운영

년도	정 책 내 용	연수생 도입규모	민간단체 활동
2000	-연수취업제 시행(2000년 4월)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노동부, 고용허가제를 전제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됨		-본격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표, 국회청원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11월) : 입법화는 실패
2001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개선대책을 확정·발표, 2002년부터 시행 ·외국인산업연수생 쿼터를 기존의 83,800명에서 85,500명으로 1,700명 증대 ·외국인산업연수생 관리·운영체계 개선 ·연수취업기간을 기존의 '연수2년+취업1년'에서 '연수1년+취업2년'으로 조정 ·연수취업 활성화를 위해 연수업체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취업자격 시험을 구술시험 중심으로 전환 ·관리기관 및 송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송출기관으로부터 일정배수 추천 후 국내 관리기관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송출기관 연수생 선발권한 제한 ·통계산출기준을 출입국관리 중심(법무부)의 단일기준으로 통일하고 실시간 통계 공유 및 확인체계 구축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보호 제도적 장치 강화 : 인권침해 업체에 대한 연수생 배정 제한 ·외국인산업연수생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매년 이탈률 평가 후 국가별·송출기관별 쿼터할당시 반영 ·한국어 소양시험실시 : 송출국가에서 연수생 선발시 관리기관 주관 하에 소정의 한국어 소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선발 ·퇴직적립금 의무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노동정책 방향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검토 -헌법재판소의 재외동포법 합헌불일치 판결	-연근해어업 종사자 1,300명에서 3,000명으로 1,700명 증원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위 ※ 외노협의 요구안 ·산업기술연수제도 폐지 ·노동허가제 실시 ·불법체류 노동자 사면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 이주민협약 비준 ※ 민간단체입장 ·이주노조 : 고용허가제에 반대함, 연수제도와 큰 차이가 없음 ·외노협 : 고용허가제는 노동허가제에 비해 사업장 종속성이 크다는 제도적 미흡함이 있으나 반대하지는 않음
2002	-국무조정실에서 불법체류자방지종합대책 발표 : 자진신고를 하면 1년 간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귀국 조치함 -2002년 4월 27일 연수 후 2년 간 취업을 하는 연수취업제 시행 -2002년 7월 15일 외국인력제도개선대책 발표 ·동남아외국인과 외국국적의 동포에 대한 분리된 정책 ·분야별 산업연수생제도 확대(산업연수생 총 정원 13만명으로 확대, 농축산업까지 업종 확대) ·서비스업종에 한해 중국 등 외국국적의 동포에게 취업허용, 취업관리제 도입, 최장기간 2년 ·중국동포 친척방문 연령 2002년 11월 1일부터 40세로 하향조정 ·불법체류 외국인 2003년 3월 31일까지 출국시키기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도에 대한 단계적 폐지권고 : 인력부족한 제조업의 인력 이탈 개연성 높고, 재외동포에게 일부업종 허용한 것은 민족을 이유로한 차별이라고 권고함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 ·총 산업연수생 13만명 ·건설 2,5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 ·연근해어업 정원 3천명 범위 내 운영 ·농축산업 5천명 내 운영	-3월 자신신고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이견제시 ·조선족교회는 자진신고 권고, 평등노조, 외노협은 자진신고 거부 -7월 외국인력제도개선대책 발표에 반대성명 발표, 연수취업제 반대 시위 ·불법체류자를 출국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권침해 가능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관리제는 노동자신분이 아닌 체류 외의 활동으로 규정

주 : 한국노동연구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자료(2001)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부록 표 2> 면접대상자

번호	출신국	유형	성명	연령/성	번호	출신국	유형	성명	연령/성
1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 단신	W씨	30/남	21	필리핀	동남아시아 단신	A씨	36/남
2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외국인 가정	V씨	36/남	22	중국	중국동포 단신	김○○	44/여
3	필리핀	동남아시아 단신	B씨	24/남	23	중국	중국동포 가정 자녀	이○○	19/여
4	필리핀	동남아시아 외국인 가정	J씨, A씨 부부	33/남, 32/여	24	중국	중국동포 가정 자녀	이○○	18/여
5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단신	F씨	35/남	25	중국	중국동포 가정	이○○	54/여
6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외국인 가정	H씨, Y씨 부부	28/남 27/여	26	중국	중국동포 단신	이○○	51/여
7	방글라데시	동남아사아 단신	J씨	29/남	27	중국	중국동포 가정	서○○	28/여
8	태국	동남아시아 단신	Y씨	26/남	28	중국	중국동포 가정	서○○	58/남
9	태국	동남아시아 단신	Y씨	29/남	29	중국	중국동포 단신	허○○	44/남
10	방글라데시	동남아사이 단신	R씨	22/남	30	중국	중국동포 단신	정○○	59/여
11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 단신	N씨	24/남	31	중국	중국동포 가정	김○○	31/남
12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 단신	T씨	○/남	32	중국	중국동포 가정	김○○	32/남
13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 단신	N씨	30/남	33	중국	중국동포 가정	심○○	39/여
14	필리핀	동남아시아 단신	T씨	39/여	34	한국	국제결혼 가정	오○○	58/여
15	필리핀	동남아시아 단신	E씨	28/여	35	한국	국제결혼 가정	지○○	26/여
16	필리핀	동남아시아 단신	C씨	30/남	36	한국	국제결혼 가정	국○○	43/남
17	나이지리아	동남아시아 외국인 가정	H씨	32/남	37	필리핀	동남아시아 단신	A씨	30/남
18	이란	동남아시아 단신	T씨	38/남	38	네팔	동남아시아 외국인 가정	이○○	○/남
19	네팔	동남아사이 단신	K씨	37/남	39	네팔	동남아시아 단신	D씨	○/남
20	네팔	동남아시아 단신	E씨	35/남	40	필리핀	동남아시아 단신	C씨	○/남

주1 : 면접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나이를 밝히지 않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부를 각각 면접한 사례가 2사례가 있어서 면접대상자는 총 42명이었고, 표에 제시된 사례 수는 40사례이다.

주2 : 면접대상자가 자신의 연령을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런 사례는 공란으로 비워 두었다.